

碩士學位論文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專攻：朴京洙

碩士學位論文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指導教授 全炅穆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專攻：朴京洙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 11. 30.)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專攻：朴京洙

이 論文을 朴京洙의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15年 12月 日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목 차

【국문초록】	vi
I. 서론	1
II. 조선시대 전령 문서의 사용과 폐지	10
III. 전령의 행이체계와 문서식	19
1. 전령의 행이체계	19
2. 전령의 문서형태와 문서식	29
1) 문서의 형태적인 특징	29
2) 전령의 문서식	40
IV. 전령의 문서형태별 분류와 내용	49
1. 전령의 문서형태별 분류	49
1) 명령·지시하는 형태	49
2) 임명하는 형태	56
3) 고시하는 형태	62
2. 전령의 유형별 내용	66
1) 명령·지시를 전달	66
(1) 軍營 大將의 명령 전달	66
(2) 外방 官長의 행정지시	74
(3) 민인 체포영장 差使牌子	90
2) 직임에 임명	106
(1) 軍職任에 차정하는 辭令狀	106
3) 對民 告示	116
3. 하달문서 關, 下帖, 甘結, 牌子와 비교	127

V. 결론	134
【참고문헌】	140
【ABSTRACT】	145

표 목 차

<표 I-1> 소장처별 실물 전령의 수량표	6
<표 I-2> 등록으로 기록된 전령기사 수량표	7
<표Ⅲ-1> 가로크기가 1미터를 넘는 지시전령 목록표	31
<표Ⅲ-2> 각 지역별 지시 전령의 문서크기 비교표	33
<표Ⅲ-3> 장용영대절목의 각 문서별 사용 종이 목록표	35
<표Ⅲ-4> 장용영대절목의 종이별 문서 분류표	36
<표Ⅲ-5> 전령에 사용한 문자와 서체 분류표	39
<표Ⅲ-6> 전령의 기두어의 형태 목록표	46
<표Ⅳ-1> 지시전령의 지역과 발급자 목록표	76
<표Ⅳ-2> 수취자별 전령의 내용 분류표	77
<표Ⅳ-3> 전령의 내용에서 본 각 임장들의 업무특징 분류표	78
<표Ⅳ-4> 영월 신씨 산송과 관련해 발급한 문서 목록표	83
<표Ⅳ-5> 전령과 하체의 문서식 비교표	88
<표Ⅳ-6> 체포영장으로 발급한 감결 목록표	103
<표Ⅳ-7> 이응엽이 받은 전령의 군직 목록표	108
<표Ⅳ-8> 강원도 철원부에서 발급한 문서형태와 임명 직역 분류표	113
<표Ⅳ-9> 제주도 문서의 전령과 차점으로 임명한 군직 목록표	113
<표Ⅳ-10> 강시양과 관련한 문서 목록표	114
<표Ⅳ-11> 『공이점록』에 있는 榜의 내용별 분류표	120
<표Ⅳ-12> 하달문서의 사용처와 내용 비교표	130

그림 목 차

〈그림Ⅱ-1〉 전령의 성격별 문서유형 분류도	14
〈그림Ⅲ-1〉 남원목사가 면임에게 발급한 전령과 면임이 동장에게 전달한 이문	23
〈그림Ⅲ-2〉 거제도 호방이 향리 동수에게 보낸 사통	24
〈그림Ⅲ-3〉 진주목사가 발급한 전령과 대야천리풍헌의 첩정 보고	25
〈그림Ⅲ-4〉 안동부사가 발급한 전령과 각 동장의 도부장 보고	26
〈그림Ⅲ-5〉 나주목사가 발급한 전령과 원정면 풍헌의 고목 보고	28
〈그림Ⅲ-6〉 『어전친막 제명첩』에 기록된 전령의 서식	42
〈그림Ⅲ-7〉 외방군영 대장이 발급한 지시전령의 문서	44
〈그림Ⅲ-8〉 외방의 관장이 발급한 전령의 서식	45
〈그림Ⅲ-9〉 추신과 후록이 같이 있는 지시전령	47
〈그림Ⅲ-10〉 중앙 군영에서 발급한 임명전령	48
〈그림Ⅳ-1〉 1786년 정조가 이유경에게 발급한 국왕의 임명전령 형태	50
〈그림Ⅳ-2〉 1793년 장용영에서 채제공에게 발급한 지시전령의 형태	51
〈그림Ⅲ-3〉 1765년 황해도수군절도사가 임재대에게 발급한 외방군영의 지시전령	52
〈그림Ⅳ-4〉 울산부사가 동수 등에게 발급한 외방 수령의 지시전령 형태	53
〈그림Ⅳ-5〉 지시전령에 추신과 후록이 있는 형태	54
〈그림Ⅳ-6〉 보성군수가 형리에게 발급한 차사배자의 형태	55
〈그림Ⅳ-7〉 1793년 정조가 체제공에게 발급한 국왕의 임명전령 형태	57
〈그림Ⅳ-8〉 1751년 금위대장이 원중회에게 발급한 중앙군영의 임명전령 형태	58
〈그림Ⅳ-9〉 1764년 행병조판서가 이성목에게 발급한 중앙관서의 임명전령 형태	59
〈그림Ⅳ-10〉 1677년 제주목사가 강세건에게 발급한 외방 군영의 임명전령 형태	60
〈그림Ⅳ-11〉 1792년 철원부사가 이응엽에게 발급한 외방 관아의 임명전령 형태	61
〈그림Ⅳ-12〉 1890년 금마군수가 연산훈장에게 보낸 고시전령의 형태	63
〈그림Ⅳ-13〉 진주목사가 금동어면의 면임 등에게 보낸 고시전령의 형태	64
〈그림Ⅳ-14〉 갑오개혁 이후 순창군수가 집강 등에게 보낸 고시전령의 형태	65
〈그림Ⅳ-15〉 『무신창의록』의 전령과 군령 비교	68
〈그림Ⅳ-16〉 1593년 절도사가 화원가장에게 발급한 전령	69

<그림IV-17> 1592년 초유사가 우치홍에게 발급한 하체	71
<그림IV-18> 1896년 의병대장이 이궁연에게 발급한 전령과 차접	72
<그림IV-19> 호적의 내용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전령	81
<그림IV-20> 투총한 것을 즉시 과내라는 내용의 전령	82
<그림IV-21> 사창의 사수에 발급한 환자를 빨리 거두라는 내용의 전령	85
<그림IV-22> 대소민인에게 발급한 무뢰배들과 동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령	86
<그림IV-23> 전령과 하체의 실물 형태 비교	87
<그림IV-24> 차사배자의 문서 형태 비교	96
<그림IV-25> 유향공형에게 민인을 추착하라고 지시하는 전령	97
<그림IV-26> 체포영장의 기능을 한 차사배자와 감결	102
<그림IV-27> 배자문서의 유형별 분류도	105
<그림IV-28> 차정하는 전령, 차접, 배자의 문서유형 비교	110
<그림IV-29> 철원부사가 이길헌을 부이방에 차정하는 배자	112
<그림IV-30> 차접의 연도 기록 양식과 유사한 전령	116
<그림IV-31> 진주목사가 발급한 부랑배의 단속건으로 고시하라는 전령	122
<그림IV-32> 국왕의 綸音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붙인 고시전령	124
<그림IV-33> 『新式儒胥必知』에 실린 갑오개혁 이후 고시 서식과 고시의 실문서	126
<그림IV-34> 관부의 행정문서 행이체계도	129
<그림IV-35> 관부의 하달문서 문서형태 비교	131

【국문초록】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박경수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문서로 발급한 傳令을 문서학적으로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전령은 軍營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래서 발급자가 군권을 가진 국왕, 관찰사, 수령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외방의 수령은 행정문서로 사용하여, 面里의 任掌에게 지시, 임명, 고시라는 형태로 발급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수령이 백성들을 曉諭하는 것은 송나라 시대 朱熹의 南康에서 발급한 榜을 본따서 전령이나 방의 형태로 하였다. 수령이 민인을 추착하기 위해 차사를 보내는 것은 差使牌子로 작성하였다. 수령이 관하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에 관아의 관속은 牌子로 하고, 향촌의 임장은 差帖으로 하고, 군직과 관련해서는 전령으로 발급하였다. 일반적인 행정지시의 전령은 세금을 督捧하는 것과 산송과 관련하여 偷塚 督掘과 勿侵 지시, 民人 推捉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령은 수령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실현하는 문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다.

하달하는 행정문서는 關, 帖, 甘結, 전령, 牌子가 있다. 이들은 행정문서로서 그 내용이 유사하여 아직까지 서로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면, 관과 첩은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는 문서로 보인다. 반면 감결은 중앙정부에서는 낭청이 발급하고, 외방에서는 주로 관찰사가 고을수령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간혹 수령이 전령처럼 고을 임장에게 발급하기도 한다. 이는 속사에 보내는 문서로서, 간소한 행정절차속에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색을 가진다. 배자는 尊者가 賤者에게 보내는 문서로서, 중앙정부의 당상이 하속의 천한 사람에게 발급하거나, 수령이 관속들에게 주거나, 일반 양반이 노비에게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과 첩을 제외한 감결, 배자, 전령은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편의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체는 임명, 지시, 標信이라는 측면에서 전령과 용도가 유사하다. 이 둘간에 분명한 구분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뚜렷한 점은 우선 수취인이 幼學의 신분이나 아니냐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수령이 신분이나, 문서의 편의적인 사용이라는 측면도 감안해서 더 살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현존하는 전령의 실물문서는 800여건 정도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많은 수를 관장하고 있다. 실물전령 외에 그 내용만 기록한 등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본 논문은 그 동안 규명하지 못하고 있던 전령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물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겠다.

주제어 : 傳令, 軍營, 守令, 命令, 軍職差定, 牌子, 榜, 告示, 關, 甘結, 下帖.

I. 서론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서로 작성한 ‘傳令’을 문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령은 주로 軍營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문서이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 부대를 이끄는 대장의 명령은 신속성과 엄정성을 잃으면, 목숨을 빼앗기는 敗戰이라는 참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臨戰에 시행하는 상관의 명령은 강력한 효력을 동반하여 병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때에 명령의 전달체계는 信標를 가진 傳令使가 구두로 전달할 경우가 있으며, 아울러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사료에서 보이는 전령이란 단어가 ‘명령을 전달함’의 의미로 사용한 것과 ‘전령문서’라는 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가 않다.¹⁾

그러나 문서로 작성한 현존하는 전령을 살펴보면, 군영에서 사용한 것보다는 지방수령이 管下의 민들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는 명령의 신속성과 엄정성을 장착한 전령이 軍政의 문서에서 지방 官府의 행정문서로 변이한 것으로, 이는 지방관이 대민정치를 하는데 있어 문서가 가진 강력한 통제성과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로 보인다.²⁾

전령 문서가 가진 특이한 점은 그 발급자가 다양하다는 점인데, 國王에서부터 중앙군영의 軍長과 外方의 관찰사나 수령까지 그 편폭이 크다. 수취자를 살펴봐도 군영의 대장부터 여러 군직에 임명되는 대상자가 있고, 지방 향촌의

1) 전령의 성격이 모호한 원인은 ‘傳令’이란 단어의 해석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전령을 전령문서가 아닌 ‘명령을 전달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특별한 사안을 가진 문서를 전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전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서로 1592년 7월에 초유사가 우치홍에게 발급한 전령은 差帖으로 帖의 양식을 가지지만, 시면에 전령이란 단어로 인해 모호한 성격으로 인식된 사례에서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진경목의 연구를 참고하고, 전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정일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153~156쪽 ;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제30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128~131쪽.

2) “...전략 傳令者, 必臨陣者之所用也, 而今守令之令斯民也, 巨事細事, 皆用傳令. 師行失伍, 必以威整, 故有軍律, 以嚴其刑法, 則軍律者, 亦臨陣者之所行也, 而今守令之刑斯民也, 大罪小罪, 皆行軍律. 惟其用傳令, 故官令急於星火. 후략...” 「壬辰義兵時擬上疏」, 金中淸, 『苟全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속 14,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 53~54쪽.

행정실무자인 風憲, 約定, 面任, 大小民人 등 그야말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령은 발급자와 수취자의 인적 상황이 다양한데도, 그 인명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드물다. 이는 여타의 관부문서에도 드러나는 특징이다. 그리고 전령은 군정과 민정이라는 사용용도의 편폭이 큰 문서라는 점에서, 그 문서가 가진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령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령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저작인 『雅言覺非』에서 얻을 수 있다. 다산은 軍令을 전하는 문서가 牌子라고³⁾ 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중국의 提督 李如松, 經理 楊鎬가 사용하였는데, 대장이 장교와 군현에 문첩으로 명령을 내릴 때, 이 배자를 사용하였다고 했다.⁴⁾ 또 배자는 작은 쪽지에 존자가 자기보다 아래의 직책이나 사람에게 지시나 명령을 전하는 것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언급은 전령 문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진다. 즉 군영에서 대장이 지시나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던 배자가 전령의 실체일 수 있으며, 이후 임명과 체포영장 등으로 문서의 성격이 과생하여 확대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 官府간에 주고받는 행정문서는 平行하는 문서에 關文이 있고, 上行하는 문서로는 牒呈, 書目, 告目, 單子, 稟目이 있고,⁵⁾ 下行하는 문서는 關文, 下帖, 甘結, 傳令, 牌子 등이 있다. 이들 행정문서의 특성은 조선시대 관부체계를 반영하여 상하의 位階를 매우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하달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관문에서 전령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지시명령과 관직에 대한 차정이 함께 발견된다. 그중에 전령이 다른 하달문서와 차

3) ‘牌子’의 훈독에 대해서는 ‘牌’를 모두 ‘패’로 발음하고 있으나, ‘牌子’, ‘牌旨’에서만 ‘배’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패의 발음이 배의 격음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金鍾埏, 『韓國固有漢字研究』, 집문당, 1983, 167쪽 참고. 또 이득춘은 정약용의 『雅言覺非』에 ‘牌子’가 ‘牌旨’라고 말한다고 한 언급을 들어, ‘子’의 발음이 ‘旨’와 동일하다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고 있다. 李得春, 「차자표기연구와 중국음운학」, 『한국문화』 14,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8~9쪽. 기왕의 문서에서는 牌子와 牌旨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牌子의 훈독을 ‘배자’로 牌旨를 ‘배지’로 통일하여 기술하겠다.

4) “牌子者, 軍令之書傳也. 軍中本有防牌, 外面刻畫人獸之面, 大將以文帖, 傳令於列校列郡, 則紙搦牌面, 下書軍令, 以示威信. 昔在萬曆, 天兵東出, 李提督名如松, 楊經理鎬, 嘗用牌子傳令, 當時軍校之家, 尙有傳者. 乃俗儒錯認, 凡尊者下書于賤者, 卽名牌子, 小紙片札, 衰颯陋拙之語, 名之曰牌子, 以寄吏胥, 以寄奴僕, 豈不羞哉.” 附「雜纂集」第24卷, 「雅言覺非」卷2, 牌子, 第1集, 58쪽.

5) 여기서는 관부 간에 수수하는 문서만을 말하며, 국왕과 관련한 문서는 논외로 한다.

이점은, 발급자와 수취자의 관계, 지시하는 내용의 차이를 들 수 있겠다. 관문은 품계가 1~6품 사이의 상급기관에서 평행이나 하달하는 문서로 쓰였다. 중앙아문끼리 통용하여 쓰거나, 또는 중앙에서 관찰사에게 보내거나, 외방에서 관찰사가 수령에게 보낼 때 사용하였다. 감결은 관찰사가 각 군현의 수령에게 보낼 때 사용하며,⁶⁾ 또는 수령이 민인들에게 전하는 문서로도 사용하였다. 관찰사가 관이나 감결을 통해 수령에게 지시하면, 수령은 전령을 발급하여 면리의 임장들에게 행정적인 사안을 해결하게끔 하였다. 이 때 수령은 또 하체를 발급하지만, 전령과 다르게 그 수취자가 향교나 향청이라는 점이 구별된다.⁷⁾ 하체는 7품이하의 관원이나, 州縣의 속사에 발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문서이다. 또 기존에 주의를 기우리지 않던 문서가 있으니, 바로 배자이다. 배자는 존자가 천자에게 발급하는 문서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로 매매를 할 때 상전이 노비에게 매매를 지시하는 것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여러 자료와 실문서를 살펴본 결과, 배자는 지시, 임명, 민인추착과 물전수취의 신표, 증빙 등 전령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관과 하체는 관부문서의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해야 하므로, 시일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감결, 전령, 배자는 비록 관부의 행정문서로 사용하지만, 편의성과 신속적인 사안 해결을 할 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결과로 인해 실문서의 형태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분은 발급자와 수취자의 관계성에 있겠다. 감결은 중앙아문에서 여러 아문의 낭청이 호조에 물품수취를 위해 주로 발급하였고, 배자는 당상관이 임명을 하고, 관련인을 招致하는 것과 물품을 받아오게 하는 신표로 사용하였다. 또 배자는 패의 성격을 가진 紙牌로서 승정원이나 의금부에서 죄인을 잡아오도록 하는 표식으로 사용하였다. 감결과 배자의 문서 성격과 내용의 구체적인 분석은 전령과 구분을 짓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관문서와 구분짓는 전령의 가장 큰 특성은 군영과 관련지을 수 있겠다. 전령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영의 군사와 관아의 군관에 이르기까지

6) ‘감결은 주로 중앙관부에서 그 부속관사에 발급하는 문서이다.’ 尹仁洙, 「朝鮮時代 甘結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 이는 조선후기 吳宏默(1834~?)이 작성한 咸安叢瑣錄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오흥묵은 하체는 주로 향교나 향청, 또는 훈장에게 보내고, 전령은 면임 이하에 보내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었다.

모두 군과 관련이 있다. 전령은 군직 차정과 함께 행정하는 지시서와 대민고시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민인 체포영장인 배자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전령 문서가 가진 기본적인 성격으로, 이에 따라 전령의 내용도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달문서의 행정은 六曹나 승정원이 筵席에서 결의된 사안을 외방의 관찰사에게 문서로 행이하면, 관찰사는 다시 수령에게 관문이나 감결로 전달하고, 수령은 이에 면리의 임장들에게 하체나 전령으로 지시를 내렸다. 관찰사-수령-면리임장-민인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위계성이 중시된 관계이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공문이 외방에서는 감결과 전령, 배자를 사용하였으니, 이들의 문서는 행정절차라는 공문의 특성을 생략하여 편의적으로 발송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즉 관부의 문서행이체계가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수령이 전령을 사용하여 향촌을 지배하는 성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의 대민통치 방식을 문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조선이 대명률을 통해 명나라의 문서행이를 추구하였지만, 중국의 체계적이고 복잡한 문서행정의 구조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조선만의 특색으로 볼 수 있겠다.⁸⁾

그동안 전령에 대한 연구는 최승희가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임, 민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⁹⁾로 성격을 규정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16세기 官文書의 서식을 정리한 전경목의 연구가 있다.¹⁰⁾ 전령을 ‘상급 관원이 하급관원이나 일반 백성에게 발급한 문서로 특정인을 어떤 직책에 임명하거나 혹은 각종 명령을 내릴 때 주로 발급한다.’고 정의하고, 실문서로 1592년 7월에 招諭使가 禹治洪에게 발급한 것과 1593년 2월에 경상도 兵馬節度使가 花園假將에게 보낸 두 건을 들어 분석하였다. 이는 전령의 임명장에 대한 거론과 문서식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다는 의의를 가지겠다. 그러나 수적으로 부족한 실문서의 예시와 하체와 혼동되는 전령의 서식에 대한 미해결은 초기연구의 한계점으로 보인다. 이에 군문에서 大將 이하 군직을 임명하는 문

8) 金暲綠, 「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 『明清史研究』 26, 명청사학회, 2006, 152~163쪽 참고.

9)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6, 219쪽.

10) 전경목 외,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153~156쪽.

서로 전령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이정일의 논문이 있다.¹¹⁾ 이는 전령의 실물문서를 통해서, 전령의 한 유형인 군직을 차정하는 범위와 그 문서의 형식을 연구하였다는 성과는 있으나, 전령이 가진 본래의 성격보다 임명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에 전령을 對民에 유포할 때 한글로 번역한 것에 주목하여 그 행정체계와 번역의 양상을 살펴본 김봉좌의 논문이¹²⁾ 있다. 이 논문은 공문서에 眞諺翻譯이라는 한글의 사용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 또한 전령의 본령을 다루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유지영은 조선시대 임명문서를 다루면서 다시 임명전령을 거론하였다.¹³⁾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군직으로 발급하는 차점과 전령의 차이점을 규명해보려 한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임명전령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전령 문서에 대한 연구는 16세기 전령의 서식과 임명 전령, 또 한글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일 뿐, 전령이 가진 지시를 비롯하여 고시, 배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문서학적인 측면에서 규명은 아직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령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양식을 분류하고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러 관부문서 속에 전령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령에 대한 자료는 문서의 형태로 현전하는 실물자료와¹⁴⁾ 그 내용만을 기록한 등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전령을 등록으로 기록한 형태는 하나의 관부나 개인이 연차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전령의 내용과 관련한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실물 형태는 종이의 규격과 서체를 통해 문서만이 가진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전령이 지시, 임명, 고시, 배자의 문서형태가 다르다는

11)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제30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12) 김봉좌, 「조선후기 傳令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제61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3.

13)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02~216쪽.

14) 현전하는 전령의 실물자료는 현 시점에서 대략 800여건을 상회하는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각 기관이나 도서관, 또는 사적으로 소장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점만 보아도 실물자료의 중요성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현재 실물로 전하는 전령의 소장처와 수량을 표시한 도표이다.

<표 I -1> 소장처별 실물 전령의 수량표

번호	목록 및 소장처	수량	특징점
1	『고문서』/서울대 규장각	347점	주로 19C말-20C초의 문서이다. 국왕이 발급한 전령 3건과, 동일시기에 같은 지역의 전령이 대량으로 있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	『고문서집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83점	장서각에서 출간한 고문서집성의 자료이며, 시기가 조선시대 중기부터 말기까지 폭넓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 관련하여 120여 건이 남아 있다.
3	덕원당 고문헌자료관(경북 김천시)	54점	목록만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30점	안동 국학진흥원 소장으로 눈여겨볼 만한 형식을 가진 전령이 있다.
5	전남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26점	1813-1893년 향촌에 발급한 전령이다.
6	국립중앙도서관	18점	李應曄에 대한 임명 전령이 있다.
7	『설촌가수집고문서집』 / 국민대학교 박물관	16점	전반적으로 19세기 말의 전령이고, 1786년 正祖가 별군직 李儒敬한테 보낸 지시전령 1건은 실물로 남은 국왕의 지시전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8	『영남지역고문서목록 I』 /동국대학교 도서관	14점	목록만 확인할 수 있다.
9	『영남지역고문서목록 II』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3점	목록만 확인할 수 있다.
10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3점	1900-1901년에 김제군수, 전주군수가 발급한 전령이다.
11	국가기록유산	10여점	각각의 유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서 1592년 禹拜善 의병 관련, 裨負商 관련한 전령이다.
12	수원화성박물관	10점	1793년 정조가 발급한 전령과 장용영 관련 전령 등이 있다.
		총 824점	

실물전령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으로, 과반이 넘는 총 630여점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 장서각은 각 문종의 고문서 중에서 전령이 남아있는 형태로서 파편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조선시대의 전 영역에 걸쳐있다는 특색을 가진다.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시기적으로 다양한 모습에서 전령의 여러 면모를 살

펴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규장각에 속해 있는 전령은 수량이 압도적인 면에서 좋은 자료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사용한 다량의 문서가 남아있다는 점은 좋은 학술적인 자료인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임명전령과 관련하여 18중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자료가 있고, 지시전령은 주로 20세기 말과 1895년 전령이란 문서명이 폐지된 이후, 1908까지 남아 있다. 이는 조선시대 이후 일제침략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전령문서의 이양양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수원화성박물관의 전령과 국민대학교 박물관의 전령은 국왕인 正祖가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실물전령이 아닌 등록으로 기록한 형태는 전령의 내용을 통해 당시대의 향촌사회의 현안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등록으로 기록한 형태는 꼭 등록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문집이나, 일기 등에서 전령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¹⁵⁾ 특히 등록이나 일기로 기록한 전령의 형태는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규모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의 표는 전령의 기사만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과 기사건수이다.

<표 I -2> 등록으로 기록된 전령기사 수량표¹⁶⁾

번호	목록 및 소장처	기사건수	특징점
1	『한국지방사자료총서』	457건	1735-1895년까지 각 지역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기록해 놓은 등본이다. 책별로 보자면 南原縣牒報移文成冊(39건), 嘉林報草(3), 延州報牒(2), 烏山文牒(57), 報牒巧(22), 岐陽文簿(7), 管城錄(4), 亦用(8), 玉山文牒抄(12), /牒草(5), 赤羅政模(12), 隨錄(75), 公文牒錄(10), 公私隨錄(40), 牒移(19), 山陰記事(114), 象山隨錄(9), 公文目錄(19)이다.
2	『水原府指令牒錄』 /규장각	32건	1790-1791년 정조가 수원부에 보낸 전령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다.
3	『화성성역의궤』 1794-1798/국립중앙박물관	18건	1794-1798년 정조가 화성축조와 관련하여 보낸 전령이다.

15) 이는 임진왜란과 영조대의 이인좌의 난을 기록한 일기와 조선후기 오형목의 관직 일기인 총쇄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16) 이 외에도 전령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인 分類紀事大綱, 오형목의 총쇄록, 궁방의 장토문적, 보부상관련자료 등에도 존재한다.

4	『어영청 전령등록』 / 장서각 K2-3358	344건	1795-1881년까지 어영청에서 발급한 전령 기사이다.
5	『譯註 勘界使謄錄』 / 동북아역사넷	18건	1885 10월-1887 5월 감계사 李重夏가 보낸 지시 전령이다.
6	『日記』 / 장서각 K2-3366	75건	1886-1888년 高宗 때에 친군영의 군직에 임명한 전령을 등록한 것이다.
7	『동학난기록』 하, 『한국사료총서』 10집 / 국사편찬위원회	41건	18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위영 좌선봉장이규태가 휘하 각지의 수령과 의병소 등에게 내린 문서이다.
8	『순무사각진전령』,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6권 / 국사편찬위원회	26건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순문사가 보낸 전령이다.
9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다수	1896년 임실군수로 재직할 당시 발급한 전령과 배자이다.
		총 1,011건 이상	

그 외에 파악을 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위의 자료들에 한정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필요에 따라서 전령과 관련한 관찬 사료나 목민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할 것이다.¹⁷⁾

본고의 진행은 II장에서 조선시대 전령이 함유하고 있는 성격을 유형별로 나누고, 통시적 입장에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려 한다. 전령의 유형별 성격을 파악한다면 전령을 쉽게 접근하는 한 방향으로 삼을 수 있고, 통시적인 관찰은 전령의 변화상을 살펴려는 의도에서이다. III장에서는 전령의 행이 체계와 문서의 형태 및 서식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전령은 군영과 관아의 행정문서로 사용한 만큼, 그 행이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전령의 관문서로서 특색을 살피는 중요한 작업이다. 아울러 전령의 형태적인 특징과 서식의 고찰은 전령의 문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에서는 전령의 문서유형별 분류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지시, 임명, 고시라는 문서유형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은 다양한 전령의 실문서를 유형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령이 여타의 문서와 구별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전령의 내용은 분류한 유형별로 실제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이후에 하달문서인 관, 하체, 감결, 배자와 구별점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하달문서로서 전령의 위치와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17)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조선시대 軍部에 대한 정보와 傳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것이다. 마지막 V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고 마무리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전령 문서의 성격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일 것이다. 아울러 여타의 하달문서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미미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여러 향촌과 관련한 행정문서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령을 통해 수령이 행사하는 대민정책의 양상을 심도있게 조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하달하는 문서간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내지 못했다는 미련도 남는다. 본 논문이 가진 이러한 한계점은 하달문서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와 총제적인 문서의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본다.

Ⅱ. 조선시대 전령 문서의 사용과 폐지

전령이라 하면 전쟁과 관련이 깊어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병자호란과 영조 때 이인좌의 난, 한말에 동학과 같은 외전과 내란을 기록한 자료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반면 고문서의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군영에서 군직을 임명한 것과 외방의 수령이 행정적 지시명령으로 발급한 전령들이다. 전령은 군영과 관부행정문서라는 위치 속에서 그 내용적 실체에 대한 규명은 문서학의 입장에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전령을 이해함에 있어 우선 용어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전령이 口頭전달이나 文書전달이나를 구분하는 것은 관련 사료의 맥락적인 이해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고 전령이란 단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구두로서 전하는 전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어대사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다.

- a. 【傳令】,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송나라 高承이 지은 《事物紀原·戰陣攻守·傳令》에서 “《書經·大禹謨》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우여! 오직 묘족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그대는 가서 정벌하라!” 우임금이 곧바로 제후들을 모아놓고 군사에게 명세하길, “많은 무리들이여 모두 짐의 명령을 들어라!”고 하였다.’ 이것이 軍中 전령의 시초이다.”
- b. 【傳簽】, 명령을 전하는 것,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첨은 옛날에 관부의 첨표이다.
- c. 【兵牌】, 명령을 전하는 사병이다.
- d. 【號角】, 원래 군대에서 명령을 전달함에 사용하는 연주하는 악기인데, 이후에 일반적인 나팔의 범칭이 되었다.
- e. 【通鼓】, 명령을 전달하여 북을 치는 것이다.¹⁸⁾

18) a. 【傳令】 傳達命令. 宋高承《事物紀原·戰陣攻守·傳令》, “《書·大禹謨》, ‘帝曰, “咨禹, 惟時有苗弗率, 汝徂征” 禹乃會羣后, 誓于師曰, “濟濟有衆, 咸聽朕命.”’ 此軍中傳令之始也.” 『한어대사전』. ; b. 【傳簽】 謂傳令, 發令. 簽, 舊時官府的簽票. ; c. 【兵牌】 傳令的士兵. ; d. 【號角】 原爲軍隊中傳令用的吹奏樂器, 后成爲一般喇叭的泛稱. ; e. 【通鼓】 傳令擊鼓.

송나라 고승은 전령의 기원을 하나라의 우임금으로 잡고 있다. 우임금이 모족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전령은 문서형태이기 보다는 명령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대에 회맹은 회맹문을 작성하는 점에서 본다면 문서가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전령은 명령을 전달하는 병사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증명해주는 징표가 있었을 것이다. 위 기록에서 보자면 ‘병폐’와 ‘전침’ 같은 것이다. 또한 전쟁 중에 전령이라는 것은 d와 e의 기록처럼 큰 소리로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어 대장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일사분란하게 단합하는 전달매개체인 것이다. 이는 문서가 아닌 구두의 목소리와 큰소리로 울리는 기물의 형태이다. 위 기록은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구두전령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조선시대 여러 사료에서 보이는 전령이란 단어는, 위의 기사처럼 신표를 가지고 구두로 전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임금이 명령을 전하는 것도 전령이라고 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는 문서화 된 전령도 전령이라고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불분명한 해석이 문서화된 전령이 가진 내용과 그 행정체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른 행정문서에 비해 전령이 가진 특징은 행정의 생략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都司 靖國 葉家丁이 와서 말하기를, ‘도망병들이 지금 이 위관과 委官 葛時芳을 결박하여 동대문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하니, 빨리 구제해주시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훈련도감의 군인을 출동시키도록 허락은 하였으나 만약 병조에서 公事를 만들어 모으면 지체될 것 같습니다. 標信을 내어 傳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²⁰⁾

위 기사처럼 병조에서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사안을 처리한다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만약 표신을 가지고 전령을 보내면 이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선시대 문서로 작성한 전령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 정약용의 언급은 많은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다. 정약용은 전령을 배자와 관련하여 설명

19)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128~129쪽 참조.

20) 『조선왕조실록』, 선조 133권, 34년(1601 신축) 1월 3일(임인), 윤안성이 위관들의 보호를 위해 훈련도감 군인을 즉각 출동시키자고 하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牌子라는 것은 軍令의 글을 전하는 것이다. 군영에는 본래 防牌가 있는데, 바깥면에 사람의 형상을 한 짐승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다. 대장이 文帖으로 여러 장교와 군현에 명령을 전한다면, 종이를 방패를 탁본하여 ‘軍令’이라 써서 위엄과 신임을 보였다. 옛날 萬曆시절 중국의 병사들이 동쪽으로 내려왔을 적에, 提督 李如松, 經理 楊鎬가 일찍이 배자전령을 사용하였으니, 당시에 군교를 역임했던 집안에는 아직도 전해오는 것이 있다. 이에 곧 俗儒들이 착오하여 무릇 존자가 천한 자에게 써 주는 것을 곧 배자라 이름하고, 작은 서찰에다가 쇠약하고 졸렬한 말들로 작성하여 ‘배자’라고 하면서 서리들에게 주고, 노복들에게 주니, 어찌 차이 나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배자는 ‘배지’라고 또한 말한다. 일찍이 譯書를 보건대, 오직 皇帝의 명령을 ‘皇旨’, ‘詔旨’라고 칭하니, 필부가 참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日本의 풍속에 서로 공경하는 곳을 ‘殿’이라 하니,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²¹⁾

정약용의 위의 언급은 전령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 장교가 군현에 명령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방패의 모양을 베껴 이에 ‘軍令’이라 써서 그 위엄과 신표로서 사용하였는데, 이가 바로 배자라는 것이다. 즉 이는 배자가 대장의 명령에 대한 엄정성과 신임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배자가 바로 전령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배자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정약용의 언급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문건이 지은 목재일기에 배자라는 용어가 수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이문건은 임란 이전에 사람으로 그 이전부터 배자가 사용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령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895년에 발표한 「公文類別及式樣」의 조항을 들 수 있겠다. 이 자료를 통해 전령의 성격을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一, 訓令은 上官이 管轄하는 官吏와 監督에 屬한 官吏에게 下하는 命令을 云翕 前

21) “牌子者, 軍令之書傳也. 軍中本有防牌, 外面刻畫人獸之面, 大將以文帖, 傳令於列校列郡, 則紙搨牌面下書軍令, 以示威信. 昔在萬曆, 天兵東出, 李提督名如松, 楊經理鎬, 嘗用牌子傳令, 當時軍校之家, 尙有傳者. 乃俗儒錯認, 凡尊者下書于賤者, 卽名牌子, 小紙片札, 衰颯陋拙之語, 名之曰牌子, 以寄吏胥, 以寄奴僕, 豈不羞哉. ○然且牌子亦謂之牌旨, 嘗見譯書, 唯皇帝之命, 稱皇旨詔旨, 非匹夫所得僭也. 日本之俗, 凡相敬處稱殿, 何以異是.” 附「雜纂集」第24卷, 「雅言覺非」卷2, 牌子, 第1集, 58쪽.

日에 用호든 關飭과 札飭과 管下에 傳令과 甘結等은 다 廢止호고 勅令所定으로만 施行호야 訓令이라 改稱호미 可흠.

一, 告示는 各官廳에서 人民에게 告知호믈 云흠 前日에 用호든 民間傳令과 揭榜等을 廢止호고 告示라 改稱호미 可흠.²²⁾

위 조항은 기존에 사용하던 조선시대 관문서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 전령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령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령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수령이 管下의 아전들에게 내리는 명령서에다가, 대민에게 반포하는 고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영에서 사용한 전령의 성격은 『壯勇營大節目』의 「文牒」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장용영대절목』에서

“전령은 사체가 존엄하여 각각의 등분이 있으니, 大將이하의 別將, 把摠을 새로 제수할 때 사용하는 전령과 내영과 외영에 분부할 때 사용하는 전령이 있다.”²³⁾

라고 하였다. 전령의 사용처에 대해 대장이하의 별장을 새로 제수할 때 작성한다고 하였고, 또 내영과 외영에 분부를 할 때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령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 시점을 따져봐야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임명과 분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령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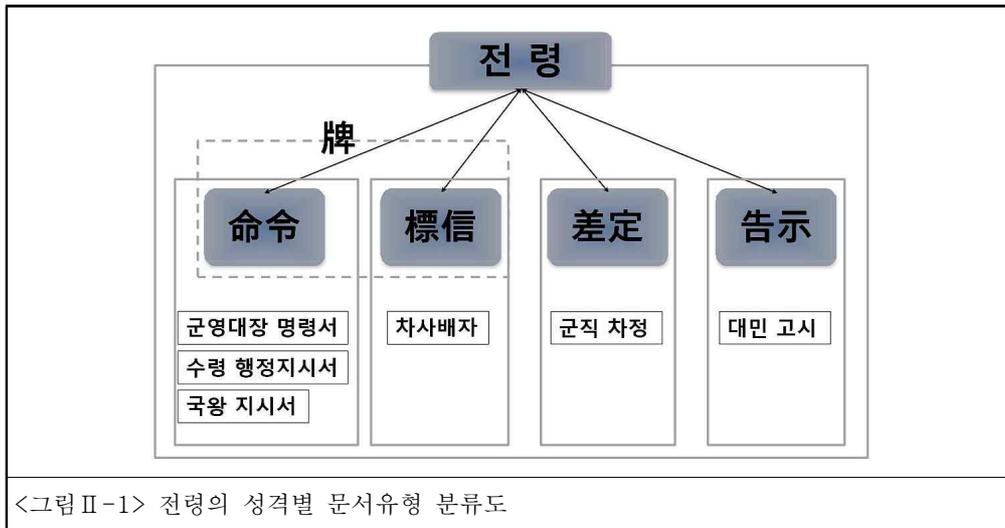
정약용은 수령의 捕權을 설명하면서 누가 소송을 하면, 수령은 민간에 차사를 내보는데 이때 紅帖을 같이 보낸다고 하였다.²⁴⁾ 이 홍첩은 바로 ‘관인을 날인한 전령’이라고 부기하고 있다. 이 전령은 민인을 체포하기 위해 차사에게 발급하는 배자를 말한다. 즉 배자 자체가 전령으로 인식하였다는 대목이다.

위의 관련 기록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전령이 가진 성격과 활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22) 內閣記錄局官報課, 《官報》 第七十七號, 「3. 彙報」, 公文類別及式樣, 開國五百四年六月一日 月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

23) “傳令段, 事體尊嚴, 各有等分, 有大將以下·別將·把摠新除時傳令, 有內外營分付之傳令.” 「文牒」, 『壯勇營大節目』, 장서각 소장 K2-3369.

24) 『牧民心書』 권2, 제5부 吏典 六條, 제2장 馭衆. 목민심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자료를 참고한다.



위 도표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 문서 전령이 가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도표화 한 것이다. 전령은 군영과 관련이 있는 문서이지만, 수령이 행정문서로도 사용하였다. 전령은 첫째 군의 대장과 외방 수령이 관하의 행정실무인이나 민인들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군의 대장과 수령뿐만 아니라, 이후 정조는 군부통솔권을 가진 국왕으로서 자신과 밀접한 군부에 임명과 지시서로서 활용을 하는 과격을 이루기도 한다. 둘째는 수령이 차사를 보내 민인을 체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주로 배자라 지칭하는데, 수령의 체포권에 대한 하나의 신표로서 작용하였으며, 때로는 전령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군직에 임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군직도 기존에는 차접을 사용하여 임명을 하였으나, 차접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런 절차를 생략하여 손쉽게 전령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민간에 국가적인 사안이나, 향촌의 여러 禁斷할 일로 고시하는 것에 전령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명칭으로 전령과 榜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고시하는 전령은 국왕의 율음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수령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효유할 일이 생기면 큰길가의 벽면에 붙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의 지시, 신표, 차정, 고시는 관부문서가 갖는 행정문서의 일반적인 성격이다. 전령도 행정문서로 사용하였으므로 동시에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 네 가지 성격을 전령이 가진 특성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전령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임진왜란은 조선의 정치, 사회, 군사체제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기폭제가 된다. 군사적으로 倭軍이 조총으로 長兵戰術이 가능하자, 조선은 활과 화기로만 싸우는 방어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며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였다. 이에 선조는 명나라 장수 李如松이 사용한 浙江兵法²⁵⁾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적극 도입한다. 이후 선조는 1593년에 訓練都監과 東伍軍을 창설하면서 이 병법의 체제대로 운영을 하였다.²⁶⁾

조선시대 속오군은 面里에 哨·旗·隊라는 하부조직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진관체제의 郡·縣 단위로 민인을 통제하던 것에 대한 변화이다. 또 거주지 중심의 훈련으로 면리에까지 군사조직을 갖추고 面任과 里任 등을 正軍과 保人으로 차등하였다. 특히 良民과 賤民을 함께 속오군을 비롯한 군역에 편입시킴으로 인해, 천민에 대한 신분정책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곧 노주와 노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국가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⁷⁾

전령은 군영에서 사용한 것과 함께 수령이 사용한 것도 오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보이는 金中淸(1567~1629)의 언급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작성된 점에서 본다면, 수령이 전령을 사용한 것은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릇 군의 일은 기미가 있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傳습을 사용하여 그 호령을 급하게 한즉, 전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軍陣에 임한 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령이 이런 민들을 부림에 큰 일이나 자잘한 일을 할 것이 모두 전령을 사용합니다. 군사의 행렬이 대오를 잃으면 반드시 위엄으로써 하는 까닭에 軍律을 두어 그 형법을 엄하게 한즉, 군율이라는 것은 또한 군진에 임한 자가 행하는 바이나, 지금 수령이 여기 민들을 형벌함에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모두 군율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전령을 사용하는 까닭에 官습이 성화보다 급하고, 오직 그 군율을 행하는 까닭에 아전의 법이 시랑과 호랑이보다 혹독합니다. 성

25) 戚繼光의 紀效新書에 있는 병법으로 방패와 조총에 전통적인 화기를 같이 사용하며 탄환을 막는 솜옷까지 입고 싸우는 방법이다.

26) 徐台源, 『朝鮮 후기 地方軍制研究 -營將制를 중심으로』, 해안, 1987, 30~33쪽.

27) 徐台源, 위의 책(1987), 41쪽.

화보다 급한 명령으로 굶주려 죽음에 다다른 민들을 몰아간다면, 어찌 뜻대로 명령을 따르게 하겠습니까? 명령을 따르게 할 수 없는 연고를 가지고서 갑자기 사랑과 호랑이보다 혹독한 법으로 다스린다면, 어찌 그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²⁸⁾

위 언급을 통해 임란 때부터 수령이 전령을 발급하였으며, 오히려 너무 남발하여 폐단이 생김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시 두 가지 점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전령의 신속성이다. 전령과 군율은 목숨을 걸고 하는 군문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 급박함과 강력함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수령이 사용한다면 신속성과 강력함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수령이 전령을 사용하면서 생긴 폐단이다. 수령의 입장에서 전령을 사용한다면 막강한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력한 통치를 당하는 꼴이다. 특히 수령의 전령이라는 것은 세금의 독촉이나 사람을 잡아오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전령에 있어 문서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정조일 것이다. 정조는 전령의 문서식을 제정하고 전령이 가진 문서의 의미를 격상시켜 놓았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국왕이 발급하는 하교문서는 교유서와 유지가 있는데, 정조는 다시 전령이란 문서를 통해 친위부대인 별군직과 장용영의 여러 군관에 대해 군영과 화성축조에 관련한 일체의 임명과 지시를 내렸다. 이는 군영의 대장이나 수령이 발급하는 전령을 국왕이 사용하는 파격을 이룬 것이다.

국왕이 발급자로서 내린 전령은 주로 별군직에 대한 임명장이다. 그러나 정조가 전령으로 발급한 것은 임명장 외에 지시한 전령이 있다. 이러한 지시전령은 등록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화성의 축조와 관련하여 수원부에 내린 것이다. 이는 정조 18년인 1794년부터 1798년까지 정조가 李儒敬, 趙心泰, 徐有隣에게 내린 18건의 전령으로, 이는 『華城城役儀軌』에 그 내용이 남아 있다. 또 1790(정조 14)년 4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내린 32건의 전령이 『水原府旨令謄錄』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의 형태는 먼저 정조가 수원부에

28) “…전략 夫軍事有機，不可後期，故用傳令，以憑其號令，則傳令者，必臨陣者之所用也，而今守令之令斯民也，巨事細事，皆用傳令。師行失伍，必以威整，故有軍律，以嚴其刑法，則軍律者，亦臨陣者之所行也，而今守令之刑斯民也，大罪小罪，皆行軍律。惟其用傳令，故官令憑於星火，惟其行軍律，故吏法毒於豺虎。以憑於星火之令，驅飢饉垂死之民，其能如意從令乎？以不能從令之故，遽治以毒於豺虎之法，其能保其軀命乎？ 후략…” 「壬辰義兵時擬上疏」, 金中淸, 『苟全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속 14,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53~54쪽.

내린 전령을 기록하였고, 조심태가 그에 따라 처리결과를 작성해 둔 것이다. 그러므로 국왕이 발급한 지시전령은 모두 정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실물 1건과 등록 50건이 남아있는 셈이다. 정조와 관련한 전령은 친위부대인 별군직과 장용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조가 발급한 전령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갑오개혁은 공문서의 제도와 양식에 있어 일대 변혁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규정은 1894년 7월에 공시한 「各府各衙門通行規則」과 1895년 6월에 발표한 「公文類別及式樣」이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조선시대 전령과 감결이란 명칭을 모두 폐지하고 ‘訓令’으로 단일화시켰던 것이다. 지시 명령하는 전령뿐만 아니라, 민간에 고시하는 형태의 전령도 ‘告示’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²⁹⁾ 즉 1895년을 기점으로 전령이란 용어는 모두 바뀌어 훈령과 고시로 통일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령이란 용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1908년까지 이 문서가 계속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공문서의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전령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위의 규정 자체가 중앙정부의 규정인 만큼 지방까지 시행을 하려면 기한이 필요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시기 남아 있는 전령이 대체로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갑오개혁을 통해 面과 洞의 구조가 바뀐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면과 동의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 조세에 있어 세입과 세출이 전문화되고, 면의 사업이 조직화됨으로 인해 면임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므로 面任은 面長으로 洞任은 洞長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로부터 더 이상 고을 수령의 휘하에서 잡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지방행정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문서 규정을 제정한 것보다, 오히려 지방의 행정구조와 임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화된 것이 전령을 더 이상 필요 없게 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전근대적인 문서제도가 근대화로 이양하면서 발생한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은 시대적인 조류에 의하여 열강으로부터 문화유입과 과학의 발달로 모든 제도가 근대화로 탈바꿈을 하였다. 이전부터 역마를 이용해 전달하던 관부의 關文과 移文은 電信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電報로서 대체하

29) 주) 23번 참조.

기도 한다.³⁰⁾ 관부에서 사용하던 지방행정 속에 전령도 근대화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보여준 관직의 위계성과 전달의 신속성이란 역할을 다하고, 이후 근대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 이 때 공문서를 전보로서 전달한 자료로 장서각에 소장하고 있는 『札移電存案』을 들 수 있겠다. 『札移電存案』, 장서각 소장 K2-3534.

Ⅲ. 전령의 행이체계와 문서식

조선시대에 문서가 가진 문서행정과 문서서식은 또 하나의 제도이다. 행정 문서가 형태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일정한 체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제적으로 면과 행정의 실용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문서행정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수반하는 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의 지나친 간섭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서의 행이체계는 중국에 비하면 체계적인 定式이 부족하고 또 임시적으로 운용된 부분이 있다. 특히 임명에 관한 체계는 일정한 제도가 없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³¹⁾ 법전에 실려 있는 문서행이에 대한 조항도 官階에 따른 문서명칭과 문서의 서식만을 볼 수 있다. 문서행정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이 없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단편적인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문서가 가진 구체적인 행정부의 행이체계와 그 문서가 가진 성격과 기능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전령 또한 문서의 행이체계를 적어놓은 구체적인 사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중앙 군영에서 간행한 절목과 사례나 목민서에 기재된 몇 가지 사항을 통해 전령의 행이체계를 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전령의 행이체계와 관련한 사료와 실제문서에 기재된 여러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그 행이체계와 문서의 서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전령의 행이체계

전령은 여타의 관문서와 같이 상부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면 하부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하는 授受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령을 수취하는

31) “我東則勿論京外吏典，撥補陞黜，并無定制，法律文案，并無定格，凡事鹵莽疏闊，公務安得不散漫無統乎。『論吏員役滿陞撥之制』，柳壽垣，『迂書』第7卷。

향촌의 풍헌을 비롯한 면임과 동임 등은 官屬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관속들이 사용하는 첩정과 고목 등의 문서를 가지고 수령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여타의 관문서의 행이체계와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전령의 발급과정을 起案, 成帖, 轉達, 回報로 그 단계를 구분하여 행이체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起案

기안이란 공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문은 내부 행이용과 외부 시행령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외방의 공문이 주로 외부시행령으로 행하는만큼, 전령도 외부시행령의 범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문서의 기안은 행정적인 사안의 발생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전령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크게 상부인 관찰사의 지시와 민인들의 민원신청, 수령이 민간에 발생한 사안을 보거나 듣고 한 이후에 자체적인 처리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는 관료사회인만큼 상부에서 전하는 공문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으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도 상부 지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상부가 사안해결을 지시한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아전들이 근무태만에서 빚어지는 결과이므로, 이에 대해서 따로 책자에 기입하고 아전들의 근무상태를 살펴라고 하였다. 감영의 지시에 기한을 어기면 수령 자신이 문책을 당할 수 있으므로, 태만한 아전은 엄한 벌을 주더라도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³³⁾ 감영의 관찰사는 수령의 근무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때로는 바로 파직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관료체제의 구조 속에서 수령의 감영에 대한 구속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사안은 민인들의 소송에 의한 전령의 발급이다. 전령에서 민인의 소송에 의할 때는 기두어에 ‘卽接~則’, ‘卽見~則’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사안이 발생하면 전령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기안을 한다. 기안하

32) 公文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공문서의 개념’을 참고함.

33) 『牧民心書』 卷1, 第3部 奉公六條, 제4장 文報.

는 주체는 수령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행정에 능한 아전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안은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에 노련한 아전이나, 문장에 능통한 이로 하여금 확인을 받았으며, 또 이들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먼저 작명을 하게 하였다.³⁴⁾ 이후에 수령이 압을 하여 결재를 하고, 관인을 날인하는 성첩을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② 成帖

전령 문서를 작성했다면 결재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成帖이라고 하였다. 즉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문서를 작성하고 ‘관장의 花押을 받거나, 官印을 踏印하는 것을 成帖’³⁵⁾이라고 명시하였다. 성첩을 하는 이유는 관장의 결재를 통해서 문서의 공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끔, 문서가 가진 신빙이란 권한을 강화해주는 역할 때문이다. 또한 송사와 관련한 전령의 경우는 훗날에 증빙의 자료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관장은 전령을 성첩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발생한 사안이 예민할 경우에는 아전의 농간에 의해 판단을 잘못한다면 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서 수령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또 법전 등을 참고하여 한글자라도 조심히 성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래는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성첩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一字半句라도 함부로 성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6典 36條를 참고하여 일일이 검사하고 그 안에 조금도 간계와 허위가 들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안 뒤에 성첩하는 것이 옳다. 혹시 의심스러운 것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首吏와 담당 아전을 불러 자세한 사정을 조사하고 그 본말을 분명히 안 후에 성첩하는 것이 옳다. 매양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 아는 체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두리몽실 의심스러운 것을 그냥 삼킨 채 다만 문서 끝에 서명하는 것만 착실히 하다가 아전들의 술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³⁶⁾

34) “凡各項報牒，別定能文老鍊之吏數人，爲都檢察，各樣公納收捧，傳令於民間者，必使座首吏房看檢，先爲着名後，始可成貼以給。”『牧綱』，『朝鮮民政資料叢書』，여강출판사，1987，126쪽.

35) “押署打印曰，成帖。”『牧民心書』卷1，第1部 赴任六條，제6장 莅事；“成帖，打印而受押。”『牧民心書』卷3，第6部 戶典六條，제4장 戶籍.

36) 『牧民心書』卷1，第1部 赴任六條，제6장 莅事. 이런 지적은 다른 목민서에서도 확인할

위의 언급은 전령을 성첩함에 그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중간에 헛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수리나 담당 아전에게 그 내용을 점검받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위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꼭 책자에 謄錄하는 것을 강조한다.³⁷⁾ 미리 책자에다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아전들이 잘못 보고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령은 관부문서로서 민간에 큰 위협을 가할 때도 있는데, 이 때문에 벽에 게시하는 전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자도 회수를 하여 효주처리를 하고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자를 알지 못하는 민들이 답인한 관문서를 가지고 가면 미리 겁을 먹는 이유에서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³⁸⁾

③ 轉達

성첩이 문서의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증빙이라는 결과를 부여하는 행위라면, 공문의 전달은 공문서의 효력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문서시행 행위로 볼 수 있다. 전달 방법에 있어 전령은 여러 경우로 하고 있다. 그 전달 경로는 시간적으로 평시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시에는 관아의 문서수발을 담당하는 承發이나 主人이라 불리는 邸卒이 담당한다. 이들은 관아와 면리의 문서수발을 담당하는 하리들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면리의 풍헌과 약정, 또는 면주인이나 면임에게 주었으며, 그냥 민인에게 주어 그 전달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급한 사안일 때는 관인이나 저졸을 보냈다.

전령은 향촌의 입장들이 민인들에게 잘 통지해야 하는데, 귀찮은 사안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령은 민인들에게 전령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인들의 구두진술에 의존하는 방법을 취

수 있다. “傳令於民間者，必使座首吏房看檢，先爲着名後，始可成貼以給。每考前例謄錄然後，庶無作奸之弊，至於無例無謄錄之事，切勿輕許，而尤當用力於斂民等事。” 「牧綱」, 1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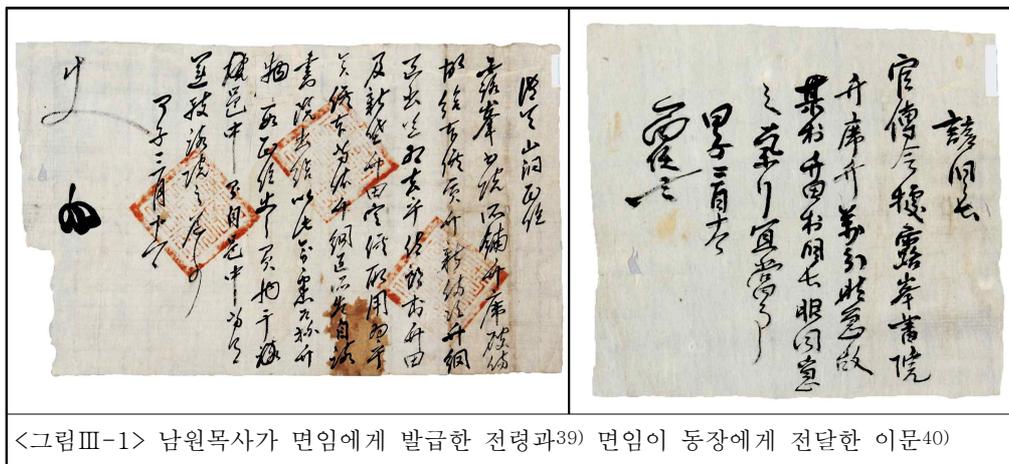
37) “凡干傳令及牌子，必使該掌及刑吏，先爲置簿於別冊子後，成貼以給，則可以杜中間奸僞之弊。” 「牧綱」, 122쪽.

38) “且傳令輪示民間，可以街路店壁上揭付者外，皆爲還納，至於牌子亦然，卽地爻周，俾無中間闕失匿置之弊。蓋愚氓不識文字者，但見踏印片紙，則生恫故也。” 「牧綱」, 122쪽.

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아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신자의 회보를 요구하였다. 전령에 그 거행일자과 처리과정을 빨리 보고하라고 함께 지시를 하였고, 전령을 받은 수취인은 첩정 등의 보고 문서를 사용하여 수령에게 받았다는 날짜를 표시하는 ‘到付日時’와 사안을 해결하는 일체의 과정이라는 ‘舉行形止’를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전령을 전달하는 과정에 면주인이 민촌에 들어가 폐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사람을 잡아오는 장차를 보낼 때는 그 폐단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령은 이에 대해 관아와 민촌간의 거리와 시각을 표시하는 목패를 만들어 전달자에게 전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수령의 전령을 받으면 관아의 공형이나 육방의 아전들은 다시 私通이라는 문서를 통해 그 사안을 전달하였다. 때로는 이렇게 관부에서 행이하는 문서가 아닌, 향촌의 실무인이 서로 전하는 문서를 이문이라 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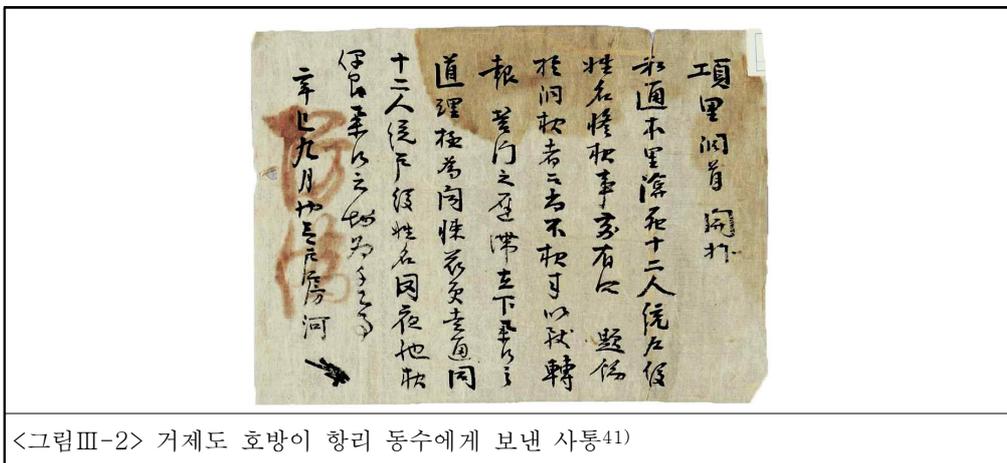
<그림III-1> 남원목사가 면임에게 발급한 전령과³⁹⁾ 면임이 동장에게 전달한 이문⁴⁰⁾

위의 문서는 남원목사가 면임에게 보내는 전령과 면임이 이를 해당 마을의

39) “傳令, 山洞面任. 露峯書院所鋪竹席破傷, 故給本價, 買竹新備次, 竹網匠出送爲去乎. 侍郎村竹田, 及新垵竹田, 定價取用爲乎矣. 價本當依竹網匠所告, 自該書院出給, 以此知悉爲旃, 竹物段, 面任使之負納于邑中, 則自邑中, 當有運致該院之道事. 甲子三月十一日 使[職押] [押]” 『고문서집성 72 -남원·구례 삭녕최씨편(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306쪽.

40) “該洞長. 官傳令據, 露峯書院竹席竹, 萬分時急. 故某村竹田, 村洞長眼同, 急之舉行, 宜當事. 甲子三月十八日 面任 [手決]” 『고문서집성 72 -남원·구례 삭녕최씨편(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307쪽.

동장에게 지시하는 이문이다. 그 내용은 노봉서원의 대나무 자리가 파손되어 이에 대한 대나무를 사서 보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전령을 가지고 면임이 다시 대나무 밭이 있는 해당 동의 동장에게 시급하므로 빨리 거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 사료에 주로 향촌의 실무인들이 주고받는 문서를 이문으로 칭하고 있었다. 실제로 문서명칭이 없는 것이지만, 이 문서도 이문으로 추정 하겠다.



<그림Ⅲ-2> 거제도 호방이 항리 동수에게 보낸 사통41)

위 문서는 관아의 戶房이 거제도 項里의 洞首에게 보낸 사통이다. 이전에 보낸 題辭에 익사한 열 두 사람의 성명을 적어 보내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으므로 빨리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수령이 향촌에 보내는 행정문서가 전령이라면 관아의 아전들이 보내는 문서는 사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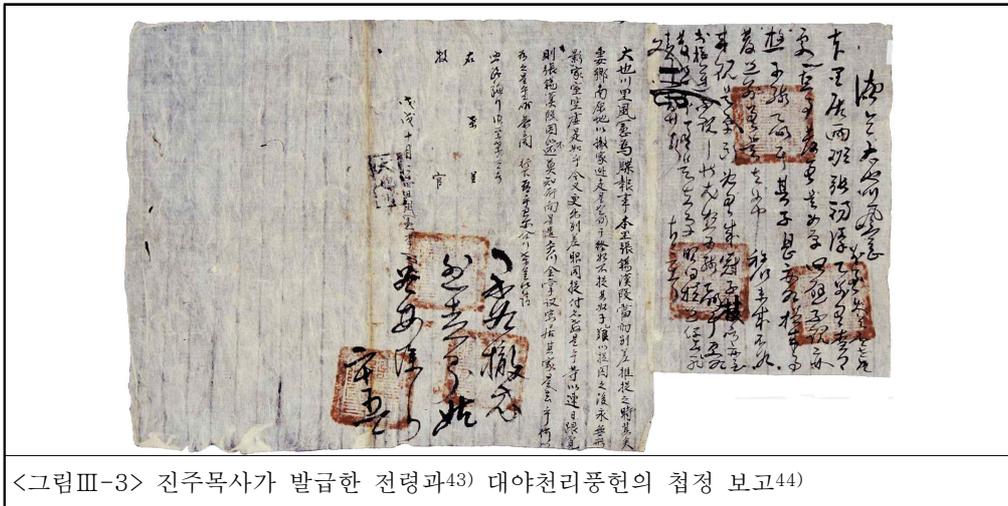
전령의 성첩이 공문서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행위라면 그 전달은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공문의 효력이 다하면 일정 기간 보전을 거친다음 휴지로 처리하였다.

41) “項里洞首 開拆. 私通本里, 滄死十二人統戶役姓名修報事, 前有所題筋於洞報者, 而尙不報來, 以致轉報營門之遲滯, 在下舉行之道理, 極爲悶悚. 茲更走通, 同十二人統戶役姓名, 罔夜馳報, 俾卽舉行之地爲乎乙事. 辛巳九月初三日 戶房 河 [手決] [주서: 防僞]” 『古文書集成 35, -거제 구조라리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④ 回報

하나의 사안에 따라 전령을 발급하면, 향촌 실무인인 면임이나 동장은 그 사안을 해결하고, 그에 따라 다시 문서로 보고하는 행정체계를 갖춘다. 전령이 함유하고 있는 성격에 따라 보고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령을 받은 풍헌이나 면임들은 다시 그 하부 조직체계인 동장에게 사안처리를 지시하는 문서를 내렸다. 면임과 동장은 전해받은 전령에 의해 다시 수령에게牒呈으로 보고를 하였고, 경우에 따라 文報, 到付狀, 告目을 사용하였다.

전령을 받으면 면임은 그 사안의 처리 결과를 첩정으로 보고하였다. 면임은 전령을 잘 접수했다는 도부일시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전말을 첩정에 의해 보고한 것이다.⁴²⁾ 다음은 이와 관련한 사례의 문서이다.



<그림Ⅲ-3> 진주목사가 발급한 전령과⁴³⁾ 대야천리풍헌의 첩정 보고⁴⁴⁾

42) “兼於尊位爲到付事. 伏承傳令, 兵營門甘結據, 本面內米租, 間勿爲出境之意教是故, 一一知委形止, 先即馳報爲臥乎事,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行郡守 壬辰八月二十日 尊位宣(手決)” 高宗29年(1892) 寶城 行郡守 발급 兼於尊位牒呈, 규장각 웹사이트. 이 첩정 외에도 전령에 의해 ‘爲到付事’의 목적으로 올린 첩정이 다수가 있다. 앞으로 규장각 웹사이트의 자료는 ‘규장각’으로 통칭하여 서술하겠다.

43) “傳令 大也川風憲別差使金靈걸. 本里居兩班張錫漢乙, 別差查問處置事, 發差是如乎. 回避不現, 亦極可駭乙仍于, 其子息亦爲捉來事, 發送別差是在如中, 稱以未來, 不爲來現是乎所. 既有成冠子枝所, 亦至於拒逆不現之狀, 尤極可駭乙仍于, 更爲發送別差是去乎, 眼同捉送, 俾無罪責之弊者. 十月二十一日 使[職押][押]” 『고문서집성 60 -진주 진양하씨단지종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47쪽.

44) “大也川里風憲爲牒報事. 本里張錫漢段, 當初別差推捉之時, 其矣妻鄉南原地, 以撤家逃走是如乙仍于. 終始不捉, 其奴子乙, 艱以捉囚之後, 永無形影, 家室空虛是如乎. 今又更出別差, 眼同捉付亦教是乎等以. 連日跟覓, 則張錫漢段, 因以不還, 莫知所向是遣. 矢川金掌議,

위 문서는 淸州牧使가 대야천의 풍헌에게 보낸 전령이다. 전령의 내용은 別差를 보내 조사할 일로 張錫漢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장석한이 피해 다니면서 오지 않으니, 다시 별차를 보내므로 이들과 함께 장석한을 잡아오라는 내용이 다. 이에 대해 대야천 풍헌이 첩정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장석한이 이미 집을 버리고 그의 처가 있는 남원으로 도망갔으므로 찾을 수 없었는데, 다시 별차가 와서 가보니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찾을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진주목사가 이 첩정에 대해 제사를 내렸는데, 도망간 이를 잡을 수 없다면 그냥 두라고 하여 그 사안을 일단락시켰다. 전령에 대한 보고체계는 이 경우와 같이 면임과 동임은 주로 첩정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첩정은 서목과 함께 보고하는 문서이므로, 서목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다.

지방관원의 전령에 대해 실무자들은 ‘到付狀’이라는 명칭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도부라는 의미는 ‘공문의 접수와 실무적인 처리’를 동시에 포함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Ⅲ-4> 안동부사가 발급한 전령과⁴⁵⁾ 각 동장의 도부장 보고⁴⁶⁾

寓居其家是去乎，何以爲之是乎乙喻，叅商行下爲乎良尔，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牒呈牧官 戊戌十月二十四日 風憲李[押] [제사: 果爲撤家逃走則姑爲安徐向事 二十五日]”

위 문서는 安東府使가 사천, 각리, 송천, 신평동의 동장에게 내린 전령과 이것의 처리를 보고하는 각 동의 도부장이다. 인상에 사는 박겸춘이 자신의 부모가 묻힌 묘소의 근처에 누가 투장을 하였는데 이를 잡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안동부사는 이를 보고서 그 무덤의 주인을 찾아서 보고하라는 전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 개동의 동장이 자신의 동네에는 투장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를 찾아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도부장을 올린 것이다.

전령의 내용에 60일 내로 찾아내라고 했지만, 도부장의 일자를 보면 다음 날 바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명의 동장들이 일제히 같은 날짜에 올린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동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의 없는 행정절차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전령의 추신에 ‘도부장을 납부할 것(到付狀 收納次)’이라고 한 것에 의해 각 동장들이 도부장을 제출한 것이다. 향촌의 문서에는 검은색 인장인 묵인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직임과 상관없는 사람이 중간에 위작하여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⁴⁷⁾ 위의 문서도 각 동마다 해당동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45) “傳令 沙川角里松川新坪洞長. 卽接仁上居朴謙春訴狀內, 民之親山, 在於北面彥谷是加尼, 今初二日夜, 不知何許人, 偷埋於單腦頭不步之地. 故近旬搜探, 查無形跡, 傳令于山下洞, 搜覓塚主, 卽刻督掘亦爲置. 近日偷埋之弊, 便成一大變風, 處處訴狀, 雪片飛到, 似此弊習, 官所痛憎. 汝矣各洞, 其在山下附近偷埋塚主, 必無不知之理, 令到六十日內, 若不搜納塚主, 該偷塚, 使汝矣等, 擔着掘去矣, 除尋常, 惕念舉行向事. 丙午十月十三日 行官[職押][押] 到付狀收納次”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영해 함양박씨 소호종택.

46) “北面角里到付狀. 右到付爲白內段, 伏見傳令, 彥谷朴塚腦後偷埋之事教是乃, 本洞素無偷埋葬之人. 故未得搜探之意, 茲以到付爲臥事, 行下向教事. 丙午十月十四日 洞任權 角里 [墨印: 北面角里第一百四十三統首之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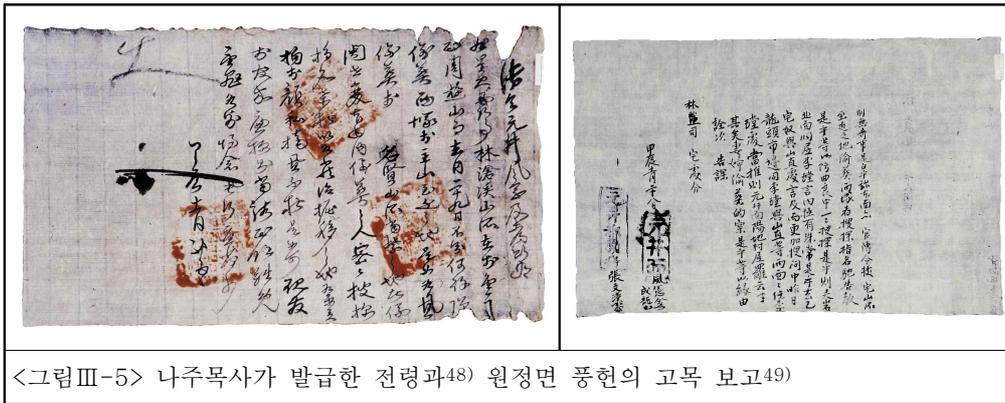
“北松川到付狀. 右到付爲白內段, 伏見傳令辭意, 彥谷偷埋之事, 本洞素無偷埋之人. 故不得搜覓, 茲以到付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丙午十月十四日 李甲仁 [墨印: 北面松上第一百三十三統首之章]”

“北新坪到付狀. 右到付爲白內段, 伏見傳令辭意, 彥谷偷埋之事, 本洞素無偷埋之人. 故不得搜覓, 茲以到付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丙午十月十四日 洞長安太云 [墨印: 北面新坪第四百一十一統首之章]”

“北沙川到付狀. 右到付爲白內段, 伏見傳令辭意, 彥谷偷埋之事, 本洞素無偷埋之人. 故不得搜覓, 茲以到付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丙午十月十四日 洞長朴大福 [墨印: 北面沙川第一百四十四統首之章]”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영해 함양박씨 소호종택.

47) “향촌의 풍헌과 약정이 모두 도장이 없어서 관아에 올라오는 보고 문건들이 혹 중간 僞作이 많다. 그 소홀함이 이와 같다. 마땅히 목각으로 도장을 만들어 먹으로 찍고 인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혹한 면민들의 회의의 보고서가 있어도 또한 통용할 것이다. 때문에 風憲之印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땅히 풍헌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야 할 것이다. 도장이 만들어지면 나누어주면서 약속하기를 도장이 안 찍힌 것은 무효로 한다고 할 것이다.” 『牧民心書』 권1, 제1부 赴任 六條, 제6장 莅事.

수령이 발급한 전령에 대해 告目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Ⅲ-5> 나주목사가 발급한 전령과⁴⁸⁾ 원정면 풍헌의 고목 보고⁴⁹⁾

위의 문서는 1784년 羅州牧使가 元井面에 사는 풍헌과 도영장에게 발급한 전령과 처리내용을 보고하는 원정면 풍헌의 고목이다. 나주목사가 풍헌에게 발급한 전령의 내용은, 누가 滄溪 林泳의 산소 근처에다가 투장을 했으니, 투장한 무덤의 주인을 찾아내어 이를 이장시키고 그 내용을 첩보하라는 것이다. 이를 맡았던 풍헌 金成龍은 都領將 張文漢과 함께 일일이 탐문하여 元井面 陽地村에 사는 羅云才가 그의 처와 며느리를 투장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에 대해 나주목사에게 고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이후에 풍헌 金成龍은 직접 가서 탐문해본 즉, 나운재의 처와 며느리의 무덤을 그의 마을 뒤로 옮겨갔음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나주목사에게 다시 고목을 올렸다.⁵⁰⁾ 전령을 발급한

48) “傳令元井風憲及都領將 爲星火舉行事. 林滄溪山所, 在於金々面周遊山, 而去月二十九日, 不知何許漢, 偷葬兩塚於主山至近之地是如爲置. 偷葬於__名賢山所當禁之地者, 係關世變, 本面內偷葬之人, 密密搜探, 指名牒報, 以爲嚴治掘移之地爲乎矣. 拘於顏私, 掩置不報是如可, 現發於官家廉探, 則當該面任, 難免重罪, 各別惕念舉行宜當事. 甲辰十一月初五日 使 [花押]” 『고문서집성 67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119쪽, 1784년 羅州牧使 傳令.

49) “別無奇事是白乎於, 本面亦, __官傳令據, __宅山所至近之地, 偷葬兩塚者, 搜探指名馳告教是乎等以. 防曲良中, 一一搜探是乎則, 靈巖北面洞居李(王+堂)言內, 極有殊常是乎去乙. 宅奴與山直處言及, 而更加搜問中, 昨日龍頭市邊, 同李(王+堂)與山直等, 兩面面任, 李(王+堂)處當推則, 元井面陽地村居羅云才, 其矣妻婦, 偷葬的實是乎等以, 緣由詮次告課, 林監司宅處分. 甲辰十一月二十八日 風憲金成龍[押] [목인:元井面] 張文漢[押] [목인:元井都領將]” 『고문서집성 67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120쪽, 1784년 羅州 元井面風憲 告目.

50) “告目 別無奇事是白遺果, 金々面__宅山所近處, 兩塚偷埋事, __官傳令據 密密搜問則, 本

날짜가 11월 5일이고, 첫째 고목을 올린 것이 11월 28일이며, 둘째로 올린 고목은 12월 1일이다. 전령을 발급한지 한 달 정도 걸려 사안을 처리하고 이를 보고한 것이다. 위의 문서는 지방관장이 발급한 전령에 대해 풍헌이 고목이란 문서로 보고를 하였다는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전령이 행정문서로서 향촌에 발급하면, 해당 풍헌이나 면임들은 첩정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고목이나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도부장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문서군이 행정문서로서 전령과 관련한 연관문서로 봐야 할 것이다. 고문서가 갖는 연관문서의 가치는 특정사안에 대해 입체적인 조망을 하는 풍부한 자료이며, 전령이라는 단일문서로서는 사안에 대한 내용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2. 전령의 문서형태와 문서식

1) 문서의 형태적인 특징

① 문서 크기

전령의 형태적인 구분은 국왕이 발급한 것과 군영에서 발급한 임명관련, 지방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왕과 중앙 군영에서 발급한 전령은 크기가 일정한 규식을 정해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지방관의 경우는 종이를 만드는 조지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하는 있는 실물 전령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⁵¹⁾ 규장각 전령 중에 지시하는 전령으로 총 245

面陽地村居羅云才爲名，其妻與婦，偷葬云云是去乙，以此緣由，頃日良中，告日是遺果，卽爲掘移之意，督責則同云才，屑屑發明 因隣里居安再永之作罪也。故直招再永責問，則果無發明而掘去，自當矣。今三十日，冒夜掘去是白去乙，馳往偷葬處，親審摘奸，則果如掘去的實，故又往山殯於其矣村後洞西頭東足，的實是乎等以，緣由詮次告課。甲辰十二月初一日 元井面風憲金成龍[押] [목인:元井面] 都領將張文漢[押] [목인:元井都領將]” 『고문서집성 67 -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120쪽, 1784년 羅州 元井面風憲 告目.

51) 여기의 크기는 논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며,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크기가 불명확한 일부 전령은 제외를 시켰으며, 데이터를 대체적

건이 있는데, 그 크기는 평균적으로 세로가 23.8cm이고, 가로가 51.8cm이다. 또 장서각에 소장한 지시전령 192건의 평균은 세로가 28cm이고, 가로가 59.7cm이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맨눈으로 그냥 보아도 규장각의 전령은 20~25cm사이가 많지만, 장서각 전령은 25~30cm사이가 더러 있다. 규장각에 소장한 전령보다 장서각에 소장한 전령이 세로가 5cm 정도 더 크다. 전령의 세로의 크기는 종이의 일정한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그러나 가로의 크기는 후록의 첩부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서각 소장의 전령이 세로가 더 크다는 것은, 첫째로 제주도에 있는 전령이 30~34cm라는 크기를 일정하게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로 두 기관이 소장한 전체 건수 대비로 평균을 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은 장서각에서 큰 크기의 전령이 몇 개 있다면 이가 크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둘을 합산해 보면 지시하는 전령은 평균적으로 세로 크기는 24~28cm이며, 가로는 52~60cm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군직에 대한 임명 전령의 크기를 살펴보겠다. 규장각 소장의 임명전령은 총 79건이 확인되며, 이의 세로 크기의 평균은 39.3cm이며, 가로는 47.3cm이다. 그리고 장서각 소장은 총 86건이 있으며, 세로는 40.4cm이고, 가로는 46.4cm이다. 이를 부분적으로 본다면 세로가 30cm정도의 크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크기가 큰 70~80cm도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명 전령은 두 기관이 비슷한 건수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균적인 크기는 세로가 40cm이고 가로가 47cm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값일 뿐이니, 즉 30cm와 60cm가 무리를 이룬 가운데 그 중간 값만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전령의 크기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거론하겠다.

그리고 이들보다 크기가 다소 작은 배자전령을 살펴보겠다.⁵²⁾ 배자전령은 지시전령과 섞여 있어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는 청암찰방이 차사에게 발급한 전령이 일괄로 함께 남아 있으니 좋은 자

으로 확인을 하였으나, 전령으로 확실히 분류할 수 없는 몇 개가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서 봐야 할 것이다.

52) 배자전령은 규장각에서 차사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령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하겠다.

료이다. 이에 대한 크기를 살펴보면, 총 건수가 97건이 있는데, 세로가 21.5cm이고 가로가 33.1cm이다. 한 지역에 같은 연도에 동일인이 발급한 것으로 그 크기에 있었어도 일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서각에도 장차에게 발급한 배자전령이 5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로가 23.1cm, 가로가 26.3cm이었다. 배자전령은 지시, 명령전령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전령을 종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지시전령, 임명전령, 배자전령로 나눌 수 있겠다. 지시전령은 총 437건에 평균적인 크기가 세로 24~28cm, 가로 52~60cm로,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임명전령은 총 165건의 평균이 세로 40cm, 가로 47cm로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루었다. 배자전령은 총 102건에 세로 22.3cm, 가로 29.7cm의 크기인데, 앞의 두 전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색을 지닌다.

지방 관장이 발급하는 지시의 전령은 가로로 긴 형태가 많다. 그 이유는 문장의 구성이나 후록의 첨부로 인해 가로로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로의 크기는 일반 전령과 비슷하다. 실물 문서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세로의 길이가 20cm에서 30cm 사이이고, 그 중에서도 20~25cm 사이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즉 남자 성인 손의 한 뼘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이다. 반면에 가로의 길이는 문서의 양상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가로의 길이는 작게는 20cm부터 매우 긴 것은 350cm에⁵³⁾ 이르는 것이 있다.

<표Ⅲ-1> 가로크기가 1미터를 넘는 지시전령 목록표

순번	크기	연도	발급자	수취자	소장처 및 사유
1	28×117	1891	忠淸道觀察使	營校金商鎬	고문서 규장각 글씨가 큼
2	19×108	丙申	永春縣監	出使將差	고문서 규장각 글씨가 큼
3	40×126	1905	全羅北道觀察使	全州參禮鳳翔會民等	고문서 규장각 글씨가 큼
4	20×112	1891	信川郡守	加串執綱	고문서 규장각

53) 『고문서집성』 94 -영해 재령이씨편의 1899년 영해군수가 서초면 각동의 대소민인에게 발급한 지시전령은 20×352cm이다.

					후록 첨부
5	17×197	癸酉	官	北二面任	고문서 규장각 순영의 한글감결 있음
6	30×204	1755	慶州府	南東, 南西 風憲	고문서집성 50 국왕의 혼유를 전하는 내용
7	28×203	1772	慶州府	南面 風憲	고문서집성 50 국왕의 혼유를 전하는 내용
8	18.5×208	1820	南原府	延山訓長 及各里居 大小民人	고문서집성 72 星院의 최씨 선세 유적지에 함부로 이 름을 새기거나 바위를 빼지 말라는 금 지
9	22×109	1868	靈巖郡行 官不坐所	郡終 龜巖 祠宇首奴	고문서집성 22 대원군이 서원철폐를 명하였으니 이를 따르라는 상부의 보고를 전하는 내용
10	18×100	1889	慶州府尹	面任	고문서집성 66 동중에서 함부로 돈을 거두지 말라면서 해당 조건을 후록 함
11	20×352	1899	寧海郡守	西初面 各 洞 大小民 人	고문서집성 94 量地衙門에서 훈령한 것에 받을 측량한 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
12	20×197	1901	慶州郡守	內東面 執 綱 各里 洞任	고문서집성 62 觀察 중중에서 습궤하는 것에 돈을 각 출하는 것을 전하고 인명을 후록 함
13	20×140	1902		朴隣培	고문서집성 30 선조의 분묘에 투장한 것을 조치해달라 는 소장에 의해 내린다는 내용
14	22×164	1904	警務使	河都事宅	고문서집성 56 선조 하위지의 祠版에 대해 소장을 올 린 것에 상부에서 지시한 것을 전하는 내용
15	21×181	임인	安東府使	洞長, 里 任, 結民	고문서집성 94 作夫井間을 반포하니 빨리 수납하라는 내용 금액을 적은 후록이 있음
16	24×105 .7	을해		(海南)縣內 面任	고문서집성 3 국왕의 전교 내용을 상부가 통보하여 이를 전하는 내용
17	25×130	기유	綾州牧使	道林面 面任	고문서집성 5 상부 군영에 결부를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 후록이 있음
18	40×141	신유	行使	川前	고문서집성 5 전답의 소송에 대해 勿侵하라는 내용

이들 문서의 길이가 길이지는 이유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첨부 문서격인 후록을 첨부하는 경우이다. 그 후록으로는 민인들에 대해 세금을 독촉할 때 민인의 명단과 액수를 기입한 것과 국왕이 민인들에게 혼유하는 전교를 모두 등록을 해 놓은 것이 있다. 둘째는 민인들의 소원으로 인

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놓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수령이 민인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전할 경우가 있었다. 민인들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경우는 주로 수령이 문재를 겸비하여 자신이 직접 전령을 작성하였다. 수령이 본문 문장을 장문으로 적거나, 후록을 첨부할 경우에 가로로 문서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는 간혹 전령의 일반적인 소자의 글자가 아닌 그보다 큰 글자를 적으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서의 크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표Ⅲ-2> 각 지역별 지시 전령의 문서크기 비교표

구분	순번	지역	건수	크기평균	다수분포	최장크기	최단크기	비고
세로크기	1	전라도 청암찰방	97건	21.5	23	26	18	배자
	2	전라도 무주현	82건	21.1	20	24	17	
	3	제주도	69건	31.7	33	40	26	
	4	충청도 영춘현	25건	24.5	26	37	18	
	5	황해도 신천군	21건	20.8	21	22	19	
	6	경기도 이천군	15건	24.5	27	29	19	
	7	전라도 보성군	12건	28.4	29	43	19	배자
	8	전라도 청암찰방	13건	22.7	24	25	19	
	9	충청도 청산현	9건	18.4	18	20	17	
가로크기	1	전라도 청암찰방	97건	33.1	30	46	22	배자
	2	전라도 무주현	82건	54.1	60	98	28	
	3	제주도	69건	56.7	42/67	109	30	
	4	충청도 영춘현	25건	42.2	40	108	21	
	5	황해도 신천군	21건	52.5	56	112	26	
	6	경기도 이천군	15건	54.9	60	79	36	
	7	전라도 보성군	12건	25	25	31	23	배자
	8	전라도 청암찰방	13건	50.5	50	93	28	
	9	충청도 청산현	9건	42.0	40	70	23	

*단위는 cm이다.

위 도표는 각 지역별로 전령의 문서크기를 비교해 본 것이다. 종이의 크기가 사용하는 관아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작성해 본 것이다. 위 도표에서 ‘크기평균’과 ‘다수분포’가 비슷하다는 것은 일정한 규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가로크기인 경우 주로 분포하는 것이 42cm와 67cm인데, 이에 대한 평균크기가 56.7cm라는 것은 크기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세로크기는 20센티 초반과 20센티 후반의 것이 주를 이

분다. 전라도 청암찰방, 무주현, 신천군, 청산현에서 발급한 전령은 모두 작은 크기이다. 반면 제주도와 보성군에서 발급한 배자가 오히려 큰 크기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② 사용 종이

전령에 사용한 종이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은 군부와 관부가 가진 위계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관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公事用으로 사용하는 白紙를 주로 사용하였다. 백지는 일반적인 저주지로 공적인 효력이 다하면 바로 休紙가 되므로, 좋은 품질의 종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중앙 군영이나 별군직은 국왕과 관련한 곳이므로, 전령에 사용하는 종이는 백지보다는 품질이 좋은 搗鍊紙나 壯紙를 사용하고 있었다.

외방의 관아나 군영에서 발급한 전령의 종이는 주로 백지를 사용하였다. 관청에서 사용하는 백지는 作紙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한다. 실제로 사용한 전령의 종이를 분석하면 두께가 얇고 품질이 하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⁵⁴⁾ 반면에 중앙 군영인 別軍職의 대장을 임명하는 전령은 咨文紙를 사용하였고, 예용 전령은 壯紙나 簡紙를 사용하였다. 또 『장용영대절목』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는데, 대장을 제수할 때는 자문지 한 장 전체⁵⁵⁾를 사용하고, 別將과 把總을 제수할 때는 搗鍊紙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하였다. 『충위영사례』의 기록도 장용영의 예와 같음을 볼 수 있다.

중앙 군영의 임명전령 종이인 咨文紙, 壯紙와 簡紙, 搗鍊紙는 최상품의 종이들이다. 특히 국왕이 대장을 임명할 때 자문지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별군직의 위상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지는 중국에 보내는 공물지로서 최상품의 자문지는 제조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여타의 임명장에 자문지를 사용한 전령이 없는 것을 정조가 사용하였던 것이다. 조선중기 사료들을 보면, 자문지는 중국에 자문을 보낼 때 사용하는 고급 종이로서, 진

54) 손계영, 「조선시대 문서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89쪽.

55) 정조가 체제공을 장용외사에 임명한 전령의 크기가 세로 106cm이고, 가로 65cm 정도이고, 사면을 자른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문지 전장의 크기는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으로도 많이 보냈던 종이다.⁵⁶⁾ 또 明나라의 관원들이나 서화가들이 조선의 표문지와 자문지를 좋아하였다.⁵⁷⁾ 조정에서는 과거시험에 자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민인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⁸⁾ 이를 통해 본다면 자문지라는 종이는 단순하게 고급종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국왕을 비롯한 관부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비춰진다.

다음으로 정조와 관련이 깊은 장용영을 중심으로 각종 문서에 사용한 종이를 살펴보겠다.

<표Ⅲ-3> 장용영대절목의 각 문서별 사용 종이 목록표

순번	문서명	문서 세부분류	사용종이
1	粘目		壯紙 2折
2	啓目		啓辭紙 2절
3	別單	賞格別單	계사지 3절
		節目別單	계사지 2절
4	單子	問安單子	壯白紙 2절
		제조대장, 종사관당상, 당하장관, 당하감관 문안단자	장지
		별부료이하 각청 장교 문안단자	백지
		대장, 별장, 종사관 坐起時 進去單子	장지 3절
		呈辭 단자	장지 전장
		포폄설행 단자	계사지 2절
5	啓本	殿最用	擣鍊紙 全張,
		勤慢用	啓辭紙 전장
6	草記		계사지 3절 每折9貼
7	傳令	大將新除	咨文紙 전장
		別將, 把摠新除	도련지 2절
		內外營傳令	장지 2절
		大臣外使	계사지
8	差帖		계사지
9	奉教差帖		장지 2절
10	小單		계사지 5折 10破
11	移文		장지 3절
12	營中報牒	報牒	白紙 2절
		別將把摠善騎將이 提調大將에게 쓰는 手本	백지 3절

56)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4권, 1년(1546) 11월 9일(임술)조.

57)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29권, 18년(1563) 12월 13일(정사)조.

58)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82권, 1년(1536) 9월 20일(임신)조.

		甘結	백지 2절
13	試冊	大比較時 御覽用 1건	장지 전장,
		試官用 2건	백지 전장
		每年四等試射 間年大比較時 舉行觀武才瑞葱臺時-御覽件	장지 3절
		試官件	대비교시와 같음

장용영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크기는 13종을 사용하였고, 세부적으로 28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문서와 쓰임새를 기록하고 관련한 신분들을 적어 놓았으며, 아울러 小記를 달아 각 문서마다 사용하는 종이를 세부적으로 모두 적어놓았다. 장용영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문서마다, 또는 관련자의 신분마다 모두 달리하고 있는데, 국왕을 비롯하여 관직과 신분이 높으면 종이의 질도 좋은 것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종이를 중심으로 그에 맞게 사용하는 문서와 그와 관련한 직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다.

<표Ⅲ-4> 장용영대절목의 종이별 문서 분류표

순번	종이	사용 문서	관련 사유
1	자문지	傳令	국왕이 大將을 임명
2	도련지	傳令	대장이 別將, 把總을 임명
		啓本	국왕에게 올리는 殿最 啓本
3	계사지	啓目	국왕에게 올리는 계목
		啓本	국왕에게 올리는 勤慢 啓本
		草記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賞格別單, 節目別單	
		單子	포폄실행 단자
		傳令	국왕이 大臣·外使에게 사용하는 전령
		差帖	대장이 병사를 군직에 임명하는 문서
4	장백지	小單	상사에 올리는 단자
		單子	국왕에게 올리는 問安單子
5	장지	試冊	御覽用
		單子	제조대장, 종사관당상, 당하장관, 당하감관에게 올리는 문안
		單子	대장, 별장, 종사관 坐起 때에 進去單子
		單子	呈辭 단자
		粘目	
		奉教差帖	국왕의 명을 받아 이·병조에서 임명
		移文	군영의 군문간에 公事 문서
6	백지	傳令	內·外營에서 하부에 내리는 지시전령
		單子	別付料이하 각청 장교 문안단자
		報牒	상사에게 보고하는 公事

	手本	提調大將에게 올리는 수본
	甘結	下司에 지시하는 公事
	試冊	試官用

위 도표는 장용영대절목의 문서별로 사용하는 종이에 대해 다시 종이를 중심으로 재편하여 그 위계성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 종이를 연구한 성과물을 통해 품질이 고급품인 것부터 따져보면, 최고의 품질은 咨文紙와 表箋紙, 上品表紙이다. 그 다음이 상품도련지인 草注紙와 하품도련지인 擣鍊楮注紙이다. 그 다음 등급은 啓目紙로 쓰는 草注紙-大好紙-小好紙-壯紙(時政記紙)-白綿紙-厚白紙-常白紙-楮常紙-公紙의 순서대로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장용영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따라 6종류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최상급 종이인 자문지를 비롯하여 공사문서로 주로 사용하는 하품의 楮紙인 백지까지 두루 사용하고 있었다. 전령에 사용하는 종이는 백지를 제외한 자문지, 도련지, 계사지, 장지를 모두 두루 사용하고 있다. 조선에서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최고급 종이인 자문지를 사용하여 국왕이 대장을 임명하는 전령은 어떻게 보면 장용영의 위상을 가름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⁰⁾ 또 별장과 파충을 임명하는데도 도련지를 사용하고 있어 중앙 군영의 군장에 대한 위상도 아울러 짐작할 수 있겠다. 다만 부서 간에 수수하는 이문과 지시하는 전령을 장지로 사용하는데 반해, 보고하는 문서나 감결에 대해서 백지를 사용하는 것은 의외의 현상으로 보인다. 군영의 부서 간에 거래하는 공문서는 임명장과 달리 사용빈도에 따라 종이를 종류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정할 뿐이다.

정조가 장용영의 대장을 임명하는데 있어 자문지를 사용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곳이다. 또 별장과 파충을 임명하는데도 품질이 좋은 종이를 쓰고 있다. 외방의 군영이나 관부가 백지나 혹은 장지를 쓰는 것에 비하면, 정조가 임명고신보다 품질이 좋은 종이를 사용하여 전령이란 문서로 발급하였다는 것은 중앙군영인 장용영을 통해 자신의 국왕으로서 갖는 권한을 정치적으로

59) 정선영, 「고문서의 紙質」, 『고문서연구』 제2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2, 88쪽.

60) 정조가 장용영대장에 대한 임명권으로 친위군문을 강화시켰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裒祐晟, 「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 『韓國史論』 24권, 1991, 255쪽 참조. 질지의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이방섭의 논문을 참조할 만 하다. 이방섭, 「正祖의 壯勇營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76쪽 참조.

표출하고자 한 의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왕이 발급한 전령이 갖는 의미도 여타의 전령이 가진 성격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고 봐야할 것이다.

③ 문자와 서체

조선시대는 한문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문서에서 사용하는 한문은 중국에서 가져 온 순한문이 아닌 문장에 吏讀가 섞이고 문법체계가 다른 조선식 한문이다. 아래로는 사문서인 明文이나 所志에서부터 위로는 국왕의 의례적 행적을 기록한 儀軌에 모두 조선식 한문을 사용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대부들의 문자생활을 기록한 것과는 다른, 조선시대 口語를 그대로 문자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자가 한자로 기록된 만큼, 조선시대에는 ‘眞書’라는 이름으로 그냥 한문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전령도 문자는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문장은 조선식 한문으로 기록하였으니, 이두가 그대로 적혀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순한글로도 작성한 전령이 있는데, 이는 대민고시를 할 때 작성하였다. 한문을 미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다. 순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애초에 국왕의 綸音, 관찰사의 감결에서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최후에 전령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 말기에 들어서면 전령을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한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순한문으로만 작성한 전령도 보이는데, 이는 수령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시하는 전령에 사용한 문자는 이두가 섞인 조선식 한문을 사용하였고, 대민을 효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순한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자와 아울러 전령에 사용한 서체는 초서와 해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관부문서를 작성하는 서체는 기본적으로 尊草卑楷의 입장으로, 신분이나 직계가 높은 부서에서 아래로 보내는 공문은 대개 草書로 쓰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문서는 楷書로 쓴다. 전령은 하달문서이기 때문에 주로 초서로 작성한다. 또는 전령의 글씨에 있어 쓰는 작성자의 성향에 따라 초서와 해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형화 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군직에 임명을 하는 사령장과 대민고시를 하는 전령은 가급적 해서로 작성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령장은 임명이라는 관부의 위계성

을 드러내고, 정자로 쓴 한글은 사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가독성을 증시한 결과이다. 실상 초서의 해독이라는 것이 행정실무자들의 학습과 꾸준한 사용에 의해 습득된 것인 만큼, 위계와 가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는 각각의 전령에 따라 사용한 문자와 서체를 나누어 분류해 본 것이다.

<표Ⅲ-5> 전령에 사용한 문자와 서체 분류표

발급자	전령형태	문자	서체
국왕	지시명령	한문	大字草書
	입명	한문	대자楷書
군장	지시명령	한문	中字행초서
	입명	한문	중자해서
관장	지시명령	한문, 국한문혼용	小字초서, 해서
	고시	한문, 순한글	소자초서, 해서

④ 화압과 관인

전령의 裁決部는 軍將이나 官長의 職押과 싸인인 花押, 날인한 관부의 인장으로 구성된다. 이는 군장이나 관부에서 발급한 것이 확실하다는 징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전쟁 중에 전령은 군작전과 관련하여 적군의 표적이 되므로, 그 신표로서 기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전하는 전령에서 군장의 화압과 관인은 그를 방비하는 장치이다. 관부에서 발급한 전령도 군교나 주인의 농간에 대상이 되므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성첩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아전들이 ‘인장을 바꾸면 관직에서 파면된다.’⁶¹⁾ 농간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전령에서 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현대에서 과거의 전령을 해독함에 재결부의 정보를 잘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령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과 발급자, 연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화압과 관인을 통해 그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다. 관인을 관독하면 전령

61) “篆文模糊，則吏奸易售。故吏屬爲之說曰，“改印者速遞。”於是愚愁不慧之官，深信此說，不敢改鑄。乃以沒字之碑，亂搨不畫之卦，於是南瓜之皮·籊笠之片，皆足以爲牒爲帖爲契爲券，後之人，何以辨矣？上官之初，見印文不明，卽報禮曹，以圖改造，不踰旬月，可也。○花押亦然。若畫法疏拙，箇箇不侔，則奸弊生矣。如欲察物，不可不留心也。”『牧民心書』卷1, 赴任 六條, ○莅事.

을 발급한 장소를 알 수 있다. 화압은 수령이 직접 적는 만큼 동시대의 다른 문서들을 통해 찾아내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즉 수령의 영향력에 있는 문서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수령이 재결을 하는 차점, 호구단자, 소지의 제사, 첩정과 서목의 제사를 가지고 발급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괄문서가 존재한다거나, 대단위의 고문서 구축시스템이 완비될 때 그 효력은 배가 될 것이다. 또 전령에서 인명이나 지역에 관한 정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인명이 관력이 있으면, 관련한 고신이나 국왕의 교서나 유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들 문서는 대연호를 사용하므로 구체적인 연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령의 화압과 관인은 공문서의 최종결재로서 관문서의 신빙과 위조방지를 기능을 하고 있다. 현대에는 전령의 온전한 해독이란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령의 문서식

전령의 문서식은 조선의 여러 법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법전의 문서식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전체보다는 간략한 것들을 취사선택하였기 때문에, 모든 문서의 서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령은 이전부터 의례적으로 사용하던 형태를 준수하였으며, 중앙 군영을 설치한 이후에 체제를 정비하면서 전령의 서식도 정비한 것으로 추정하겠다. 그 이유는 비록 자료의 현전함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한계는 있겠으나, 여러 군영의 臚錄이나 節目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문서식의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인조 대에 어영청과 수어청, 총융청의 설치하면서 군영의 제도적 정비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등록에 드러나는 상황은 임원과 군정, 비용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문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서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는 정조 대에 와서 이루어진다.

조선 중기에 署名을 작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전령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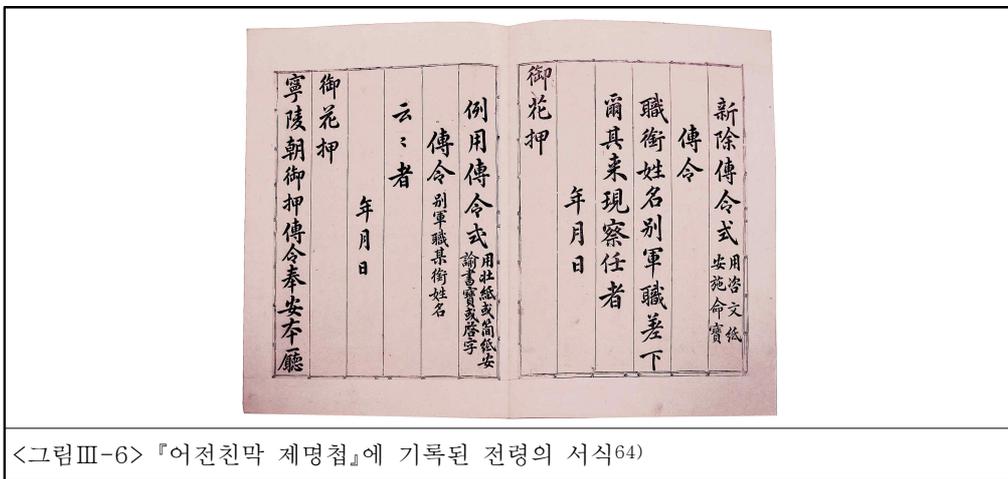
“중국의 文移는 上司가 下司에 대한 문서는 照會, 筭付, 下帖이 있고, 下司가 上司에 올리는 문서는 咨呈, 申狀, 牒呈이 있는데, 모두 성과 이름을 곧바로 써서 각각 차등을 두었으니, 서로 대등한 것은 平咨와 平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등한 관계나 그 이하에는 關을 사용하고, 이상에게는 牒呈을 사용하며 칠품이하의 帖을 사용하니, 단지 이 세 가지 체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첩정을 올림에 단지 職啣과 姓에 署押만을 하고 이름을 쓰지 않지만, 중국의 자정과 첩정에 비록 육부의 尙書라도 성과 이름을 바로 쓰는 뜻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유래하는 법식을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軍務의 일은 중국의 예대로 稟帖을 만들어 모두 관직과 성과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어 보고하는 것으로 영원히 법식을 삼게 하며, 上司가 군사를 지휘하는 關과 帖외에는 이전부터 항상 전령을 사용하던 규식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하십시오.”⁶²⁾

위의 내용은 1595(선조 28)년에 비변사의 啓文을 가지고 동부승지가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는 군문의 의례와 문서식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 내용은 상사에게 보고하는 첩정에서 보고자의 이름을 중국식대로 이름을 사용할 지 서압만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이름을 바로 쓰지만 조선은 성만을 쓰고 그 아래 서압을 하는데, 이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軍門에서 상부로 보고하는 문서만 稟帖을 만들어 중국식대로 이름까지 써서 보고하게 하고, 상사가 내려 보내는 문서는 관, 첩, 전령이 있으니 이를 준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중국의 문서제도를 차용한 관과 첩이 있는데, 이를 군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전령은 조선에서 의례적으로 사용하던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령의 문서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 세 종류가 있다. 정조가 편찬한 『御前親幕題名帖』, 『壯勇營大節目』, 현종 대의 『總衛營事例』이다. 『어전친막제명첩』은 효종 대의 별군직에 대한 전령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조가 이를 새로 개정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전령의 명령서가 아닌 임명서로서 그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또

62) “中朝文移, 上司於下司, 有照會·筭付·下帖, 下司於上司, 有咨呈·申狀·牒呈, 而皆直書姓名, 各有差等, 相等則有平咨·平關. 我國則同以下用關, 以上牒呈, 七品以下用帖, 只有此三等體式. 而牒呈上司, 只書職姓署押而不書名, 其與中朝咨呈·牒呈, 雖六部尙書, 直姓名之意, 大相不同, 但流來法式, 未可猝改. 軍務之事, 則依中朝例, 作爲稟帖, 具書官職姓名, 踏印以報, 以爲永式爲白乎於, 上司之指揮軍事, 關帖外, 自有恒用傳令之規, 依此施行爲白齊.” 『受教謄錄』, 규장각, 奎 12867, 萬曆二十三年(1595) 七月初六日.

국왕이 전령의 형식으로 군직에 임명하는 시기가 별군직을 창설하던 1656(효종 7)년 이후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⁶³⁾ 정조는 효종이 창설한 별군직을 확대하고, 아울러 장용영을 설치하면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장용영대절목』을 간행한다. 『장용영대절목』은 전령에 대한 개념과 문서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1846(헌종 12)년에 헌종은 摠戎廳을 개칭하여 總衛營을 설치하였다. 『총위영사례』에 기재한 전령의 문서식은 『장용영대절목』의 제도를 이어받으면서 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Ⅲ-6> 『어전친막 제명첩』에 기록된 전령의 서식⁶⁴⁾

위 그림은 『어전친막제명첩』의 전령식이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토대로 우선 종이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전령의 사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군직에 새로 제수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 지시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던 서식이다.⁶⁵⁾ 위 법식의 우측은 이전부터 사

63) 국왕이 전령으로 군직을 임명한 현재하는 최초의 자료는, 1793년 정조가 체제공을 겸직으로 장용외사에 임명한 전령이다. 이정일, 위의 논문(2007), 131쪽 참조.

64) 표지서명은 '正祖御筆 搨本 御前親軍幕'이다. 본문에서 「題御前親軍幕題名帖」, 「新除傳令式」, 「御筆」은 목판에 양각으로 새겨 찍은 搨本이다. 「題名」은 別軍職 명단을 패선 안에 붓으로 필사하였다. 이 첩은 효종의 별군직에 대해, 정조가 그 유래와 임무, 명단 등을 기록하면서, 어필로 써 준 '御前親幕', '御前親裨直廬'을 합철한 것이다. 『弘齋全書』에는 1787년에 작성하였다고 한다. 『藏書閣韓國本解題』, 子部3,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73~74쪽. 이 첩은 규장각에도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청구기호 古大 9920-2 / M/F번호 M/F85-35-2-N.

65) 이 때 '例用傳令式'의 문구에 대한 해석은, 『장용영대절목』에서는 '內外營에 分付하는

용하던 전령의 문서식이고, 좌측은 군직을 새로 임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식이다. 두 문서식에 모두 御花押이 있으므로, 이는 모두 국왕이 사용한 전령의 문서식인 것이다. 이는 문서식을 모양대로 표시하여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동시에 『壯勇營大節目』⁶⁶⁾과 『總衛營事例』⁶⁷⁾에서 전령의 문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장용영대절목』에는 전령을 작성하면서 사용하는 인장과 종이의 종류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 기록을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전령은 사체가 존엄하여 각각의 등급을 두었으니, 大將 이하로 別將, 把摠을 새로 제수할 때의 전령이 있고, 內外 營에서 분부를 내리는 전령이 있다. 대장을 새로 제수할 때는 御押과 安寶를 하고, [자문지 한 장 전체를 사용] 별장과 파충을 새로 제수할 때는 內印을 찍고, 또 壯勇營 인장을 찍되, [도련지 반장을 사용] 모두 정자의 큰 글씨로 쓴다. [직함과 성명은 전령이란 글씨 아래 차이를 두어 작은 글씨를 쓴다. ○대연호를 쓰지 않고 다만 모년 월 일만 쓴다.] 내외영의 전령은 [아울러 내인과 장용영인장을 찍고 壯紙의 반절을 사용한다. ○대신과 외국사신일 때는 啓辭紙를 사용한다.] 아울러 초서로 쓴다.”⁶⁸⁾

정조는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절목들을 제정하여 장용영대절목으로 완성하였다. 장용영대절목은 군문의 문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전령의 문서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자료이다. 그리고 『총위영사례』에서는 국왕이 발급하는 전령의 문서식과 아울러 대장이 발급하는 문서식도 기록하여 놓았다.⁶⁹⁾

전령'이라 하였고, 『총위영사례』에서는 '知委傳令'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지시나 명령의 전달을 위해 '의례적으로 사용하였던 전령의 문서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66) 『壯勇營大節目』, 「文牒」, 장서각 K2-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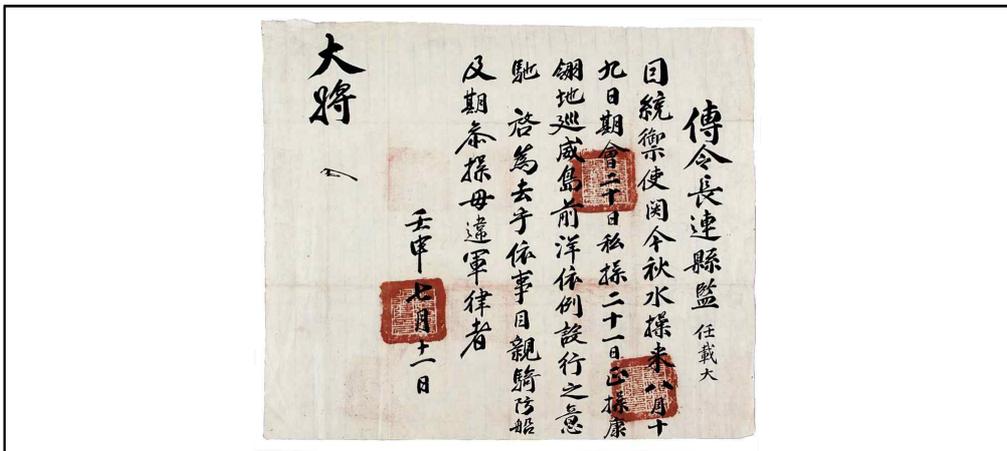
67) 『總衛營事例』, 「文牒」, 「文簿程式」, 장서각 K2-3378.

68) “傳令段, 事體尊嚴, 各有等分, 有大將以下·別將·把摠新除時傳令, 有內外營分付之傳令. 大將新除時, 御押安寶[咨文紙全張], 別將把摠新除時, 踏內印, 又踏壯勇營[搗鍊紙二折]爲白乎矣, 竝以楷字大書[職姓名, 則傳令下差小書之. ○只書某年月日]. 內外營傳令[竝踏內印及壯勇營, 用壯紙二折. ○大臣外使時, 則用啓辭紙.], 并以草書書之爲白齊.” 「文牒」, 『壯勇營大節目』.

69) “一. 傳令使新除, 用咨文紙全張, 初行書傳令職姓名, 二行書拜總衛使卿其察任者, 別行書年月日, 御押安寶. 別將至把摠, 用搗鍊紙二折, 初行書傳令職姓名, 二行書本營別將(或管城

전령은 정조 때의 장용영대절목의 문서식을 제외하면 뚜렷한 문서식을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문서를 보고 그 문서의 서식적인 패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령의 문서식은 지시전령과 임명전령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두 문서에서 파생되는 형태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유에서이다. 또 지시 중에서도 군영과 수령이 발급하는 것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먼저 지시전령 중에서 군영에서 발급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군영에서 지시하는 전령은 등록으로 남은 것은 있으나, 실문서로 전하는 것은 현재 2건만 남아 있다. 첫 번째는 1593년 2월에 경상도 병마절도사가 화원가장에게 보낸 지시전령과, 두 번째는 1752년 7월에 황해도수사가 장련현감 임재대에게 훈련의 일자를 알리고 제때 참여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다. 병마절도사의 전령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란 때 사용한 전령이고, 수사가 보낸 전령은 평시 군사훈련을 위한 것으로 발급한 차이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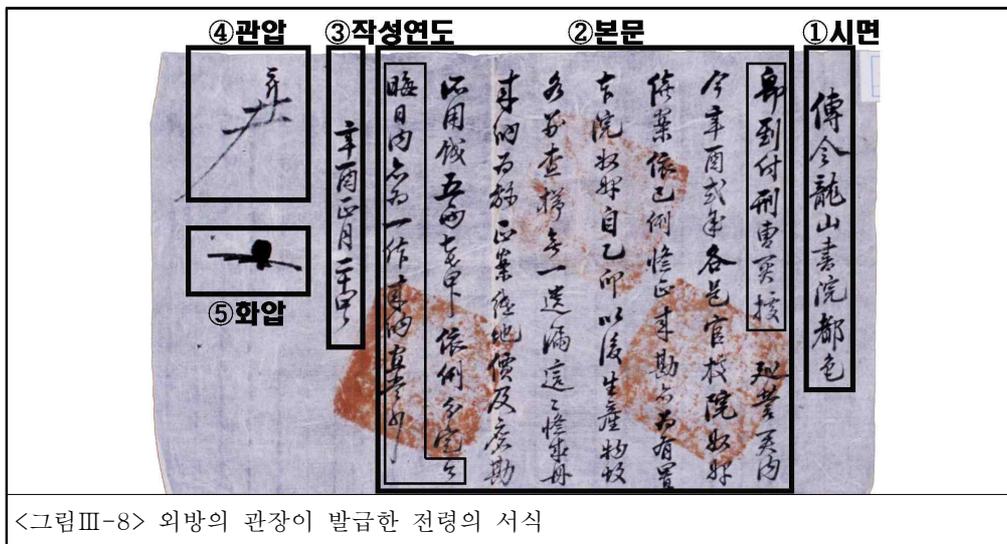
<그림Ⅲ-7> 외방군영 대장이 발급한 지시전령의 문서70)

將把摠)差下爲有置, 到傳令卽爲來現察任者, 別行書年月日, 踏內印, 別行踏營號.(竝楷字大書○兼把摠傳令同). 一. 因特教, 知委傳令, 用壯紙二折, 初行書傳令大將姓名,(兼察時書兼大將姓名)自第二行書措語, 以宜當者結語, 別行書年月日時, 踏內印, 別行踏營號.(以草書之).” 「文簿程式」, 『總衛營事例』, 「文牒」, 159쪽.

70) “傳令 長連縣監任載大. 因統禦使關, 今秋水操, 來八月十九日期會, 二十日私操, 二十一日正操, 康翎地巡威島前洋, 依例設行之意, 馳啓爲去乎. 依事目, 親騎防船, 及期參操, 毋違軍律者. 壬申七月十一日 大將[大將押][花押][인: 黃海道水使印]” 『고문서집성 89 -아산 선교 장흥임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66쪽.

위 사진을 보면 첫줄에 ‘傳令+수신자’를 적고 있어 전령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因統禦使關’을 적어 기두어가 없이 바로 본론을 적었다. 통어사의 관문에 의해 이 전령을 보낸다는 것이다. 통어사가 국왕에게 馳啓를 하고 이 관문을 작성해 보낸다는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결사로 ‘毋違軍律者’를 적었는데, 이는 수신자가 해야 할 당위적인 명령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에는 날짜와 대장이라는 관압을 쓰고, 그 밑에 화압을 하였다. 인장은 ‘黃海道水使印’이라고 관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장이 황해도 수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⁷¹⁾ 군영에서 발급하는 지시전령은 글씨가 매우 작은 소자로 적지 않고, 또 초서로도 적지 않고 있다.⁷²⁾

외방의 수령이 발급하는 전령은 위의 문서와는 다른 서식을 가진다. 다음 사진은 1801년 경주부윤이 용산서원 도색에게 발급한 지시전령이다.



<그림Ⅲ-8> 외방의 관장이 발급한 전령의 서식

위의 전령을 가지고 세부적인 서식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71) 임재대(1703~1776)가 받은 전령은 1752년 7월 11일이고, 전해인 1751년 7월에 받은 고신을 보면 ‘通訓大夫行長連縣監’과 같은 달에 ‘黃州鎭管兵馬節制都尉’라는 관직을 받았는데, 황주진은 황해도에 있다. 『고문서집성 89 -아산 선교 장흥임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5쪽.

72) 이러한 격식을 갖춘 문서 양식은 추정컨대, 당시 임재대가 통훈대부이고, 이 전령을 보낸 황해도 수군절도사 모두 정3품의 관직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 ① 始面 : 문서의 첫 부분으로 ‘傳令+ 수신자’를 적었음
- ② 본문 : 본문의 시작으로 ‘기두어(발급목적)+ 본문+ 결사’로 구성함
- ③ 작성일 : 전령을 작성한 날짜
- ④ 官押 : 발급자인 수령의 직함을 揮筆함
- ⑤ 花押 : 발급자의 싸인으로 署押이라고도 함

전령은 시면에다가 전령이란 문서명과 수신처를 적고 있다. 본문에서 기두어는 주로 그 발급목적에 적는 곳이다. 전령에서 사용하는 기두어로 ‘爲知委舉行事’, ‘爲知委督納事’를 주로 쓰는데, ‘知委’란 해당실무자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라’는 뜻이고, 舉行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적 이행을 완수하라는 의미이다. 실물서를 바탕으로 전령에서 기두어로 쓰는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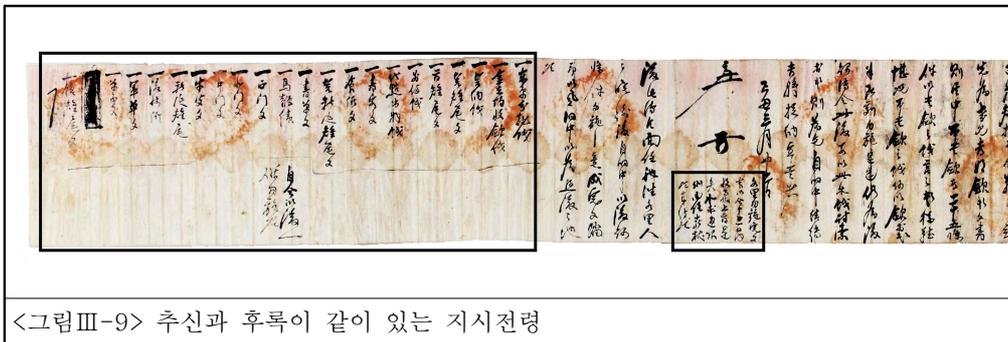
<표Ⅲ-6> 전령의 기두어의 형태 목록표

순번	기두어의 형태	본론의 양상
1	爲~事が 붙는 형태	먼저 발급목적에 언급
2	卽到~, 卽到付~가 붙는 형태	주로 상부의 근거문서에 의해 발급
3	卽接~, 卽見~, 卽聞~, 因~의 형태	주로 민인들의 송사에 의거해서 발급
4	본론을 바로 시작하는 형태	

본론의 문장은 일정한 패턴을 갖추며 작성하고 있었다. 행정의 하리들과 민인들에게 전달하지만, 문장의 구성은 논리와 엄정함을 기본으로 작성한 것 같이 보인다. 전령의 문장은 논리적 구성을 위해 조사를 사용하는 자리에 이두어를 적절하게 넣고 있었다. 전령의 전체적인 구성은 첫째 상부의 하달문서나, 민인의 소장을 받거나, 아님 소문으로 들은 것을 전한다. 문서로 접할 때는 ‘卽到付~則’, ‘卽接~則’을 사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그 문서를 적을 때는 앞에 ‘以爲’를 사용하여, 이후부터가 문서의 내용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용하는 곳이 끝나는 곳에 이두로 ‘是如(~이라고 하니)’, ‘是如爲臥乎所(~이라고 하였는 바)’, ‘亦爲有置(~라고 하였다)’를 사용하였다. 이후에 수령이 그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해 보고 ‘故茲以傳令(그런 까닭에 이렇게 전령하니)’를 적어 전령을 보내는 행위를 한다고 적

었다. 이 전령을 발급한 후에도 만약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인 ‘若(或)有~則(是去等)’의 문장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입장을 엄하게 처단할 것이니, 앞으로 ‘俾無~之弊 宜當者(向事)(잘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였다. 이 때 결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투식을 사용하나, 주로 ‘俾無~’, ‘無至~’, ‘宜當事’, ‘向事’ 등의 문구를 결사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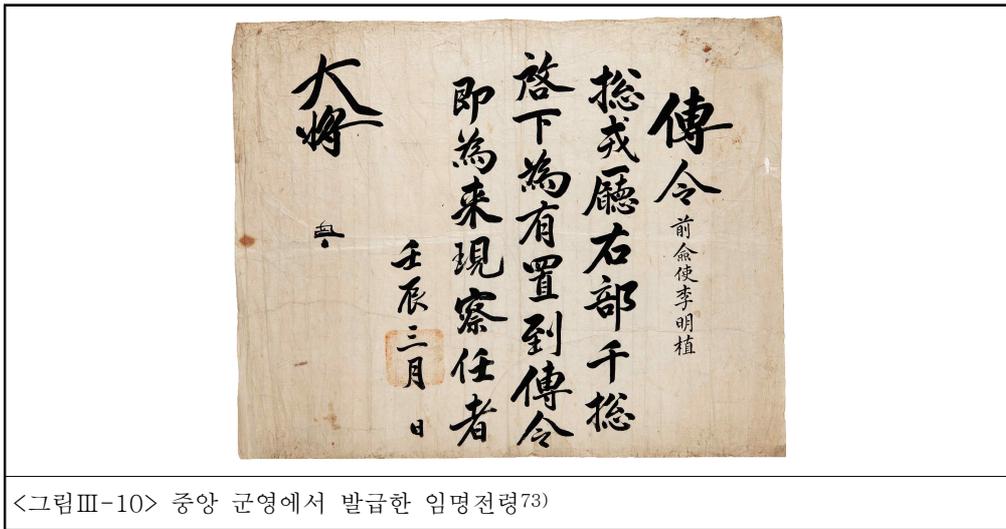
마지막에 수령의 재결인 관압과 화압을 하고, 관인을 홀수로 날인한다. 이것까지가 수령이 발급하는 지시전령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림III-9> 추신과 후록이 같이 있는 지시전령

위 사진처럼 지시전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신과 후록을 첨부한다. 추신은 본문에 다루기에 적합한 문세를 이루지 못할 때 따로 조그마한 글씨로 작성하였다. 또 후록은 ‘後’라는 글자를 써서 후록을 표시하였다. 후록은 세금의 액수나 명단을 적을 때 사용하였고, 또는 상부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할 때 후록으로 작성하였다. 후록은 종이를 가로로 길게 덧대어 더 적어 넣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지시하는 전령이 가로로 긴 직방향의 형태를 가진데 비해 임명하는 전령은 정방향의 형태를 하고 있다. 문서에 적고 있는 글씨는 반듯한 해서로 적는 것이 기본적이거나, 수취자의 신분에 따라 완전한 해서로 적거나 조금 흘린 해행서로 적고 있어 완전한 초서로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III-10> 중앙 군영에서 발급한 임명전령⁷³⁾

시면인 첫줄은 ‘전령+수신자’를 적었다. 간혹 수신자의 성명을 본문에 적는 경우도 있다. 앞에 수신자가 적혀있으므로, 본문에서는 바로 직책을 쓴다. 위 사진에서는 李明植을 ‘摠戎廳右部千摠’에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啓下爲有置(계하 하였으니)’를 적고 있다. 계하는 임금에게 직임을 임명하는 사안에 대해 계를 올려 결재를 받았다는 뜻이다. 계하를 쓰는 자리에는 ‘啓下’, ‘差下’, ‘自望’, ‘代啓差’를 적고 있었다. 계하는 임금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으로 발신자를 중심으로 볼 때, 주로 중앙 군영에 소속한 직책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외방의 군직은 차정을 쓰고 있다. 자망은 단독후보로서 대장이 임의적인 차출을 할 때 사용한다. 대계차는 임명받은 사람이 병이나 부모와 멀리 떨어질 경우 대신 다른 사람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후에 ‘到傳令即爲來現察任者’을 적었는데, 전령이 전해지면, 즉시 현신하여 임무를 맡으라는 뜻이다. 아울러 ‘來現隨行者’는 문구도 쓰고 있다. 결구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수신자의 현 위치를 감안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보겠다.

73)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IV. 전령의 문서형태별 분류와 내용

1. 전령의 문서형태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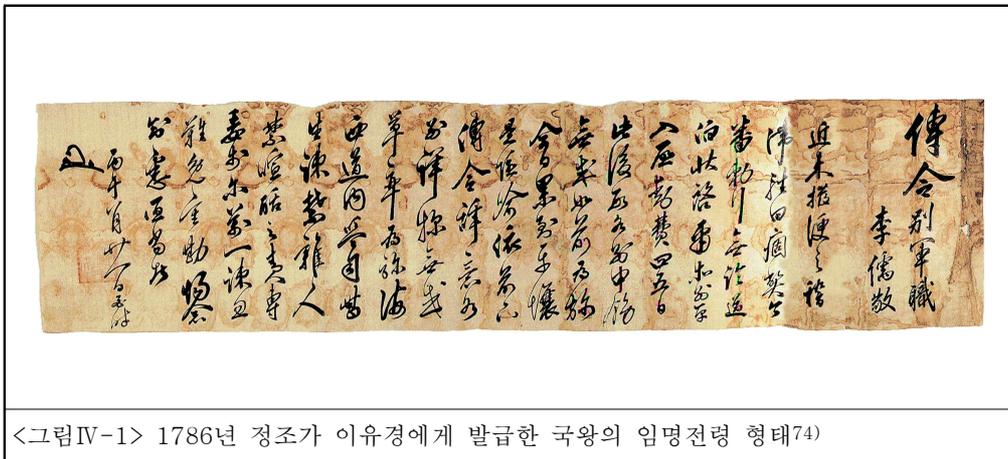
1) 명령·지시하는 형태

전령을 문서형태별로 나누어보는 것은 문서학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전령을 문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문서의 형태, 글씨의 모양, 문서에 사용한 용어, 관문서의 裁決 요소 등과 같은 문서형식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사료학적인 관점과는 다른 접근법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와 그 내용만을 기록한 등록을 통해 연구하는 방법론은 그 자체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령은 군영을 대표하는 문서 중에 하나이면서, 아울러 관문서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관문서 중에 감결과 첩, 배자는 전령과의 유사성을 지닌 문서이다. 이들 유사한 문서를 형태적인 요소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앞의 문서를 구분함에 있어 서로가 유사성을 지닌 요소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발급자와 수취자, 그리고 문서의 발급사안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달라지는 상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이점은 결국 문서의 성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관문서를 형태론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의 관계성과 그 관계성에 따른 내용과 발급목적을 살피는 것은 문서의 구조기능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관문서로서 전령은 군사권을 가진 군장이나 수령이 발급하고 있고, 수취의 대상자도 군과 관련이 있다. 향촌의 任掌은 군과는 관련이 없지만, 수령의 휘하에서 부릴수 있는 속관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이에 따라 전령의 내용도 군사적인 사안이나 지방의 행정과 관련하여 지시나 명령하는 것과 관령이 있다. 조선은 신분사회를 지향한 만큼, 전령의 발급자와 수취자의 관계성은 다시 발급자의

신분에 따라 문서의 형태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형태적으로 유형화하여 명령·지시하는 형태, 임명하는 형태, 고시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것이다. 이를 다시 중앙에서 발급하는 것과 외방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나눌 것이며, 군정과 행정이라는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전령을 유형화 함으로 인해, 전령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령의 발급자는 국왕에서부터 관찰사, 군장, 외방 수령까지이다. 국왕과 중앙군영에서 발급하는 전령은 종이의 품질, 크기, 서체 등 형식적인 격조에서 고품격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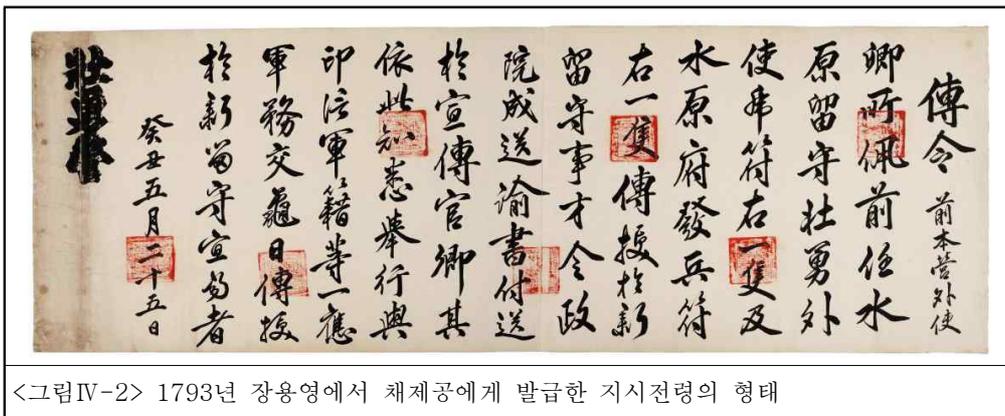
<그림IV-1> 1786년 정조가 이유경에게 발급한 국왕의 임명전령 형태⁷⁴⁾

위의 전령은 정조가 李儒敬한테 보낸 지시하는 전령이다. 중국에서 칙사가 오므로, 별군직 이유경은 원접사로 金華鎮, 趙琰, 田文顯과 함께 칙사호송을 담당하였다. 위 전령은 정조가 이유경에게 칙사에 대한 보고를 빨리 하라는 것과 변경지역의 관리감독을 위임하니,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시면에 ‘傳令 別軍職李儒敬’이라 적어 놓아 수취하는 사람이 이유경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비록 초서로 적었지만, 글씨가 크고 正草로 적고 있어 서풍으로 느끼는 장중함과 유려함을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연도를 적고 국왕의 수결인 정조의 御花押을 하였다.

74) 『開校50周年紀念 雪村家蒐集古文書集』, 國民大學校博物館, 1996.

정조는 화성의 축조와 관련하여 1794년부터 1798년까지 李儒敬, 趙心泰, 徐有隣에게 내린 18건의 전령과 1790년 4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내린 32건의 전령이 『華城城役儀軌』와 『水原府旨令謄錄』에 기록으로 전한다. 위 전령은 실물형태로 볼 수 있는 현전 유일의 국왕발급 지시전령이다.

조선시대 군제는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군영과 지방의 방어를 담당하는 외방군영 체제로 나뉜다. 법전에 명시한 군영체제를 살펴본다면, 중앙군영은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 摠戎廳, 守禦廳의 오군영이 있다. 그리고 그 외 經理廳, 扈衛廳, 龍虎營, 捕盜廳, 摠理營, 管理營, 鎮撫營이 있으니, 이를 합하면 총 12곳이다. 이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지만, 조선시대에 대체로 이 체제가 유지되었다. 지방은 鎭管 체제 속에서 각 지역의 군사요충지에는 수령이 그 방위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였다. 영장제를 도입한 후에는 영장을 파견하여 군사조련을 담당하게 하였다. 1793년 정조는 서울의 장용내영과 수원의 장용외영으로 분리하고 확대하여, 수원부를 수원유수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 때 蔡濟恭(1720~1799)을 초대 水原留守와 壯勇外使를 겸직시켰다.



<그림IV-2> 1793년 장용영에서 채제공에게 발급한 지시전령의 형태

위의 전령은 장용 내영에서 수원 유수와 장용외사를 겸직했던 채제공에게 보낸 지시전령이다. 장용외사를 역임할 때 가졌던 虎符와 發兵符를 신임 유수한테 모두 전수해 주라는 내용이다. 중앙 군영에서 보낸 지시전령은 임명전령과는 달리 실물서가 많지 않다. 위의 전령을 통해 그 서식을 볼 수 있는데,

시면에 ‘傳令 前本營外使’라고 적어놓았는데, 성함이 아닌 직함을 적어놓았다. 본문의 글씨는 장중한 행초서로 적어놓아 발급처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국왕의 지시전령과 유사하게 세로로 6~7자에 맞추어 12여 줄로 작성하고 있다. 마지막은 발급 연도를 적고, 발급자 직함 대신 장용영이란 墨印을 찍었다. 다른 전령이 관청의 주무장관 직압을 날인하는 것에 비하면, 특이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관인은 ‘壯勇營印’을 7곳 날인하였다.

군영에서 발급한 지시전령은 수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장서각에 1건과 규장각에 1건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규장각은 1908년이라는 늦은 시기의 것이다. 수량이 적은 이유는 아마도 작전수행을 하는 군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앙군영에서 발급하는 전령의 내용은 御駕의 호송과 여러 軍政에 관한 잡무로 발급한다. 외방의 군영에서 발급하는 전령은 평시에는 군사조련에 관한 건으로 발급하고, 전란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보 전달과 작전 지시를 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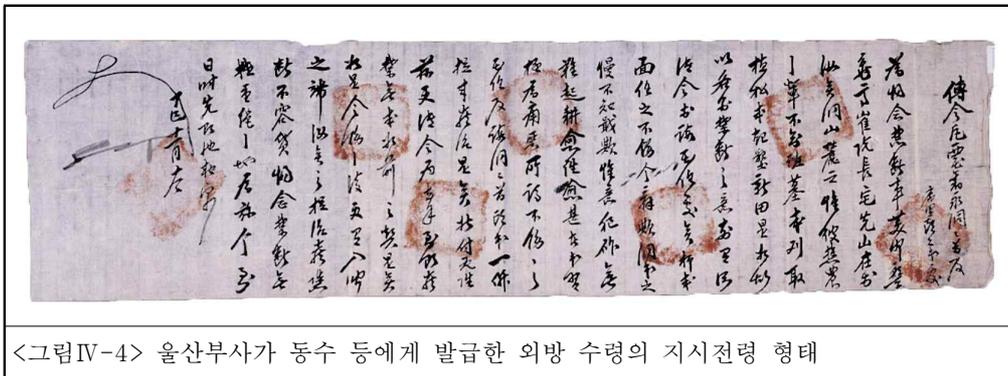


<그림III-3> 1765년 황해도수군절도사가 임재대에게 발급한 외방군영의 지시전령

위의 전령은 대장이 任載大에게 발급한 지시전령이다. 관인을 판독하면 ‘黃海道水使印’이다. 그러므로 大將이란 칭호는 황해도수군절도사를 말하는 것이다. 시면에 ‘傳令 長連縣監 任載大’라고 적혀 있다. 장연은 황해도 은율의 옛 지명이다. 임재대는 사료에는 관련자료가 보이지 않으나, 『고문서집성 89 -

아산 선교 장흥읍씨편-』편에 1751년 ‘通訓大夫行長連縣監’을 받았다는 고신이 남아 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당하관이다. 전령의 내용은 황해도수사가 統制使의 공문에 의거해, 가을 수군훈련의 일자를 알리니, 임재대는 일자에 맞추어 참여하여 군율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본문에 보이는 康翎도 황해도의 지명이다. 외방군영에서 발급한 지시전령이라 하더라도, 평시의 군사조련이라 그런지, 글씨는 해서로 깔끔하게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 수령이 관하의 행정실무자나 백성들에게 보낸 전령은 수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의 전령도 그 서식에 있어 일정한 관문서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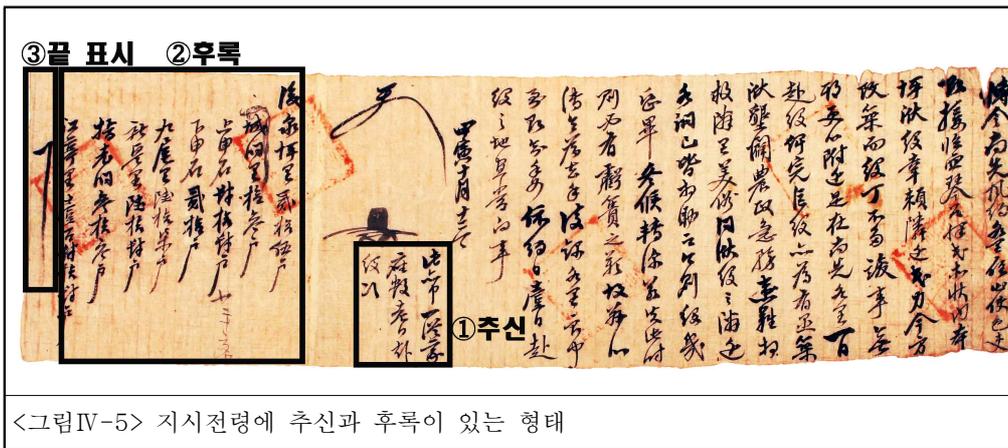
<그림IV-4> 울산부사가 동수 등에게 발급한 외방 수령의 지시전령 형태

위의 전령은 울산부사가 동수와 두민에게 盤龜의 최원장 맥 선산에 소나무를 베어가는 사람들을 금단시키라는 내용이다. 이는 외방 고을수령이 작성한 전령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시면에는 수신처를 말하는 ‘傳令 凡西面 舊永洞 洞首 及店里頭頭民處’로 적혀있다. 본문의 기두어는 주로 그 발급목적을 적는다. 보통 관문이나 감결은 ‘爲相考事’라는 기두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비해서, 전령은 기두어에 ‘爲知委舉行事’, ‘爲知委督納事’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지위’란 해당자에게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리라는 의미이고, ‘거행’은 전령의 내용을 그대로 잘 이행하라는 의미이다. 또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다면 여기에 의거해서 전령을 보낸다는 문구를 작성하였다. 즉 ‘即到禮曹啓下關據 巡使道關內’, ‘節 到付營關據 巡營甘結內’라는 문구를 쓰고 있다. 이를 풀이하자면, 앞에 것은 이번에 도착한 공문은 순사도가 보낸 관문인데, 이는 또

禮曹가 임금에게 啓를 올려 결재를 받고 다시 관문을 순사도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도, 순영에서 보낸 감결을 받았는데, 이는 감영에서 보낸 관문에 의거해서 보낸다는 것이다.

상부에서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다시 전령으로 보낼 때는, 안은문장으로 엮는 방식을 사용하며, 전령의 본문은 최초의 공문 내용을 적어준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송에 의거하여 전령을 보낼 경우에는 ‘即接’, ‘卽聞’이란 용어를 적는다. 민인이 소송한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라는 의미를 뜻하는 문구이다.

그리고 전령의 결사는 사안 처리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므로 신중히 하라는 당위적 명령을 한다. 그 문구는 ‘茲以傳令’로 시작하여, ‘앞으로 잘못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뜻의 문구인 ‘俾無~之弊’, ‘毋至~之弊’를 쓰고 있다.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부 속에서 해당 실무자를 문책하겠다는 구절을 적기도 한다. 그리고 최종 결사로 해당 사안에 대해 ‘신경써서 거행함이 마땅 할 일(惕念舉行 宜當向事)’, ‘마땅히 할 것(宜當者)’으로 마무리 한다.



<그림 IV-5> 지시전령에 추신과 후록이 있는 형태

수령이 보낸 전령의 내용은 세금 독봉에 관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후록에 그 명단과 액수를 작성하여 보낸다. 현재의 첨부문서와 같은 것으로서 절목과 같은 條令을 적어 줄 때는 ‘左開’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위 전령에서 ①번은 추신으로, 전령을 보낼 때 해당 명령의 요약이나, 본문에서 적기에 부언이 되

는 추가적으로 당부사항을 적어 준다. ‘此亦中~次’라는 이두를 쓰며 ‘여기에~할 차’ 또는 ‘여기에~할 것’으로 풀이한다. 간혹 이 부분에 시간을 작성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未時에 한정하여 돌아오라’는 뜻의 ‘未時’, ‘限未時’ 등을 말한다. 이는 전령을 전달하는 관속들이 민가에 가서 폐단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략적인 시간을 정해 그 시간 내에 돌아오라는 의미이다. ②번은 후록으로 주로 ‘後’라고 쓰고, 이어서 그 명단을 가로로 나열한다. ③번은 해당내용의 끝이라는 기호표시이다. 이는 際자의 좌부 卩을 기호화 한 것이다. 더 이상 첨부하지 못하도록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것이 외방의 수령이 보낸 지시전령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다.

중앙관부나 외방의 고을수령이 發差를 위해 발급하는 문서는 牌子이다. 외방의 수령이 발급하므로 ‘差使牌子’라고 명명함이 적합할 듯 보인다. 이 문서는 관아의 장교나 차사, 사령, 주인등을 보내어 민인을 추착하거나, 물건이나 돈을 빨리 거두어 오게 명령하는 내용이다. 차사에게 부여하는 標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差使帖이란 문서명으로 불리었다. 실제 문서를 보면 시면에 ‘將差’, ‘差使’라 적은 경우도 있지만, ‘傳令差使’라고 적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령의 한 부류로 보는 것도 타당할 듯 하다. 이에 대한 기록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볼 수 있는데, ‘차사를 보내 민가의 사람을 잡아오게 하는 문서를 배자’라 한다고 하였다. 이는 牌의 성격으로 목패와 함께 지패로 발급하여 특정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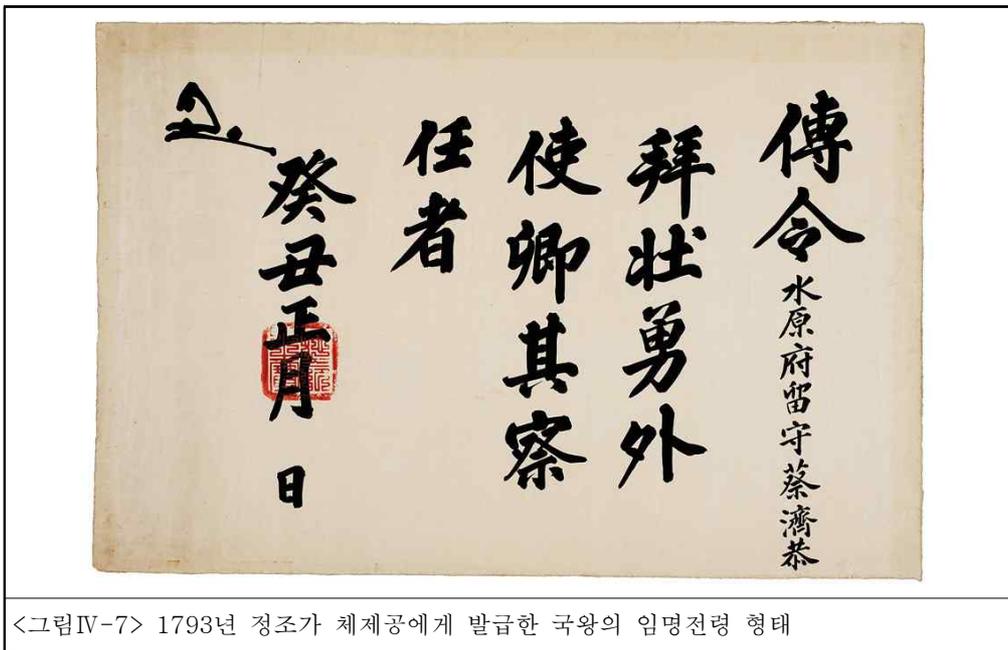
<그림IV-6> 보성군수가 형리에게 발급한 차사배자의 형태

위 사진은 보성군수가 栗於에 出使하는 형리에게 발급한 차사배자이다. 차사를 보내는 배자는 크기가 비교적 작는데, 위의 문서도 세로가 29cm, 가로가 26cm이다. 배자는 전령과 다르면서도 유사한 면모를 지니는 성향을 가졌다. 특히 차사배자는 신표의 역할을 하는데, 전령은 명령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배자도 지시를 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 둘간의 문서는 기능의 강도성이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면모도 지닌다. 또 두 문서는 수령이 발급하는 것으로 인해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의 문서도 시면에 ‘傳令 栗於出使刑吏’라고 전령이란 단어가 적혀 있어, 전령으로 발급하였던 것이다. 다른 차사배자에서는 ‘傳令差使’, ‘令差使’로 적은 경우도 있다. 본문은 ‘울어면에 사는 林重化와 崔永煥을 빨리 잡아 대령하라.’고 적어 놓았다. 차사배자는 주인, 차사, 형리, 장교 등에게 발급하며, 그 내용은 民人推捉과 物錢受取가 주를 이룬다. 종종 차사에게 면임이나 동임을 대동하고 투총독굴하라는 내용도 보인다. 차사배자는 조선시대 체포영장으로 볼 수 있으며, 전령과 달리 단독으로 쓰인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수령이 발급하는 것과 그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위의 경우처럼 전령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전령의 한 부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임명하는 형태

임명하는 전령은 차접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면서 帖이라는 단어의 존재여부와 ‘傳令’이란 단어를 통해 일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여러 관문서의 서식이 법전에 실린 것에 비하여 전령의 문서식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단지 정조 때 편찬한 『御前親幕題名帖』, 『壯勇營大節目』과 헌종 대의 『總衛營事例』에만 문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중앙군영과 관련된 규정집이다. 『장용영대절목』은 정조가 수원에 장용외영을 창설하고 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용영대절목』에는 전령에 사용하는 종이도 규정하고 있다. 大將을 제수할 때는 咨文紙 한 장 전체를 사용하고, 別將과 把總을 제수할 때는 搗鍊紙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하였다. 『어진친막제명첩』에 기록된 임명전령의 서식을 보자면, 첫 줄에는 ‘전령’이라 쓰고, 다음 줄에 ‘직

함+ 성명+ 別軍職差下, 爾其來現察任者'라고 적혀 있다. 그 다음은 연도를 쓰고 마지막으로 임금의 수결인 御花押을 날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왕은 교유서나 유지를 발급하면 되므로, 굳이 전령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정조가 별군직과 장용영에 대한 특별사안으로 마련하였다는 것에서 여타의 임명전령과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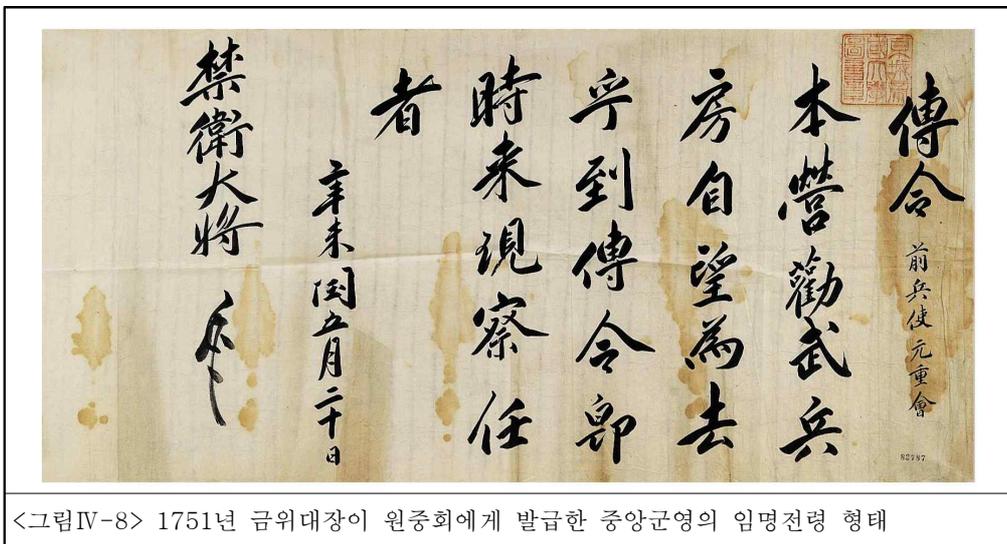


<그림IV-7> 1793년 정조가 체제공에게 발급한 국왕의 임명전령 형태

위의 전령은 정조가 체제공에게 발급한 장용외사에 임명하는 것이다. 시면에 '傳令 水原府留守蔡濟恭'이라 적어놓았다. 동일에 체제공은 수원부유수를 임명받고, 아울러 겸직으로 수원외사를 임명받는데, 위의 전령이 바로 그것이다. 『일성록』을 살펴보면, 수원부유수는 이조에서 정목하고 있으니, 이는 교지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장용외사에 대한 임명은 바로 위의 전령이다. 政目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卿'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글씨가 반듯한 해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위신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느낌이 든다. 중앙군영에서 임명할 때는 병조에 건의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으므로, '啓下'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직압을 적는 곳에는 국왕의 수결인 어화압을 하였고, 관인은 어보인 '施命之寶'를 날인하였다. 국왕의 특별한 의도에 의

해 작성한 것이므로, 임명전령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전령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격조를 보이고 있다.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 중앙의 오군영에서 발급하는 임명전령 또한 반듯한 해서로 작성하고 있다. 지시전령에 비해 임명하는 형태는 글씨를 초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五軍營에서 군직에 임명하는 전령이 다수 남아 있다. 이들은 자품이 높은 堂上군관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령의 양식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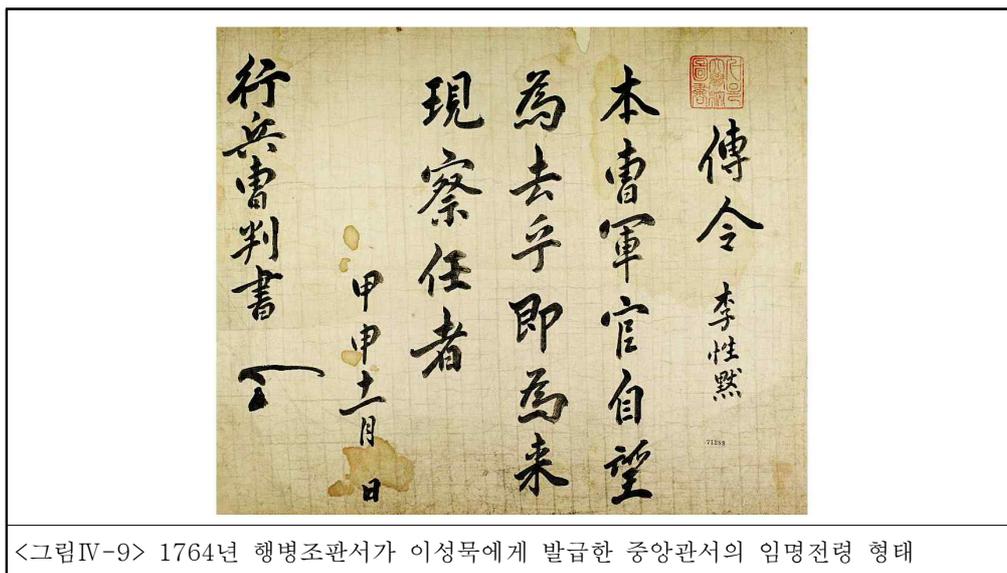
<그림IV-8> 1751년 금위대장이 원중회에게 발급한 중앙군영의 임명전령 형태

위의 전령은 금위대장이 元重會(1713~1772)를 권무병방에 임명하는 것이다. 당시 금위대장은 확실하게 판별하기 어려운데, 병조판서 洪啓禧와 어영대장 洪鳳漢을 금위대장에 겸직시키는 문제로 껄떡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위 전령의 시면에 ‘傳令 前兵使元重會’라 적어 놓았다. 원중회는 같은해 윤5월 6일에 경상우병사에 임명된다. 그러나 변방의 수령이나 將帥는 부모가 70살이 되어도 형제 없는 독자이면 체직된다는 법조항에 따라 15일에 체직된다. 다시 5일이 지난 윤5월 20일에 당시 나이 22세로 권무병방을 임명받았으니, 그 임명장이 위의 전령이다.

본문에서 ‘自望’은 대장의 임의 선출에 따른 용어이다. 원래 삼망을 추천하여 비점을 받아야 하지만, 단독 후보를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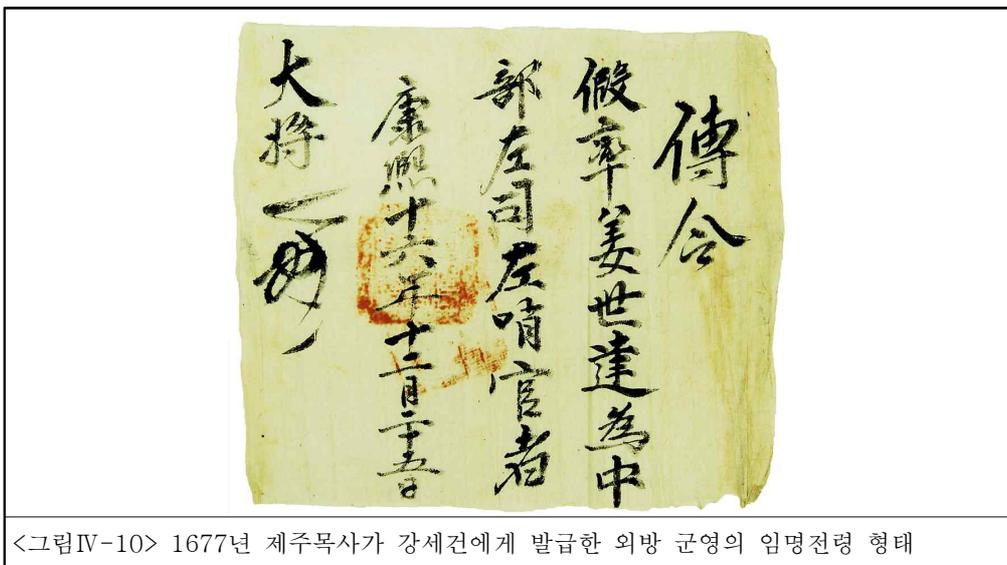
는 이 외에도 임명방식과 당부의 말들을 달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임명방식에 따라 본문에 拜, 啓下, 代啓差, 自望, 差下, 差定이란 용어를 적고 있었다. 주로 인사변동에 있어 국왕의 하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계하를 사용하고 있다. 계하라 적힌 전령은 당상급 인사들의 임명므로, 이들에 대한 인사권 방식의 표현이라 본다. 본문에서 이에 대한 관직을 임명 ‘~하니’의 뜻인 이두어 ‘爲有置’, ‘爲去乎’을 적었다. 또 본문의 당부를 전하는 말도 ‘즉시 와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뜻의 ‘卿其察任者’, ‘爾其來現察任者’, ‘依例隨行者’, ‘到傳令 卽爲來現者’, ‘到傳令 卽時來現察任者’, ‘隨行者’ 등을 적고 있었다. 이처럼 군직에 차정하는 전령은 전체적인 규칙은 유지하면서, 해당자의 임명방식과 해당자의 신분에 따라 수행을 당부하는 본문의 구절만 다르게 적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위 전령에서 관인은 없고 금위대장의 화압만 날인되어 있다. 원중회와 관련한 다른 전령도 관인을 날인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조선시대 군인은 군영에 소속한 것도 있지만, 관아에 소속한 군관들이 있다. 이들은 군정과 같은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권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는 직역이다. 다음의 전령은 병조판서가 李性默을 군관에 임명하는 전령이다.



<그림IV-9> 1764년 행병조판서가 이성묵에게 발급한 중앙관서의 임명전령 형태

당시에 행병조판서는 李益輔이다. 그러므로 위 전령의 화압은 이익보의 것이다. 군관인 이성목은 1764년 11월 5일에 별군직을 임명받는다. 이때 군관이 라는 직함이 있으므로 위 전령은 11월 5일 이전에 받은 것이다. 이달 10일에 試射 때 활을 잘 쏘아 영조가 바로 직부전시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다음 해에 19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였고, 다시 선전관에 들어가고, 1765년 7월 21일에 宣廳의 예에 따라 이성목은 승육되어 참서관이 된다. 그러므로 위 전령은 이성목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에 병조의 군관으로 임명받은 전령인 셈이다. 전령은 중앙군영에서 발급하는 전령과 함께 중앙관서에서도 군관을 전령으로 발급하고 있다는 사례이다. 병조는 군정을 담당한 중앙아문이다. 軍官은 군역을 복무하는 것과 다른 장교직에 속한다. 자품이 4품 이상이면 교지로 임명하고 그 이하면 교첩이나 차첩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전령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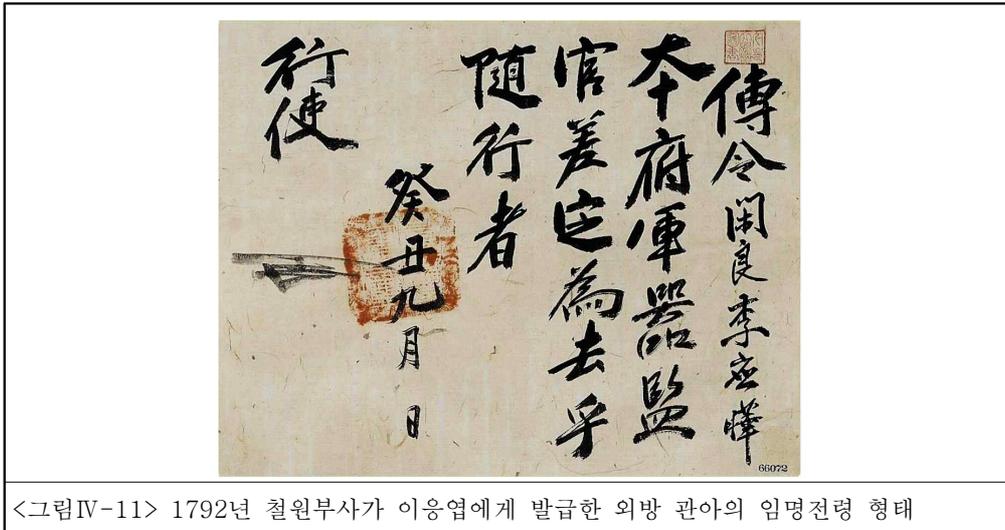


<그림IV-10> 1677년 제주목사가 강세건에게 발급한 외방 군영의 임명전령 형태

위의 전령은 1677년 제주목사가 姜世建(1658~1709)을 中部左司左哨官에 임명한 전령이다. 당시의 제주목사는 尹昌亨(1613~1683)인데 1676년에 부임하여 1678년까지 제주목사를 하였다. 이 전령은 외방의 군영에서 발급하는 전령치곤 시대가 앞선다. 전령의 시면에 그냥 '傳令'만 적어놓았고, 수취자는

본문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 임명전령 전체를 봤을 때 전령 아래에 수취자가 적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시대적인 현상보다는 글씨를 쓰는 해당 서리와 관련이 더 있을 듯 하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전령은 1675년에 武學 강세건을 營下待變假率置簿에 임명하는 전령이 있다. 현전하는 임명전령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로 보인다. 다시 위의 전령을 보면 연도 표기도 일반전령과 다르게 대연호로 하고 있다. 이 또한 착종을 보이므로 해당서리의 작성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직함은 대장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제주목사의 직함이다. 제주목사의 직함은 ‘使’와 ‘大將’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 감영과 관련이 있는 직책은 사로 쓰고, 군영과 관련이 있으면 대장으로 쓰고 있다.

다음 전령은 병조에서 발급한 전령과 마찬가지로 외방의 관아에서 軍校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정약용은 군교에 있는 무리들을 將官, 軍官, 捕校로 나누고 있다. 장관은 千摠·把摠 같은 부류이고, 군관은 兵房掌務 같은 것이고, 포교는 討捕都將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림IV-11> 1792년 철원부사가 이응엽에게 발급한 외방 관아의 임명전령 형태

위의 전령은 강원도 철원부사가 이응엽을 철원부의 군기감관에 임명한 것이다. 당시에 철원부사는 金珠淵이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철원과 관련한 일괄 문서들이 남아 있어, 고문서를 연구하는데 유익함을 제공해 준다. 이응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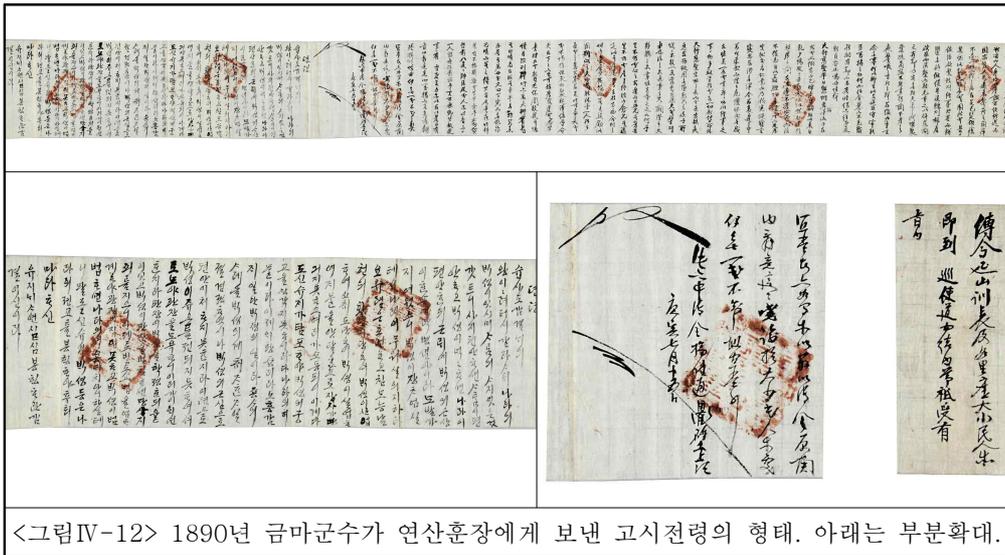
관련한 전령도 수량이 40여 건 가까이 된다. 이응엽에 관한 전령은 한량으로 발급한 것이 12건이 있고, 1802년 무과에 급제하여 출신으로 발급한 것이 23건이 있다. 칠원 관아와 방어영에서 발급한 것은, 직책이 초관, 감관, 병방, 천총, 파총 등 두루 적혀 있다.

임명하는 전령은 국왕부터 중앙의 군영과 관서, 외방의 군영과 관아까지 두루 발급하고 있다. 국왕이나 중앙군영에서 발급하는 대상자는 당상급으로, 전령으로 발급하는 직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지와 교첩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아에서 발급하는 전령은 중앙과 외방의 관아에 군관청이 있어 군교들을 임명해야 하는 원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령의 형태적인 특징은 중앙부서일수록 종이의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외방일수록 평범한 백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글씨는 여타의 임명장인 교지, 교첩, 차첩과 비교해도 다르게 없이 정자로 반듯하게 쓰고 있었다.

3) 고시하는 형태

조선시대 국왕은 경사와 흉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그와 관련한 교유서를 통해 여러 訓諭를 하였다.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고 때로는 달래듯이 국왕이 백성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관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임금의 문서를 訓諭나 綸音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賑恤, 慰撫, 戒酒, 斥邪, 養老, 勸農과 같은 범국가적인 사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시하는 전령은 일체의 법령과 조장은 방을 통해 공포하므로, 전령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국왕의 교유서는 관부의 문서 전달체계 속에서 한문이나 순한글로 번듯한 문서로 전달을 하였다. 먼저 임금의 훈유가 내려지면 六曹를 비롯한 중앙관사에서 이를 관찰사에게 관문으로 내려 보내고, 관찰사는 또 지방의 수령에게 관문이나 감결의 공문으로 내려 보내며, 수령은 이를 전령을 통해 각 면 단위에 내려 보내어 저작거리에 붙여 온 백성들이 모두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때로는 그 처리 결과를 상부에 첩정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서전달의 체계를 전령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한문과 순한글을 적어 놓는데, 순한글은 대체적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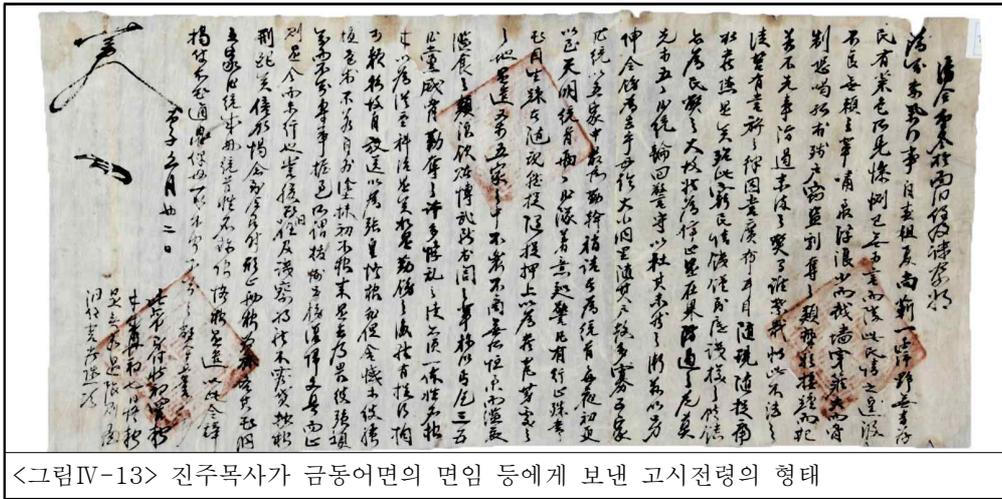
문 문맥을 반영하면서 요약하여 적는다.



<그림IV-12> 1890년 금마군수가 연산훈장에게 보낸 고시전령의 형태. 아래는 부분확대.

위의 전령은 국왕의 전교를 승정원에서 유지로 감영에 보내고, 다시 순찰사가 감결로 보낸 것에 대해, 금마군수가 연산의 훈장과 대소민인에게 보낸 고시하는 전령이다. 내용은 민인들이 官長을 모함하고 침범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이다. 시면은 ‘傳令 延山訓長及各里底大小民人等’이라 적혀 있다. 전령의 구조는 한문으로 된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령이고, 중간은 국왕의 유지를 적은 순찰사의 감결이다. 뒷부분은 한문으로 된 순찰사의 감결을 순한글로 번듯해 놓은 것이다. 국왕의 율음을 그대로 적는 것으로 인해, 문서가 장방형으로 긴 형태를 이루고 있다. 행정지시하는 전령에 비해 훈유하는 전령은 문장이 긴 것으로 인해 그 종이 길이도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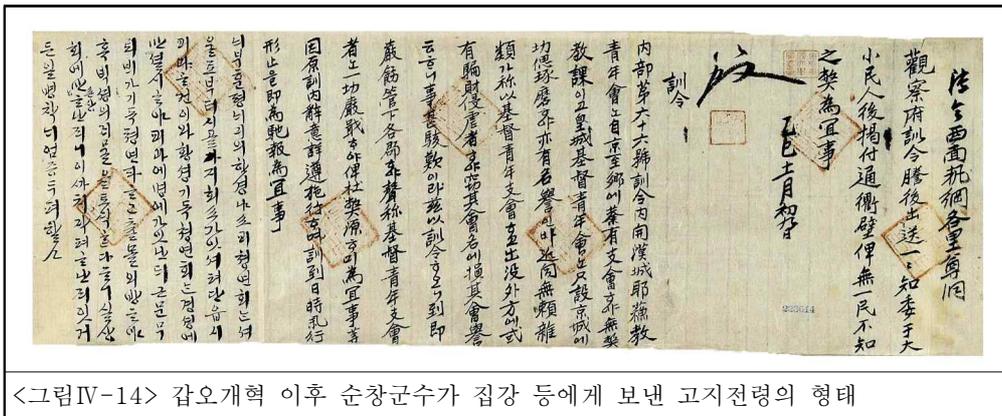
수령이 훈유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三禁에 대한 내용으로 신칙하는 경우가 있고, 또 권농, 권학과 같은 내용으로 고시하는 전령을 보낸다. 특히 백성을 자식같이 가르치고 기른다는 의도에서 국왕의 율음과 같이 훈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수령이 보내는 전령은 朱熹가 南康軍을 맡으면서 방문을 보내의 학문을 장려하고 풍습을 교화시켰다는 전고에 의해 榜文의 형태로 보냈다. 이는 ‘出榜告示’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IV-13> 전주목사가 금동어면의 면임 등에게 보낸 고시전령의 형태

위의 사진은 전주목사가 金冬於面의 면임과 동임, 기찰장에게 부랑배를 단속하기 위해 五家作統을 시행하니, 그 명단을 작성해 올리라는 내용이다. 시면에는 ‘傳令 金冬於面洞任及譏察將’이 적혀있다. 훈유로 작성하는 고시이므로 초서로 된 작은 글씨가 뾰뾰하게 적혀있다. 전령으로 발급하는 고시와 일반적인 행정문서로서 전령의 구별은 ‘揭付坊曲’이라는 용어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본다. 위의 전령도 결사에 ‘揭付本面通衢, 俾毋一民不聞不知之弊, 宜當事’라고 적혀 있다. 본 면의 사방으로 통하는 거리에 전령을 붙여 한 사람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폐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고시하는 전령은 행정지시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시국적인 사안의 포고, 새로운 법령을 공포, 민간의 풍습을 훈유하고 교화한다는 유학적인 이념의 발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전령으로 보겠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전령에 대한 문서명이 모두 훈령으로 바뀌고, 관장의 화압도 직인으로 날인하게끔 하였다. 또 사용하는 문자도 한문과 순한글이 아닌 한글을 국문이라 명칭하여 주언어로 사용하고, 오히려 한문을 보조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관습으로 인해 한문을 바탕으로 국문을 이두처럼 사용하는 국한문 혼용이 주문자로 사용되었다. 갑오개혁에 의한 공문서 제도의 변천은 일대 개혁이라 할 수 있지만, 관습적인 사용에 의해 이 이후에도 10여년간 기존의 문서형태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IV-14〉 갑오개혁 이후 순창군수가 집강 등에게 보낸 고지전령의 형태

위 문서는 갑오경장 이후인 1905년에 內部에서 보낸 訓令을 순창군수가 백성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으로 보낸 전령이다. 당시에 순창군수는 李建鎔(1870~?)이다. 전령의 내용은 무리배들이 基督青年支會라고 칭하고 다니며 폐단을 일으키니, 이에 외방에서 이를 사칭하고 다니는 모든 것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다. 문서의 전달 체계는 일차적으로 내부의 훈령을 관찰부에 보내었고, 관찰부는 다시 순창군수에게 훈령을 보냈으며, 순창군수가 순창 西面의 집강과 각 마을의 준임과 동임에게 전령으로 보낸 것이다. 시면에서는 바로 수취자인 서면집강과 각 마을의 준동을 적어 놓았다. 전령의 본문은 관찰부의 훈령을 베껴 보내니, 대로변의 벽에다 게시하여 대소민인들에게 모두 알리라는 내용이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관원의 화압은 印章으로 대신 날인한다. 그러므로 화압 대신 관인이 날인된 것은 1895년 이후의 것으로 봐야 한다. 화압으로 하는 방식을 유지한 것도 일부 발견된다. 이후 내부에서 보낸 훈령을 국한문으로 적어놓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시 한글로 그 요약본을 적어 놓았다. 상부의 첨부문서를 후록하는 전령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문서가 가로로 상당히 긴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전령은 지시나 명령의 전달보다는 민인들에게 국가적인 사안을 알리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전령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특색이다.

고시하는 전령은 전령, 방, 고시의 형태로 민간의 사망이 통하는 벽면에 게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즉 전령이 행정문서라기

보다는 공고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그 내용은 국가적인 법령 공포에서 왕실의 경사나 흉사 같은 중대사, 시국적인 사안에 대한 현안 반포에 대한 것이다. 또 수령이 발급하는 전령은 교화를 통해 풍습을 유지한다는 유학적인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주희가 남강군을 다스리면서 반포한 효유방문을 전고로 삼아, 이를 답습하고 현실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령의 유형별 내용

1) 명령·지시를 전달

(1) 軍營 大將의 명령 전달

군영의 전령은 전란과 관련이 깊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비롯한 외전과 무신의 난을 비롯한 각종 내란과 의병관련 기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전란 때 사용하는 군영의 전령은 通知, 命令, 曉諭라는 측면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군영에서 사용한 전령은 關文이나 移文 같은 公文과는 분명히 분별하고 있는 것 같다.⁷⁵⁾ 군영의 전령이란 기본적으로 명령을 전하는 문서이다.⁷⁶⁾ 아울러 전령을 통해 병사를 일으키는데, 그 신표는 배자를 사용한다.⁷⁷⁾ 여기서 배자는 符節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전령의 문구에 ‘知委’란 자세히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만큼 전령은 통보의 기능을 한다.⁷⁸⁾ 또 각 마을마다 승전의 소식

75) “...(전략)中間無去處, 因次次推問, 公文捧受出來之人, 乃三和水軍金良順. 自言公文及傳令, 納于肅川元帥處, 又受秘密關子而去.(후략)…” 『辰巳錄』 第1冊, 48~49쪽, 보물 제 160-1호 유성룡 중가 문적, 국가기록유산.

76) “...(전략)慶水使馳報, 春原島, 倭船一隻到泊云. 故諸將定送, 使之搜探事, 傳令.” 『丙申日記』, 49쪽,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국가기록유산.

77) “...(전략)昨夕, 巡使道發軍傳令, 到付即時, 發牌字抄軍.(후략)…” 『丁酉·戊戌日錄』, 137쪽, 보물 제1096호 吳希文, 『瑣尾錄』, 국가기록유산.

78) “...(전략)昏聞右道降倭, 與慶倭同約, 欲爲逃去之計云. 故即傳令通之, 朝箭竹擇出, 大竹百十一介(후략)…” 『丙申日記』, 14쪽,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국가기록유산.

을 알리거나 대민안정책 등을 포고할 때도 전령을 사용하였다.⁷⁹⁾ 전령은 구두전달이나 문서뿐만 아니라, 兵船을 이용하기도 하였다.⁸⁰⁾ 전란 중에 전령의 쓰임새는 이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전령과 함께 전쟁 중에 군부에서 사용한 문서들은 『戊申倡義錄』의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무신창의록』은 1728년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그와 관련한 일체의 상황을 기록한 기록이다. 즉 내란을 진압한 것에 대한 의병들의 기록이다. 조선시대 전쟁은 내외전을 통틀어 官軍과 義兵이 합세하여 전란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기록 또한 관군의 문서와 동일한 측면이 있다.

『무신창의록』의 기록에 의한 문서들을 살펴보면 軍門節目, 道内の 書院에 보내는 通文, 檄文, 軍令, 榜, 報狀, 각 면에 전하는 傳令이 적혀 있다. 이들 문서종류는 모두 전쟁에 사용하는 군과 관련있는 것들이다.

이 중에서 전령을 軍令과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 軍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전령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병서인 『紀効新書』를 보면 軍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⁸¹⁾ 『기효신서』의 軍令은 軍營의 여러 규약들을 적어놓은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무신창의록』에 실려 있는 軍令의 모습이다. 『무신창의록』의 軍令도 軍營에서 지켜야하는 조목을 적어놓고 있다.⁸²⁾ 이를 어길 시에는 軍율로 다스리는 軍門에서의 軍법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반면 『무신창의록』에 기록한 전령은 의병대장이 부대의 軍졸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대소민인들에게 전쟁의 상황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⁸³⁾ 軍令은 또한 정조와 관련한 『園幸乙卯整理儀軌』에서도 전령과 軍

79) “…(전략)且傳令各邑, 以安竹勝捷, 知委於各其防曲.” 『黃猿日記』, 140쪽, 李益秘, 『全城世稿』, 『霞翁集』 下, 안동 국학진흥원 유교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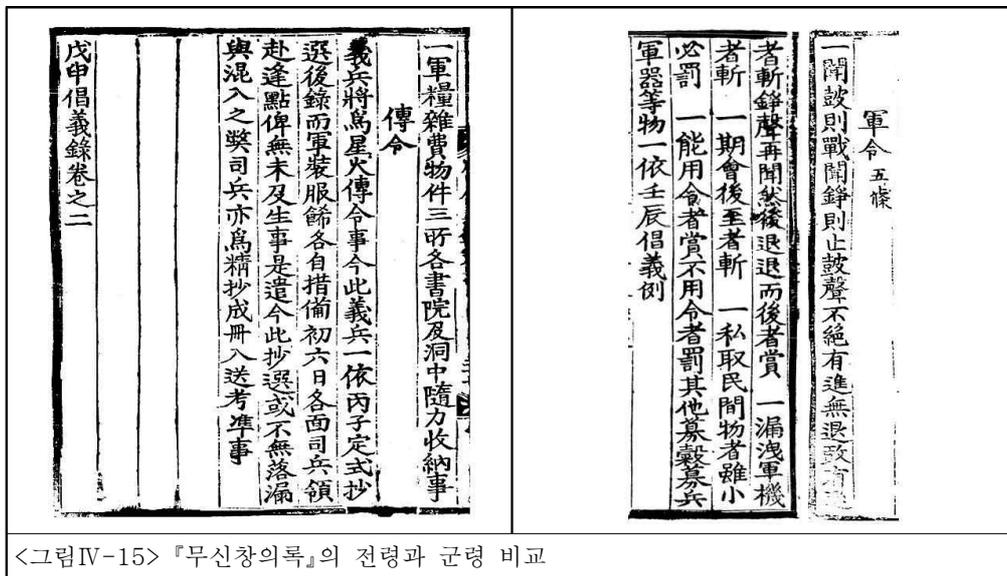
80) “…(전략)此言雖不可盡信, 亦不無是理, 故卽送傳令船, 告諭避亂人, 急令上去.” 『續丁酉日記』, 15쪽,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국가기록유산.

81) “申軍令. 凡師行動人, 一草一木, 擅離隊伍, 攙越行次, 互相鬪毆, 恣行詐僞, 姦淫婦女, 俱以軍法處治. 報賊情失實者斬, 搶掠民財者斬, 掩殺撫民者斬, 違錯軍令者斬, 臨陣退縮者斬, 妄殺平人者斬, 虛報功級者斬, 殺匿被擄子女者斬, 互爭首功者斬, 該管人員, 分別輕重, 連坐甚者, 與正犯同斬.” 『紀効新書』 卷八, 13쪽, 장서각 소장 K3-271.

82) ‘軍令五條. 一, 聞鼓則戰, 聞錚則止, 鼓聲不絕, 有進無退, 敢有退者斬, 錚聲再聞然後退, 退而後者賞. 一, 漏洩軍機者斬. 一, 期會後至者斬. 一, 私取民間物者, 雖小必罰. 一, 能用令者賞, 不用令者罰, 其他募穀募兵軍器等物, 一依壬辰倡義例.’ 李鎮東, 『戊申倡義錄』, 115쪽, 장서각 소장본 K2-411.

83) ‘傳令. 義兵將爲星火傳令事. 今此義兵, 一依丙子定式, 抄選後錄, 而軍裝服飾, 各自措備. 初六日, 各面司兵, 領赴逢點, 俾無未及生事是遣, 今此抄選, 或不無落漏與混入之弊. 司兵亦

령을 함께 실고 있어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⁸⁴⁾ 전령은 지시나 명령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군령은 군대의 행차와 관련하여 정확한 일시에 화포를 쏘고 나팔을 부는 등의 의식과 관련한 강령을 적어 놓았다. 또 이 책은 그 문서의 행이과정을 적고 있어 군령이 발급되는 행정적인 모습도 아울러 살필 수 있다.⁸⁵⁾ 이처럼 전령과 군령은 다른 의미를 지님을 이 사례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사진은 『무신창의록』의 전령과 군령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IV-15> 『무신창의록』의 전령과 군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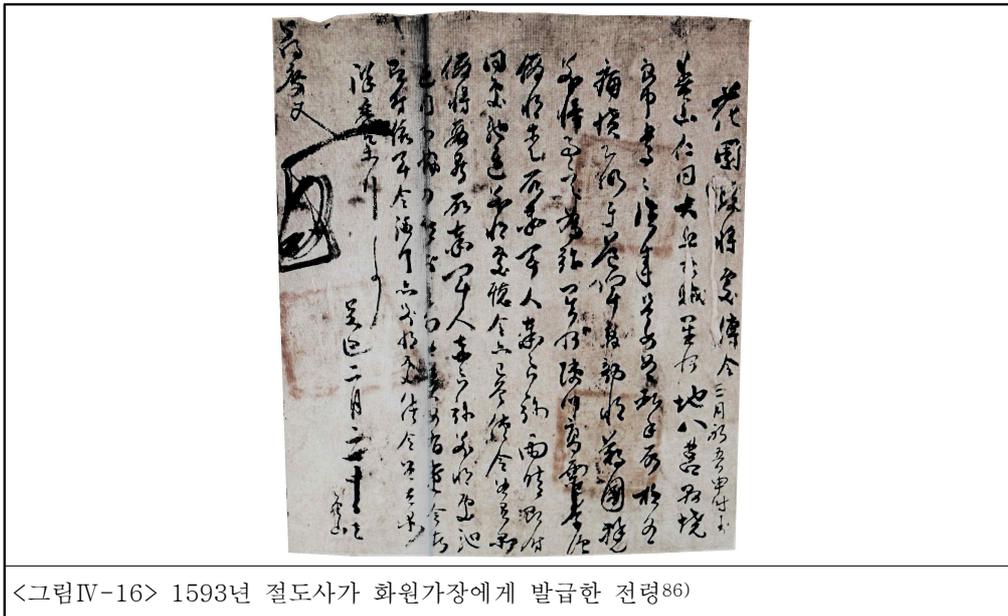
다음으로 전란에 사용하는 전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전란이라도 군영의 체제 속에서 발급하는 공문서가 있으므로, 관문과 하체를 사용하여 상하급 부서끼리 문서 행정을 펼쳤다. 임란 때에 사용한 전령으로 남아있는 실

爲精抄，成冊入送考準事.’ 위의 책, 82쪽.

84) 『園幸乙卯整理儀軌』, 1책, 규장각 소장 奎 14532-v.1-8.

85) ‘軍令. 附嚴時刻操令. ○軍令啓下之法, 凡動駕有命, 則兵曹判書詣政院, 以軍令待令之意入稟, 待命下. 詣殿庭, 兵曹判書, 以軍令傳于兵房, 承旨跪請軍令, 承旨入啓, 以下宣傳官命起. 兵曹判書應退權停時, 則自政院, 請承傳色入啓. 今番_園幸軍令, 因特教, 自整理所書進, 而出宮後, 各站軍令, 兵曹依例舉行. 紙用擣鍊紙半折, 字可二寸許. ○嚴時刻, 自禁漏呈于政院, 啓下舉行. ○城操軍令, 用粉板, 書進啓下. 如例懸之轅門. 若外內營合閱, 則自兵曹舉行, 而今番外營單操, 故外使舉行, 操令亦於粉板, 列書各操號, 稟請劃下.’ 위의 책, 155쪽.

문서는 1592년 7월에 招諭使가 禹治洪에 보낸 것과 1593년 2월에 節度使가 禹拜善의 것이 있다.



<그림IV-16> 1593년 절도사가 화원가장에게 발급한 전령⁸⁶⁾

위 전령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실물전령이다. 시면에 ‘花園假將處 傳令’을 적어놓았다. 전령의 일반적인 형태가 먼저 전령이란 글자를 적는 것에 비하면 반대로 적어놓은 것이다. 또 ‘處’라는 글씨는 상전이 천한 자에게 주는 배자에서 자주쓰는 용어이다. 전령이 지시하는 배자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아진다. 본론은 문서의 발급목적을 적는 구절이 없이 바로 시작을 하고 있다. 글씨도 흐트러진 초서로 급하게 쓴 모습이 보인다. 우치홍에게 발급한 문서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물론 전령이 군사적인 중요한 정보를 담은만큼 글씨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전란 중에 군영에서 발급한 것으로 형태적인 모습에서 조선후기의 전령과 비교한다면, 전령의 초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하다. 그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86) 이 전령은 첩속에 배접되어 있으며, 첩의 크기가 41.4×31cm인데, 전령은 그보다는 조금 작다. 이와 관련해서는 金炫榮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金炫榮 편, 『大丘月村丹陽禹氏文書』, 韓國古文書學會,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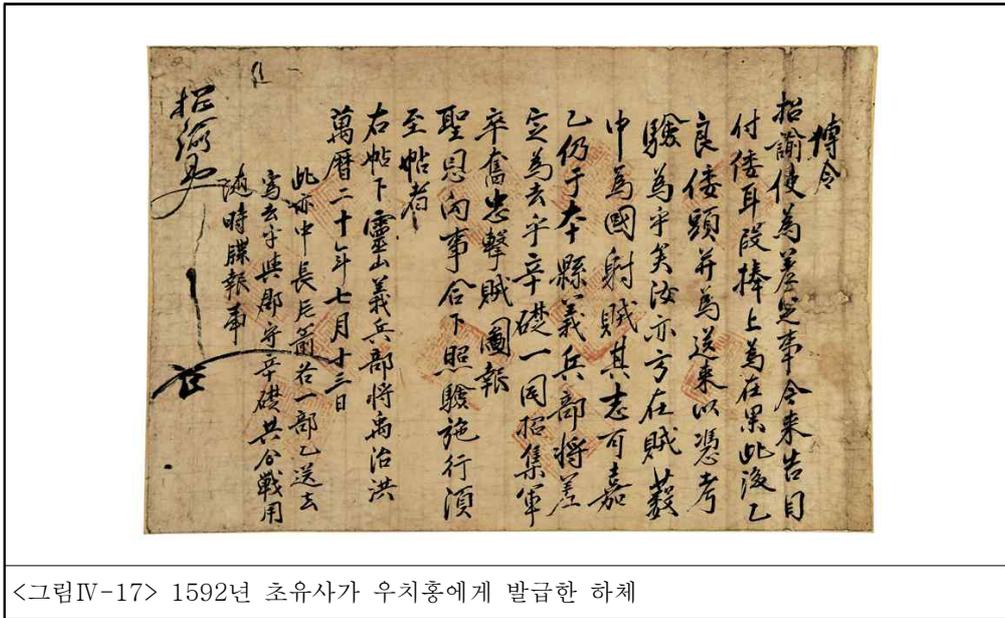
“花園假將에게 명령을 전함. 善山 仁同 大丘에 주둔한 적이 星州의 八莒縣에 항상 왕래한다라고 하기에 지극히 통탄스럽다. 이 때문에 도군관인 부장 鄭國祥을 별장에 차정하였으며, 성주 합천 고령 초계의 假將 등에게 거느리는 군인을 데리고 와서 비가 그치는 즉시, 같은 곳에 모여서 별장에게서 명령을 들으라고 이미 전령을 하였다. [화원]가장도 거느리는 군인을 데리고 별장에게 달려가서 힘을 합하여 공을 세우기를 기약하라. 만약에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즉시 군령에 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별장에게 전령하였으니, 자세히 살펴 거행할 일이다. 계사년 2월 30일. 김산에서 절도사 보냄.”⁸⁷⁾

성주에 적군이 왕래한다는 첩보가 있으므로 인근 마을인 합천, 초계, 고령과 성주에 있는 가장들이 정국상에게 가도록 명령을 하였으니, 화원가장도 달려가서 도우라는 것이다. 우배선은 당시 나이 25세로 무업을 모르고 유업만을 공부하는 서생이었다. 전란에 곡식을 내고 무기를 만들어 왜적을 무찌른 공로로 벼슬을 받아 공신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전령은 받기 전에 2월 20일에 軍功으로 인해 6품직인 宣○郎 軍器寺主簿로 임명을 받았다.⁸⁸⁾ 그와 관련한 『花園禹拜善義兵陣軍功冊』의 내용을 살펴보면 절도사가 발급한 전령은 1건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관찰사가 보낸 하체이다.

이것처럼 전란중에 사용하는 전령은 군사적인 명령을 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며 그 형태가 정형화된 문서라기보다는 급하게 쓴 편지같은 느낌을 전해준다. 또 이보다 앞선 시기인 우치홍에게 발급한 문서가 있는데, 이는 전령이라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령으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

87) “花園假將處 傳令. 三月初五日申時 到. 善山仁同大丘屯賊, 星州地八莒縣壤良中, 常常往來是如爲臥乎所, 極爲痛憤乙仍于. 道軍官部將鄭國祥乙, 別將差定爲旆, 星州陝川高靈草溪假將等乙, 所率軍人, 率良旆, 雨晴卽時, 同處馳進, 別將處聽令亦, 已曾傳令爲有置. 假將段置, 所率軍人, 率良旆, 別將處馳盡, 同心協力, 期於立功爲乎矣. 如有違令者, 卽時, 依軍令施行亦, 別將處, 傳令爲有置, 詳悉舉行向事. 癸巳二月三十日. 金山. 節度使 [押].”

88) 金炫榮 편, 『大丘月村丹陽禹氏文書』, 자료편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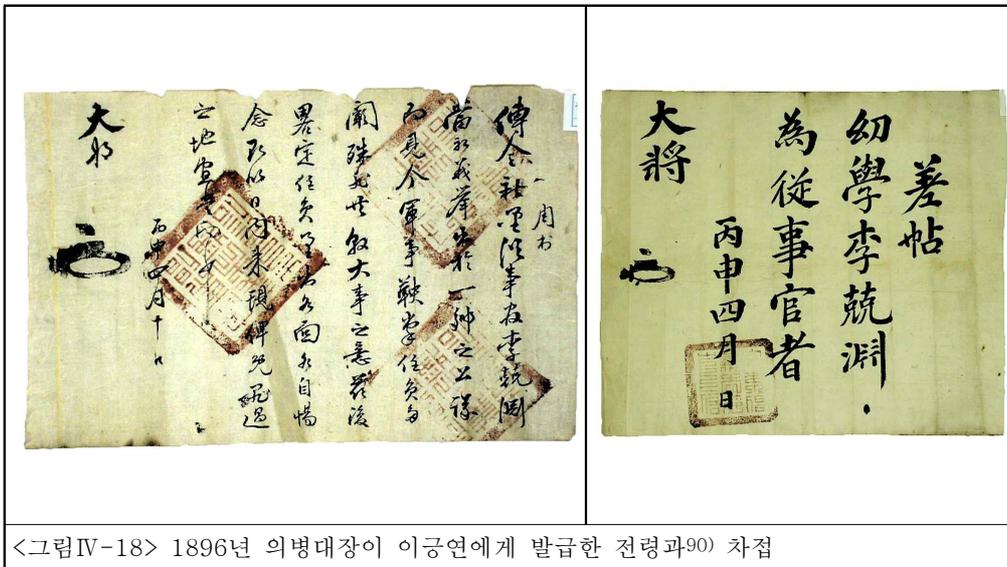
<그림IV-17> 1592년 초유사가 우치홍에게 발급한 하체

위의 전령은 초유사가 우치홍에게 발급한 것으로 화원현의 의병장에 차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선 연구자에 의해서도 지적을 받듯이⁸⁹⁾ 앞에 ‘傳令’이란 단어만 있을뿐이지, 그 내용은 하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가 하체의 형식적 특징을 가졌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령은 수취자가 앞에 적히는 반면, 위의 문서는 발급자가 본문의 제일 앞에 적혀 있다는 점이다. 즉 ‘招諭使 爲差定事’의 구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문이나 하체 등의 공문서에서 작성하는 방식이지, 전령의 실물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기술하는 방식을 거의 볼 수 없다. 둘째로 본문의 결사에 ‘合下照驗施行須至帖者’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하체의 결사방식이다. 셋째로 수신처가 제일 뒤에 적는 것은 공문의 기술방식이며, 또 ‘右帖下靈山~’이라고 적어 놓았으니, 이는 당연히 하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장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군문이라 하더라도 공문과 전령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하체를 보내면서 전령과 혼동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문서는 초유사가 우치홍에게 보낸 하체로 봐야 한다. 전령이란

89)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56쪽, ;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145쪽 참고.

단어의 의미는 전란 중에 문서전달의 측면에서 초유사의 ‘명령을 전한다’는 정도의 附記로 추정하겠다.

그리고 위 문서를 差定문서로 규정짓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위의 하체는 행정용으로 행정적 사안에 대해 전하는 문서로서, 차접과 같은 임명장의 역할을 하는 증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군영의 의병장을 차정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자체로 임명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관부의 정식적인 문서는 증서라는 문서를 통해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이는 속사에 보내는 감결이나 배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 李兢淵(1847~1925년)을 종사관에 임명한 사례는 좋은 예시가 되겠다.



<그림IV-18> 1896년 의병대장이 이금연에게 발급한 전령과90) 차접

위의 사진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발생한 의병과 관련한 자료로서 1896년 의병대장이 안동 주촌의 이금연을 종사관에 임명한 차접과 전령이다. 이 전령은 종사관 임명과 관련하여 직책을 빨리 맡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이다. 군영의 종사관은 종6품의 벼슬로 금위영과 어영청의 종사관은 문관 군색은 侍從이

90) “傳令. 新差從事官李兢淵, 當初義學, 出於一鄉之公議, 而見今軍事缺掌, 任員多闕, 殊非共敦大事之意. 茲復畧定任員, 差出各面, 各自惕念, 卽以日內來現, 俾免罪過之地, 宜當向事. 丙申四月十日 大將 [押]” 『고문서집성 41 -안동 주촌 진성이씨편(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85쪽.

며, 무관 향색은 실직이다.⁹¹⁾ 군영의 종사관은 대부분 문신을 차정하는 것으로 보인다.⁹²⁾ 그러므로 임명에 있어서도 전령으로 발급하지 않고 차접으로 하고 있다. 당시 의병대장이 이공연을 종사관에 차정하면서 차접을 발급하고 동시에 의병의 임원이 부족하니 빨리 와서 맡아달라는 내용의 전령을 보낸다.⁹³⁾ 이 사례에서 보듯이 군영에서 적어도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는 차접이나 전령의 임명장을 발급하는 것이고, 관문이나 하체는 통지를 하는 행정문서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⁹⁴⁾

전란이 아닌 평시에 사용하는 전령은 군사적인 조련을 위해 지시를 내린다. 이와 함께 중앙군영에서 발급하는 전령은 궁궐의 숙위나 국왕의 어가를 호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번달 구일 園幸할 때 본영에서 어가를 호위하는 군병은 내영의 馬軍 2초, 步軍 2초, 鄉軍 3초와 외영의 親軍衛 2백, 別軍官 1백, 步軍 5초를 마련하며 진을 펼침과 환위하는 일체의 일들을 질목에 의거해서 계하하고 거행함이 마땅할 것.”⁹⁵⁾

위는 정조가 園幸할 때 정리사 沈頤之, 장용영의 내영에 내사 徐有大, 의사 趙心泰에게 내린 전령의 내용이다. 어가를 호위할 군사를 동원하여 인원을 정해주고 이를 규정대로 잘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외방의 수령이 발급하는 전령과 다르게 군영에서 발급하는 지시·명령 전령은 군사적인 작전과 연계하여 발급한다. 적의 동태를 통보하는 것, 군사 작전상 휘하 장수에게 명령하는 것, 각 읍에 포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앙군영에서 발급하는 것은 군정과 관련한 물품조달, 군사조련 실

91)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136쪽.

92) 이에 대한 기록은 『國朝縉紳案』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文’이라 표시되어 있다. 『國朝縉紳案』,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청구기호 18.52,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93) 이에 대해서 『乙未義兵日記』에 실려 있다. “十一日晴. 午, 從事官差帖又傳令, 使之督來, 亦非其任也.” 『고문서집성 41 -안동 주촌 진성이씨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855~896쪽.

94) 이러한 근거는 차접을 발급하면서 보내는 小帖을 동시에 보내는 사례에서도 살필 수 있다. 宋哲鎬,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1~87쪽.

95) “今月初九日_園幸時, 本營隨駕軍兵, 以內營馬軍二哨, 步軍二哨, 鄉軍三哨, 外營親軍衛二百, 別軍官一百, 步軍五哨, 磨鍊爲旅, 行陣及環衛等節, 依節目, 啓下舉行, 宜當者.” 『園幸乙卯整理儀軌』, 1책, 75쪽, 규장각 소장.

시, 궁궐의 숙위, 국왕의 어가 호위 등과 같은 내용으로 발급하였다. 군영에서 발급한 전령은 실물문서가 많지 않아 그 형식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우배선의 전령을 통해서 전령의 형식이 갖추어지기 전의 초기적인 형태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2) 외방 官長의 행정지시

외방의 수령이 향촌의 입장이나 민인에게 하달하는 문서는 청원서의 題辭, 傳令, 牌子, 下帖, 完文, 節目으로, 이는 수령의 지방통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그 중에 전령은 수령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두루 실현하는 문서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전령은 향촌의 행정실무인에게 보내어 여러 행정적 사안에 대해 통보하고 실행시키며,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령은 민인들의 청원에 대해 題辭로 판결을 하며, 偷葬한 사안에 대해 摘奸하거나 移掘하는 실행은 전령과 배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또 전령을 통해 세금을 독납하게 하고, 송사에 관한 민인을 推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수령이 전령을 통해 사법권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령이 민간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령의 군사권이란 관아의 군졸을 임명하는 것과, 수령이 영장을 검직하는 지역에서 군졸을 임명하고, 군사조련에 관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외방 수령이 발급하는 행정서로서 지시전령은 민인에게 전령의 내용을 잘 전달하여 향촌의 여러 행정사안을 원활하게 시행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 향촌의 입장에 到付日時와 舉行形止를 보고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입장들에게는 격려하고 벌을 주는 등의 공과를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牧民攷」의 내용은 전령을 전달에 관한 수령의 고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부분이다.

“무릇 전령으로 지시하는 일은 민들에게는 유익함이 많지만, 所任들에게는 고역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所任배들이 애초부터 민간에 반포를 하지 않은 적이 자주 있어왔다. 민들이 혹여 官庭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갑자기 묻기를 “어느 날에 官傳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보았는가?” 라고 한다면, 본 자들은 보았다고 답을 할

것이고, 보지 못한 자는 보지 못했다고 답을 할 것이다. 소위 보았다는 사람에게 전령의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 순순하게 통하지 않는다면 刑房으로 하여금 다시 효유를 하게 할 것이다. 그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면리의 이름을 물어 즉각 면임을 잡아 오게 하여 官습을 민간에 배포하지 않았다는 죄로 엄하게 곤장을 칠 것이다. 또 어떤 면임이 어떤 날에 관전령을 전하지 않았다는 죄에 곤장 몇 차례 맞았다는 것으로서 각 면에다가 이 뜻을 자세하게 알려 저번의 전령을 다시 잘 배포하게 할 것이다. 이후부터는 관령을 반포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엄하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신칙함이 옳을 것이다. 이가 소위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이고, 전도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⁹⁶⁾

전령이 가진 내용의 기본적인 속성은 중앙과 지방관아의 정책적인 의사를 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목민관으로서 수령의 역할은 부모가 우매한 자식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듯이 민들을 잘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신칙시키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행정사안에 대한 수령의 대민 통지는 의사의 전달에 주안점이 있는 반면에, 세금 수취와 향촌의 이권이 개입하는 사안 등은 민들이 잘 따라주고 시행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민들의 고역일 뿐만 아닌 것이라 입장들도 힘든 점이다. 이러한 행정적인 해결은 수령이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위 목민서의 기사처럼 수령이 입장을 잘 다스리는 기술은 향촌의 정치를 순조롭게 이끌어가는 비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령의 정책적인 의사전달은 고시와 효유라는 명목의 전령으로 발급하였으며, 그 사안에 따라 언문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문자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⁹⁷⁾

전령이 행정문서로서 갖는 요건은 발급자와 수취자, 그에 관한 내용이다. 전령의 발급자는 외방 수령이 되고, 수취자는 관속, 면임과 동임을 비롯한 향촌의 임장, 대소민인들이다. 전령의 내용은 국가와 향촌의 여러 행정적인 사안에 대한 통지, 조사보고, 금지조치, 여러 세금 독촉, 민인 推捉 등으로 나눌

96) “凡傳令知委之事，多有益於民而害於所任者，故所任輩，往往初不頒布於民間者，有之。民或有入官庭者，猝然問曰，“某日有官傳令，汝輩見之乎？”云云。則見者答以見，不見者答以不見，所謂見者，細問傳令，曲折如不通，使刑房更爲曉諭。其不見者，則問其面里名，卽刻捉來面任，以官令不爲頒布民間之罪，嚴杖之。而又以某面任，不傳某日官傳令之罪，受杖幾度，各面知悉此意，某日傳令，更良頒布。此後官令，不爲頒布者，當爲嚴治之意申飭，可也。是所謂不測之威，顛倒之術也。” 『牧民攷』,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343쪽.

97) “傳令曉諭民間之事，若緊要，則以諺文傳令，帖連眞書傳令，使愚民洞知之。” 『牧民攷』,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344쪽.

수 있다. 이에 대한 특징은 향촌의 행정사안이라는 점에 집중되고 있으며, 조선의 문인 우대정책으로 인한 유학과 관련한 학문의 장려에 대한 사안은 하체로 발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⁹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령의 발급자와 수취자, 전령에 담긴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전령의 발급자는 외방 관장인 수령이다. 장서각과 규장각에 있는 실물전령을 토대로 지역별로 발급자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IV-1> 지시전령의 지역과 발급자 목록표⁹⁹⁾

지역	발급자 신분
京畿道	加平郡守, 署理官, 利川郡守.
忠淸道	牙山縣監, 樂安郡守, 永同縣監, 永春縣監, 沃川郡守, 陰城縣監, 靑山縣監, 淸州郡守, 忠州郡守, 忠淸道觀察使, 鴻山郡守, 懷德郡守, 懷德縣監.
慶尙道	巨濟府使, 居昌府使, 慶州府尹, 金山郡守, 寧海郡守, 大邱郡守, 大邱營使, 密陽郡守, 密陽府使, 三南戢捕官, 尙州郡守, 安東郡守, 安東府使, 彥陽縣監, 安義縣監, 靈山郡守, 蔚山府使, 晉州牧使, 鎭海官, 靑松府使, 統營門.
全羅道	南原府使, 南原稅務第一所主事, 綾州牧使, 羅州牧使, 靈光郡守, 靈巖郡守, 務安府裁判所, 茂長縣監, 茂朱郡守, 保寧郡守, 寶城郡守, 淳昌郡守, 靑巖察訪.
江原道	
濟州道	濟州牧使, 濟州判官.
黃海道	信川郡守, 海州郡守, 海州三南戢捕官, 海州舟司監官廳, 黃海道觀察使署理.
咸鏡道	
平安道	查官平安南道觀察使.
기타	警務使, 捧招官, 營使, 中營, 鎭營.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령을 발급하는 주체는 각 지역의 목민관인 수령이 대부분이다. 간혹 南原稅務第一所主事와 三南戢捕官과 같은 직함은 20세기 초의 직함으로, 갑오개혁 이후에 바뀐 관제에 따른 것이다. 물론 관찰사가 발급하는 전령도 있다. 그러나 수령이 발급하는 빈도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량이다. 관찰사가 발급하는 문서는 官階의 위치에 따라 사용하는 문서가 다르다. 그러므로 관찰사가 발급하는 전령과 하체는 그 수량이 일부분이고, 주로 관문과 감결을 발급하여 문서행정을 시행하고 있다.¹⁰⁰⁾

98) “一, 旣以士流爲之主管, 則官家之所以待之者, 亦當自別, 不然則士流之愛其身者, 豈肯爲之? 如有所勉勅, 當依朱子南康故事, 或曰申諭, 或曰下帖, 傳令二字, 切勿用於文字間者.” 「山中問答」上, 「雜著」, 崔興璧『蠹窩先生文集』卷之六, 549쪽.

99) 장서각과 규장각의 실물 전령 400여건을 토대로 작성함.

지시하는 전령을 받는 수취자들은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관부소속의 아전과 장교들이다. 이들은 관아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향촌의 민인을 추착하고, 물건이나 돈을 받아내는 목적으로 전령을 발급하였다. 둘째는 서원과 사우의 有司와 齋任이다. 서원에 보내는 전령은 수량에서 많지 않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주로 하체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셋째는 향촌인 面里洞의 입장들이다. 이들은 향촌의 여러 행정적인 시행을 전담하는 이들로서, 가장 많은 전령을 이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특히 면임과 풍헌은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향촌의 풍습을 바로세우는 민인 교화와 지방행정이라는 고된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직책이다. 넷째는 양반과 천인으로 나누는 대소민인들로, 이들에게 내리는 전령은 효유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주로 발급하였다. 다음의 도표는 지시하는 전령을 받는 수취자의 직임과 그에 따른 전령의 내용을 분류해 본 것이다.

<표IV-2> 수취자별 전령의 내용 분류표¹⁰¹⁾

분류	소속 및 역할	수취자	전령의 내용
관아	관아 포교	譏察將, 都領將, 營校, 巡校, 將差, 將羅, 差使, 使令, 將色, 刑吏, 主人.	민인 推捉, 세금과 물품 收取상래, 偷塚 督掘, 동냥배 토색 금지와 추착.
	관아 아전 및 색리	公兄, 公員, 書員, 色吏, 工房, 檢納官, 留鄉首校, 監官.	結稅 독촉, 호적 마감, 권농 보고, 묘소 적간.
	역	驛長, 驛長吏.	驛站과 관련한 비용 독촉.
서원	서원	祠齋任, 都色, 有司, 祠首奴.	祠宇 관련한 조치와 보고 사항.
면리동 동 임 장	면리동 감시와 관장	都尊位, 尊位, 執綱, 面首, 頭民, 洞首.	풍습을 규찰, 結稅 납부, 투총 독굴, 물짐, 여러 대민고시를 전달.
	면리동 담당	風憲, 執綱, 約正, 面任, 面長, 洞首, 頭民, 洞中,	풍습을 규찰, 結稅 납부, 結田을 민간에 알림, 투총 독굴, 소송인에 대한 조사, 효

100) 『關甘目錄』은 함경도 감영에서 1890년 6월 15부터 1891년 9월 15일까지 19개 면에 보낸 문서명만 기록한 것이다. 이 사료를 통해 관찰사가 보낸 문서는 주로 관과 감결임을 알 수 있다. 본건의 해제 참조. 『關甘目錄』,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청구기호 19.59,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101) 면과 洞의 입장 구분은 任洪淳의 『面行政大要』을 참고하고, 전령의 내용은 장서각과 규장각의 실물전령 400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임홍순이 나눈 입장에 대한 호칭은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본 표의 전령에 대한 시기가 1908년까지임을 감안하면, 입장의 호칭이 혼용되고 착종되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任洪淳, 『面行政大要』, 京城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發行, 1924, 9~10쪽 참조.

		洞任, 各洞, 統首, 村長, 楔長, 座上, 訓長.	행가의 煙戶雜役을 勿侵, 三禁에 대한 고시, 동냥배 토색 금지를 고시, 교량 축조, 饑荒한 민인 조사보고 및 고시, 차사와 대동하여 민인 추착.
	면리동 조세 징수 전담	公有司, 首戶.	公錢 납부.
	면리동 행정 집행보조	風憲, 約正, 首書記, 社倉社首, 監官, 山直.	투장 적간 및 독굴, 松楸 물침, 社倉에 관한 稅米 독봉, 還上 관련 수납·보고·이송, 진흙미 관련 업무.
	면리동의 잡역을 시행	領所任, 上任, 里任, 摘奸鄉吏, 有司.	투총 방지 및 독굴, 堤堰 축조, 賭地 총수 보고.
	관아와 면의 공문서 전달	面主人.	민인 推捉, 세금과 물품 收取상래.
민인	대소민인	門中, 作人, 結民, 稅民, 各里民人, 大小民人.	결세 독납과 고시, 동냥배 금단 曉諭고시, 祠宇 물침과 투총 독굴. 거제도의 경우 나무 수송.
	개인	개인.	개인과 관련한 사항 지시 : 作人 차정, 帖價 독촉, 여러 비용 독촉.

위의 표에서 보듯이 수령이 전령으로 지시하는 내용은 향촌의 행정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 세금과 관련한 것이다. 세금납부를 예고하고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 독촉하는 것을 전령으로 시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반가의 무덤에 몰래 투장한 것을 조처하는 것에 대해 전령으로 해결을 하였는데, 투총한 주인을 찾아내거나 아예 이를 파내게 하고 금지시켰다. 이는 장교나 차사를 보내어 해당지역의 임장과 함께 처리하게 하였다. 이때는 전령과 함께 장차에게 배자를 보내어 무덤주인을 잡아오게 하였다. 수령이 지시전령 중에 많은 분량이 주로 19~20세기의 것이므로, 세금과 산송의 영향에 의해 전령도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도표에서 전령을 통해 지시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대표적인 관속과 임장들이 도맡은 업무의 특징만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IV-3> 전령의 내용에서 본 각 임장들의 업무특징 분류표

관속과 임장	업무의 특징
장교, 차사.	민인추착 物錢督捧.
색리, 서원, 감관.	관아의 행정 업무.
면임, 풍헌, 약정.	풍습 교화와 면리 행정을 담당하고, 지시와 고시하게 하는 것이 많음.
리임, 동임, 집강, 준위,	면의 하위 단위로 면임의 지시를 받거나 밭와 洞의 세금, 물

두민.	침, 독굴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
사수, 감관.	社倉과 관련한 업무.

위 표에서 보듯이 관아에 있는 관아의 장차는 민인을 잡아오는 것과 물건과 돈을 거두어 오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이다. 이들에게는 전령을 발급하지만, 대개는 배자를 주어 민인을 추착하게 한다. 면임과 풍헌은 면리의 풍습과 행정을 도맡아 하고, 이임과 동임은 각각에 속한 지역의 규찰과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社首는 사창의 환자와 진흙미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다. 감관은 각 업무에 배정한 감독관으로 사창의 업무를 맡은 감관과 농사를 권장하는 권농감관 등 여러 분야의 감관이 존재한다.

면임이 풍습을 교화하고 행정을 처리한다는 역할은 학문적인 식견과 관아 행정이라는 실무를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양측면에 능통한 이가 드물어 수령은 능력 있는 임장의 차정에 항상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수령이 면임에게 하체와 전령이란 문서로 발급하는 것이 혼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면임의 성격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영총』의 기사를 참고할 만 하다. 이들은 군관청에 소속한 장교로서 면임을 겸임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면임을 겸하는 동시에 번을 서는 대신 바치는 벼를 면제받았다고 하였다.¹⁰²⁾

전령으로 민간에 고시를 하여 효유하거나 신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국가적인 사안에서부터 수령의 자체적인 입장에서 효유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전령을 사용하여 수령은 애초에 到任 전부터 관하의 이속들과 해당 면에 여러 가지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수령이 도입 후에 고을폐단을 손쉽게 알기 위한 방법이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론을 수집할 목적으로 申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목민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到任하기 수일 전에 각 면에다가 전령으로 알려 각각의 面·村·酒幕·寺刹·浦戶·山店의 폐해를 자세하게 물으면서 말하길, “본 읍은 길 가에 위치하여 연이어 흉년을 만나 민가가 초채함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난감해서 크게

102) ‘軍門의 將校와 面任을 겸하여 맡은 자는 모두 除番租를 면제하거나 감해준다.’ 황위주 의 譯, 『脫草譯註 營總』, 경상북도·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2007, 224쪽 軍官廳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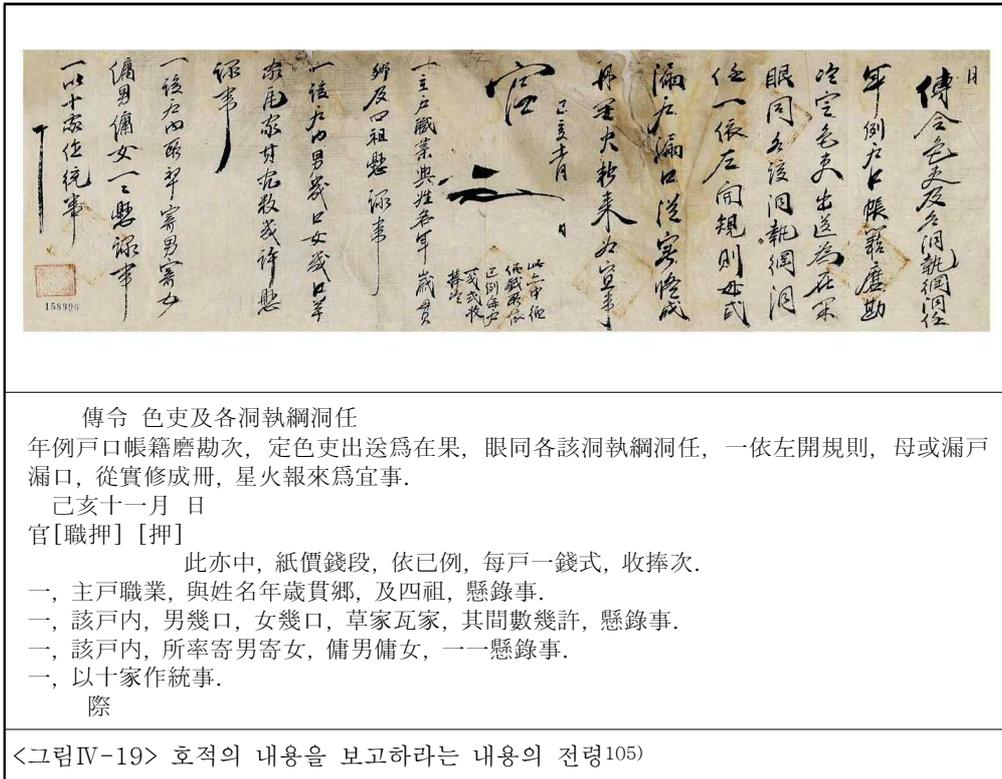
민폐가 되는 것들을 老吏와 父老들이 곧바로 유식한 선비들과 의논하여 폐단을 나열해 기록하고, 즉시 와서 올린다면 관에서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널리 의논하여, 큰 문제라면 營門에 보고하여 변통하고, 작은 문제라면 관가에서 직접 고칠 것이다. 그러니 위로 官政의 득실과 향청과 질청의 폐단과 여항의 곤궁한 상황까지 조금도 꺼리지 말고 일일이 올려라.” 라고 운운하라.”¹⁰³⁾

라고 한 언급처럼, 수령이 도입하기 전부터 민간에 통지하여 신칙을 하고, 또 민간의 폐단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전령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령이 통지을 역할을 하면서, 향촌의 입장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민고」에서는 수령이 민간의 곤궁한 민생고를 해결해 주도록 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수령이 민간을 신칙하고 통제하는 의도가 더 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령을 보낼 때 자잘한 사정을 언급하지 말고 당장에 긴급하게 필요한 일만 적어라고 한 사정에서도 알 수 있다.¹⁰⁴⁾ 전령에 이런 우원하고 세세한 사정을 구구절절하게 쓴다면, 전령의 강력성이 감하하여 중국에는 민인들도 그 강도에만 성화가 되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촌의 행정에서 연분으로 나누어 의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시하고 보고하는 것을, 수령은 각 색리와 면임, 동임에게 전령으로 하였다. 아래 사진은 연례로 있는 호적을 조사하여 성책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지시 전령이다. 수령이 색리를 정해 보내면 해당 동의 동임과 집강이 같이 힘을 합하여 호적을 작성하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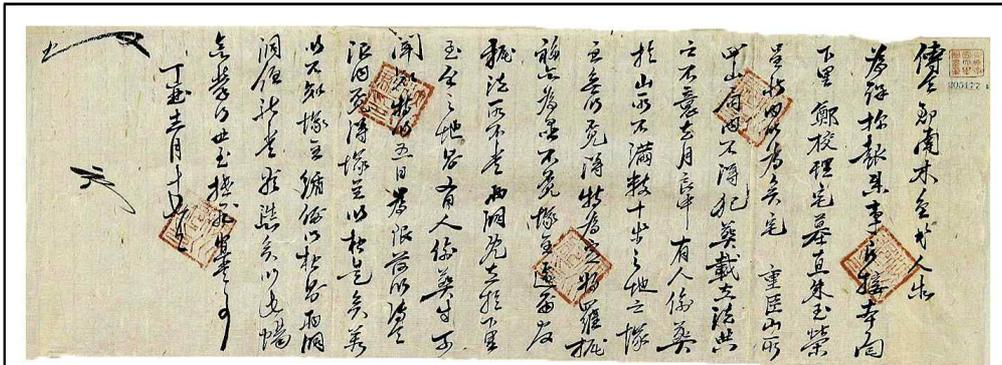
103) “到任數日內，傳令知委於各面，細問各面·各村·各酒幕·各寺刹·浦戶·山店弊瘼曰，“本邑處在路傍，連值凶年，民間之困悴，不問可知是乎乃。其中之最爲難堪，大爲民弊者，老吏父老，就議於有識士夫，列錄弊端，卽爲來呈，則自官當詳思博議，大則報營門而通變，小則自官家厘革之。上自官政之得失，鄉作兩廳之弊端，閭巷困急之狀，無少忌諱，一一陳言。”云云。”「牧民攷」,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341쪽.

104) “凡于傳令，除非目下必行之事，切勿以迂遠細瑣之事，煩擾於民間也。民不信令，專由於此等處，蓋朝令而暮犯者，官若不知而不治，則我之傳令，都歸見侮也。”「居官大要」, 『朝鮮民政資料牧民篇』, 소화 17.



위의 사진처럼 연례로 작성하는 호적뿐만 아니라, 관아의 결세와 군포 등 각종 세금을 독납하도록 할 때 전령으로 지시를 내림을 볼 수 있다. 해당 마을의 임장이 이 기간을 어기거나 하면 바로 차사를 보내 이를 잡아오고 엄한 벌로서 문초를 하였다.

105) 1899년 利川郡守가 色吏及各洞執綱洞任에게 발급한 전령, 크기 19×65, 규장각.



傳令 郡南木金民人等

爲詳探報來事. 即接本面下里鄭校理宅墓直朱玉榮呈狀內, 以爲矣宅重臣山所四山局內, 不得犯葬, 載在法典. 而不意去月良中, 有人偷葬於山所不滿數十步之地, 而塚主無時覓得, 特爲定將羅掘移亦爲置. 不覓塚主, 遽爾官掘, 法所不當, 兩洞既在於下里至近之地, 則有人偷葬, 自可聞知. 特以五日爲限, 茲以傳令, 限內覓得塚主, 以報是矣. 若以不知塚主, 循例以報, 則兩洞洞任, 斷當嚴懲矣, 以此惕念舉行, 毋至抵罪, 宜當向事.

丁酉十二月十七日

官[職押] [押]

<그림 IV-20> 투총한 것을 즉시 파내라는 내용의 전령106)

위는 鄭校理의 묘지기인 朱玉榮의 소장에 의해 옥천군수가 郡南 木金民人들에게 장교와 함께 바로 투총한 것을 이굴시키게 한 전령이다. 사대부가에 묘소에 투장을 하였더라도, 먼저 무덤의 주인을 찾아 자진해서 파가게 하는 것이 순례인데, 위의 사례는 이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덤을 파내라는 조치를 취했다. 전령으로 발급하는 투총 독굴에 관한 것은 조선후기의 사회사정에 따른 결과로서, 단지 무덤의 문제가 아니며 무덤을 둘러싼 송추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정에 의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전령으로 처리한 사대부가의 묘소를 물침하게 하고 몰래 무덤을 쓴 것을 파가게 하는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

또 차사를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이 보내기 전에 한 번 조심시키는 입장에서 먼저 전령을 발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칙에도 제대로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장교나 차사를 보내어 해당인을 잡아오도록 하였다.

“...(중략) 누차 명령하여 신칙하는 아래에 너희들이 시간만 보내니 더욱 놀라움을

106) 1897년 沃川郡守가 郡南木金民人等에게 발급한 전령, 크기 24×70, 규장각.

금할 수 없다. 마땅히 특별히 엄하게 처리하는 방도를 만들 것이고, 偷埋한 것은 사리상 마땅히 將羅를 정하여 다시 보내어 掘去해야 하지만, 官에서 구애된 바가 있어 단지 전령으로서 너희들에게 신칙만 하므로, 즉각 동구 밖으로 이굴할 것이다. 소위 투총한 놈은 石碑에 변고를 저지른 일로 營門에 보고하여 엄치 처치할 일이다. 그러니 당장에 잡아 대령함이 마땅할 일.”¹⁰⁷⁾

위의 사안에서 보듯이 수령은 나장을 보내어 몰래 만든 무덤을 파내야 하는데, 우선 전령을 보내어 경고만 하겠다는 것이다. 수령이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할 때 장교를 보내어 강도 높게 처리하는 것이다. 위 언급을 통해서 전령과 차사배자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다.

투장과 관련하여 수령이 송사를 해결함에 전령을 보내어 산형을 적간하고 사람을 잡아오게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순차적인 의례를 거친다. 영광의 영월 신씨 집안의 문서를 통해 산송을 처리하는데 처리한 문서와 전령의 쓰임새를 알 수 있다.

<표IV-4> 영월 신씨 산송과 관련해 발급한 문서 목록표¹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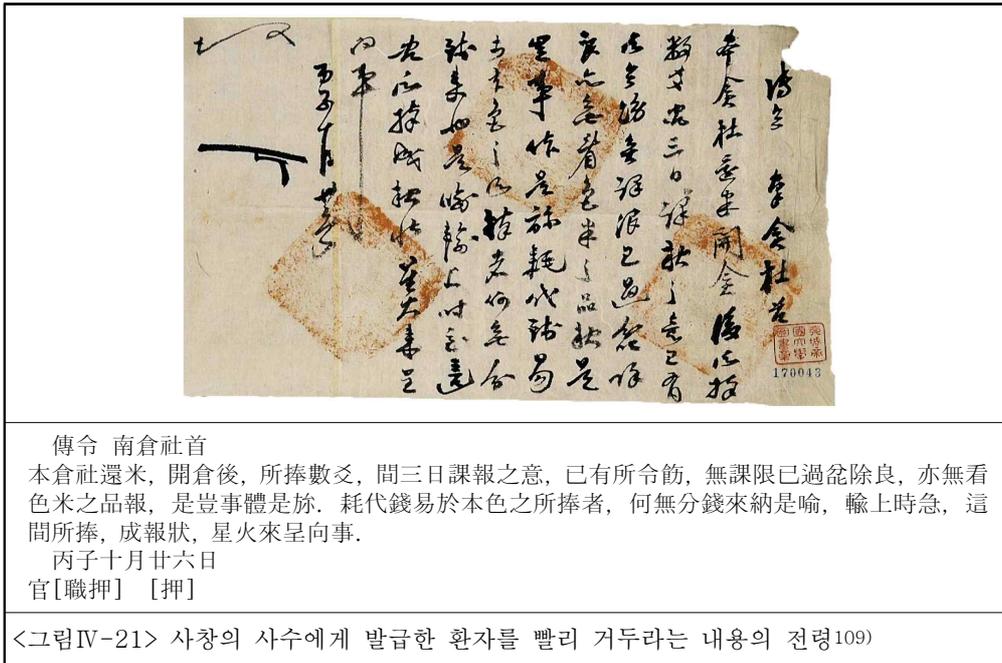
순번	연도	문서명	발급자	수취자	내용
1	정미(1847). 4. 10	서목	장자산면풍헌	무장현감	신경의 투매정장에 의거 찾아도 보이지 않음
2	정미(1847). 5. 4	전령	무장현감	莊子山풍헌	환봉 후에 형지를 보고하라
3	정미(1847). 5. 4	문보	장자산면풍헌	무장현감	무덤의 적간을 보고
4	정미(1847). 5. 4	서목	장자산면풍헌	무장현감	金聖祿 정장제음에 의거 移掘 형지를 보고
5	도 광 27(1847). 5. 6	관문	행영광군수	무장현감	신항업만 먼저 잡아 보낼 것
6	정미(1847).	배자	무장현감	장자산주인	도형 측량 지시

107) “傳令 西後風約及耳開里洞任. 因安班呈狀據, 偷塚督掘次, 差送刑吏及差使矣. 再偷塚之至, 有何私情, 而多般飾巧, 終未舉行. 今才還現, 卽當嚴繩其不善之罪, 而所謂偷塚段, 官已掘去, 已有心定, 又有發令, 則何可掩置乎. 屢度令申之下, 汝矣輩, 荏苒度了, 尤不勝痛駭, 當有別般嚴處之道是遣. 偷埋段, 事當定將羅, 更送掘去是矣, 官有所拘, 只以令飭於汝矣等爲去乎. 卽刻移塚於洞口外, 所謂偷塚之漢, 以石面作變事, 有報 營嚴處事, 期於不日內, 捉待宜當事. 己巳五月十一日 行使[着官] [花押]” 『고문서집성 43 -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99쪽.

108) 『고문서집성 27-영광 영월신씨편(1)-』, 3 첩관통보류 서목관련 일괄문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92쪽.

	5. 9				
7	정미(1847). 5. 10	도형과 제사	장자산주인	무장현감	측량 도형과 현감의 제사(소송 에 졌으니 이굴해 가라)

위의 도표를 보면 신경의 집안에서 관아의 수령에게 투총한 것을 해결해 달라는 송장을 올리면 수령은 제사로 이를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 면의 면임이나 풍헌에게 그 해결을 지시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1번의 항목처럼 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무장현감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전령을 보내어 그 처리과정을 보고하라고 하였다. 또 장자산의 풍헌이 문보와 서목을 갖추어 보고를 하였고, 다시 영광군수가 합세하여 관문을 보내어 신항업만이라도 먼저 잡아 보내도록 압박을 하였다. 무장현감은 장자산주인에게 배자를 보내어 산소의 도형을 측량하게 하였다. 현감은 다시 이를 토대로 도형에다가 바로 제사를 적어 소송에 졌으니, 바로 이굴해 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때 또 소송에 진 사람은 다짐장을 작성하여 기한을 정해두고 무덤을 파겠다고 할 것이다. 이를 어기면 수령은 차사에게 배자를 보내어 투총을 독굴하게 하는 것이다. 산송뿐만 아니라 투총한 것에 대한 처리가 수령이라도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의 사례처럼 바로 이굴을 명령하기도 한다. 신경의 사례를 통해 산송에 관한 행정문서의 종류와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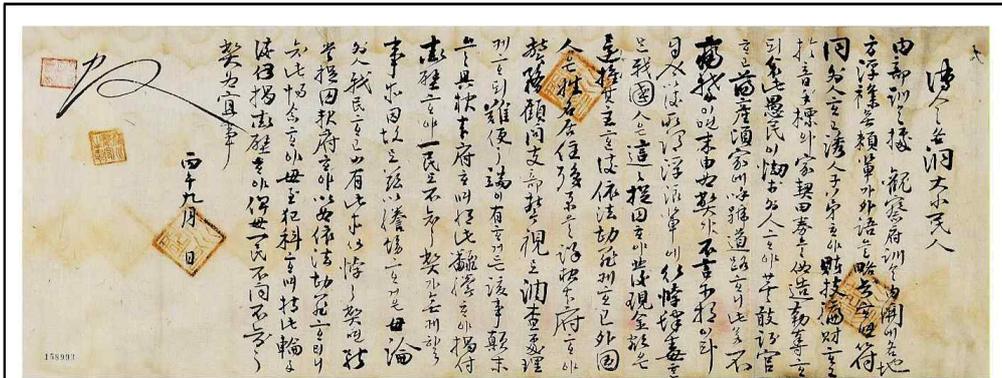


<그림IV-21> 사창의 사수에게 발급한 환자를 빨리 거두라는 내용의 전령¹⁰⁹⁾

위 전령은 靑山縣監이 南倉의 社首에게 발급한 것이다. 사창의 환미를 거두는 일에 대해 보고를 지시하였지만, 이 기일이 늦어짐에 대해 신척하는 의도로 전령을 보내었다. 각 고을마다 하나의 창고를 마련하여 민들에 대해 환자를 배급하고 이를 수납하는 것을 시행하였다. 사창의 사수에게 보내는 전령은 환곡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령으로 신척하는 경우에는 전령이란 용어와 함께 告示, 榜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전령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도 가로로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또 모든 민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도로 변의 벽이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점막에 벽에다가 揭付하라는 지시와 함께 내려지고 있다.

109) 1876년 靑山縣監이 南倉社首에게 발급한 전령, 크기 19×32, 규장각.



傳令 各洞大小民人
 内部訓令據 觀察府訓令內開에 各地方浮襍無賴輩가 外語을 略知호면 符同外人호고 誘
 人子弟호야 賭技騙財호고 於音手標와 家契田券을 偽造勒奪호되 哀此愚民이 惻於外人
 하야 莫敢訴官호고 蕩產傾家에 呼號道路호니 此若不痛禁이면 末由爲弊가 不言可想이
 라 自今以後 所謂浮浪輩에 行悖肆毒호는 我國人은 這這捉囚호야 發現金額은 還推其主
 호後 依法勘罪케호고 外國人은 姓名居住職業을 詳報本府호야 警務顧問支部警視로 調
 查處理케호되 難便之端이 有호거든 該事顛末을 具報本府호며 將此飢膽호야 揭付街壁
 호야 一民도 不知之弊가 無케할事等因故로 茲以瞻飭호거은 母論外人我民호고 如有此
 等行悖之弊면 斷當捉囚報府호야 以爲依法勘罪호리니 知此惕念호야 母至犯科호며 持此
 輪示後 仍揭街壁호야 俾無一民 不聞不知之弊 爲宜事
 丙午九月 日
 官[職押] [利川郡守之章]

<그림IV-22> 대소민인에게 발급한 무뢰배들과 동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령¹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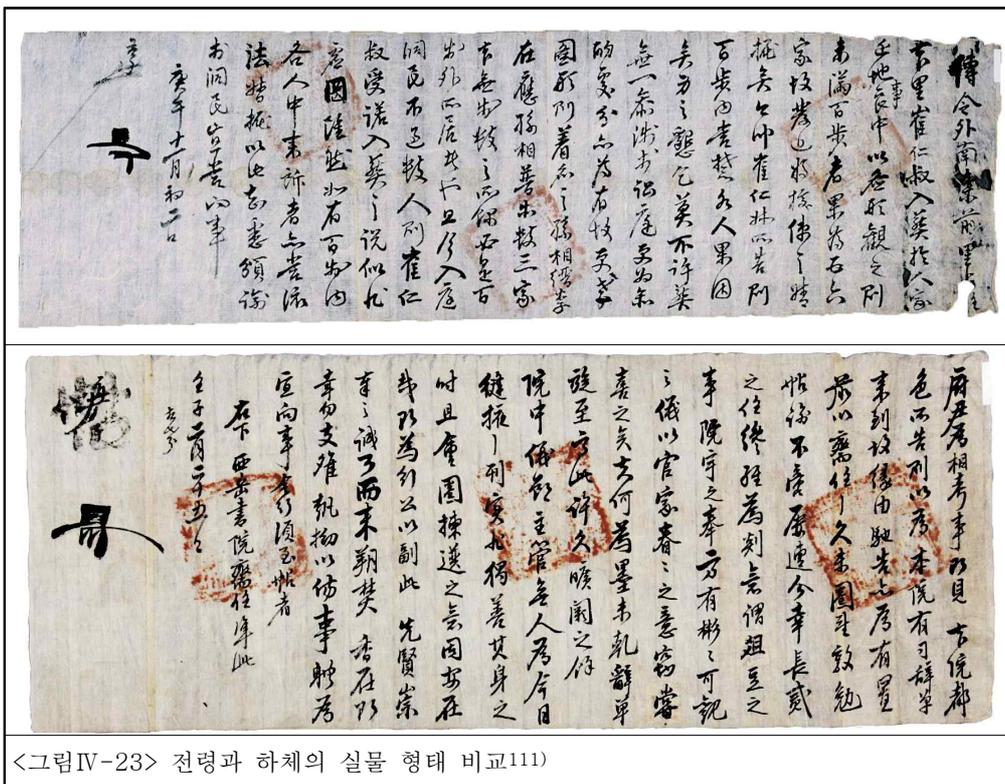
위의 전령은 20세기 초의 전령으로, 이 시기에는 고시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령이란 용어가 그대로 쓰인 경우이다. 내용 또한 개항한 사정에 따라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외국인과 함께 모의하여 민인들의 수포와 가사전답 문기들을 위조하고 빼앗아가는 현대판의 사기사건에 대해 민인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칙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시의 성격을 가진 전령은 행정말단의 거행문서이듯이, 이와 유사한 하체도 또한 같은 형태로 발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령이 하체를 발급하면서 계방을 지시하는 고시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전령과 하체의 상관성에 대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다음은 수령이 발급하는 전령과 하체의 구분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다.

전령과 하체는 기본적으로 기두어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전령의 발급목적

110) 1906년 利川郡守가 각동의 대소민인에게 발급한 전령, 크기 27×73, 규장각.

을 적는 본문의 기두어를 살펴보면, 전령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전령이 기두어에 ‘爲知委舉行事(자세히 알리고 시행하기 위한 일로 발급)’, ‘爲星火知委舉行事(성화처럼 빨리 알리고 시행하기 위한 일로 발급)’를 적고 있다. 지위라는 것은 어떤 사안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알린다.’는 의미이다. 즉 성화지위거행은 떨어지는 별이나 화롯불에 피는 불꽃처럼 빨리 알리고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爲惕念禁斷事(관심 가지고 금지하기 위한 일로 발급)’, ‘爲星火查報事(성화처럼 빨리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한 일로 발급)’, ‘爲星火來待事(성화처럼 빨리 데리고 와서 대기시킬 일로 발급)’를 기두어로 쓰고 있는데, 이는 조사하여 보고하고 빨리 잡아와서 대령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령이 담고 있는 성격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이는 하체의 기두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발신자 직함+爲下帖事’, ‘발신자 직함+爲相考事’인 것과는 구분되는 전령의 특색이다.



111) 경오년 경주부윤-外南奈前里 上任 전령. 『고문서집성 50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

위의 사진은 전령과 하체의 실물을 제시한 것이다. 전령과 하체의 문서의 형식적인 부분을 달리하는 것만 제외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으로 모습과 아울러 전령과 하체가 가진 서식적인 부분만 따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IV-5> 전령과 하체의 문서식 비교표

명칭	문서구성	전령	하체
시면	①시면	전령+ 수신자	문서명 없음, 간혹 ‘下帖’가 적혀 있음
본문	②기두사	발신자 없음 爲~事 본론 바로 시작	발신자+ 爲下帖事 발신자+ 爲相考事 본론 바로 시작
	③依據 문서	卽到付~則 卽接~則 卽見~則	卽到付
	④依據 문서 끝나는 이두	是如 是如爲臥乎所 亦爲有置	亦教是
	⑤지시	행정 지시	행정 지시
	⑥문서명	故茲以傳令	故茲以下帖
	⑦가정형	若(或)有~則(是去等) 若(或)有~則(是去等)	
	⑧당부사항	해당 지시를 어길 경우 죄과	해당 지시를 어길 경우 죄과
	⑨결사	俾無~之弊, 宜當者(向事) 無至~之地, 宜當者(向事)	~宜當向事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以爲~之地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수신처	⑩수신	수신처 없음	右下+ 수신자+ 準此
연도	⑪발급연도	연월일	연월일
방서	⑫방서	없음	연도 좌측에 발급목적을 小字로 적음
재결	⑬재결	직압, 화압	직압, 화압
인장	⑭인장	주색 관인	흑색 ‘帖’자인, 주색 관인

이 중에서 전령과 하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위 표에서 진하게 표시해 둔 ①, ②, ⑥, ⑨, ⑩, ⑫, ⑭번을 들 수 있다. ①번과 ②에서 전령은 시면에 수신처를 적고 마지막에 발신자의 관압을 하지만, 하체는 반대로 기두어에 발신자를 적고 마지막에 수신처를 기입한다는 점이 다르다. ⑥번에서는 본문의 중간에 문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각 문서마다 다르게 표

서원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79~380쪽. ; 임자년 경주부윤-서약서원 재임 하체. 『고문서집성 66 -경주 옥산 여주이씨 장산서원·치암종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346쪽.

현한다. 문서가 훼손되어 문서명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곳을 통해 요긴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전령, 하체라 적지 않고 신칙한다는 등의 용어를 쓰는 문서도 있다. ⑨번에서는 전령은 ‘宜當者’, ‘宜當向事’로 본문을 마무리 하는데 반해, 하체는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를 투식적으로 더 첨부하고 있다. ⑫번 傍書는 발급목적을 연도 옆에 다시 한 번 더 적는 것이다. 하체에는 이를 적어놓지만, 전령에는 적지 않고 있었다. ⑭번에서 전령은 여타의 관 문서처럼 붉은 관인을 날인하고 있는데, 하체는 마지막 직함을 쓰는 곳에 흑색의 ‘帖’자 인장을 겹치게 날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은 전령과 하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¹¹²⁾ 그러나 때로는 하체 또한 위의 형식을 준수하지 않고 결사를 비롯하여 수신처, 첩자 인장이 없는 전령과 같은 형태로 발급하는 위격의 문서들이 발견된다.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갖춘 하체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¹¹³⁾

이에 대한 구분은 우선 전령과 하체를 받는 수취자를 통해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령과 하체의 구분은 吳弘默(1830~?)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오형목이 함안군수로 재직 시절에 기록한 함안총쇄록을 본다면, 1889년 5월부터 1890년 2월까지 발급한 하체가 총 27건이 있다. 이들의 수취자는 校中, 鄉中, 會中, 鄉廳會中, 各面 訓長, 各 書齋, 各 面의 訓長과 儒生 들이다. 그 내용은 시험을 보고 그 일시를 알리는 등의 학문을 권장하는 것과, 民逋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 등이다. 오형목이 보낸 하체는 향교 등에 한정하여 보내고 있으니, 이는 양반과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색을 가진다.¹¹⁴⁾ 반면에 그 기간 동안 전령은 46건을 보냈다. 그 대상자는 함안의 아전과 各 面, 各 場市, 執綱, 洞戶首 有司, 任掌, 崇德殿 후손, 大小民人 등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고을의 행정을 맡은 실무자들이

112) 현재 장서각에 있는 실물형태의 하체는 64건, 규장각에 84건으로 도합 152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113) 예를 들어 순흥부사가 발급한 체문을 들 수 있겠다. 크기 60×108cm, 『고문서집성 9 -창원황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21~222쪽.

114) 이와 같은 예시로 경주의 용산서원에 발급한 하체를 들 수 있겠다. 총 35건 중에 서너 건을 제외하면, 모두 과거 시험과 백일장의 일시를 알리어 유학의 문풍을 돕거나, 서원의 향사와 관련한 것이다. 『고문서집성 50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편(1)-』, 3첩관통보류, (11) 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다. 오형목은 전령과 하체의 발급대상을 구분하여 보내고 있다는 것을 통해 그 문서의 인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령과 하체가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점은 유학의 문풍과 관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체는 전령과 같은 지시서라 하더라도 서원과 훈장 등의 학문적인 儒風과 관련하고, 반면에 전령은 향촌의 잡무로 분리되는 행정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하체가 각 면의 면임에게 발급하면서 행정적인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좀 더 고구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또 규장각의 南倉의 社首에게 보내고 있는 전령과 하체는 동일한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문서로 발급한 것이 있다. 이러한 다른 현상은 문서가 가진 행정적인 처리 절차의 문제이거나, 수취자의 신분에서 따른 결과물, 하체의 체가 지닌 의미가 하나의 공문서로서 인식한 것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우선 유추해 보겠다.

(3) 민인 체포영장 差使牌子

전령 문서 중에 임명이나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의 것이 있다. 수취자가 將差나 差使, 또는 主人한테 내린 것이며, 내용은 어떠한 인물을 잡아오라고 짤막하게 적힌 것이다. 이 문서는 단지 장차, 차사, 면주인이라 적혀있는 것과 그 직함 위에 전령이라 적힌 것이 섞여 있어 그 문서의 성격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에는 ‘差使帖’이란 문서명으로 명명하였다.¹¹⁵⁾ 차사첩에 대해 발급자는 지방관인 수령이고 수취자는 장차 등인데, 이 때 將差를 ‘장교를 차출한다.’는 의미로 보았던 것 같다. 또 그 성격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연행하는 劄狀으로 보고 있다. 이 문서에 대한 여러 사료를 참고해 본다면, 문서명을 첩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문서명으로 사용함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115) “地方官(守令)이 差使(將校)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差使帖은 被疑者의 調査, 罪人의 連行, 納付金의 督納 등을 위하여 該當者를 連行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람을 급히 불러들일 때 地方官이 差出하는 將校에게 발급하는 劄狀이다. 대개 將校를 差出하기 때 문에 「將差」라고도 하였다.”崔承熙, 『改正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11, 220쪽.

조선시대 차사라는 명칭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맡긴 직책을 말한다. 지방에서 궁궐로 진상품이나 稅米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이를 감독하는 관원을 중앙정부나 관찰사가 수시로 임명하였다. 또 이와 달리, 지방의 관아에 소속하여 고을의 군무와 형무를 맡으며 수령을 보좌한 직책이 있다. 이들은 장교와 군졸, 형리 등으로 불리며 민인들을 체포하는 형사권을 구사하였다. 차사첩의 차사라는 것은 장교나 형리 등이 민인을 출두하게 하거나, 체포하는 임무를 맡은 직임을 말한다고 보겠다.

차사첩이란 문서명은 ‘帖’의 종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문서학에서 첩이란 문서의 용도는 임명과 지시와 증빙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첩은 그 용도를 떠나 형식적인 면에서 항상 첩이란 용어가 쓰임을 볼 수 있다. 즉 증빙의 용도로만 보더라도, 첩은 문서의 마지막 발급자의 직함 위에 검은색의 ‘帖’자 인장을 꼭 날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사의 형식에 ‘須至帖者’를 쓰고, 또는 수신처에 ‘右下○○○[人名] 準此’라는 구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¹¹⁶⁾ 그러므로 차사첩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고문서학적으로 첩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¹¹⁷⁾

그렇다면 이런 문서의 명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행정적 사무를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期限을 기록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우선 『象山錄』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 내용은 죄수에 대한 기록을 ‘囚徒’라 하고, 세금을 거두어 운반하는 기한을 ‘限記’라 한다고 하였다. 이후에 정약용 자신이 직접 실행한 업무로서, 백성을 호출하는 기한을 ‘期錄’이라 하고, 이를 侍童에게 기록하게 하였다고 한다. 백성을 호출하는 부분에 小記를 달아 ‘배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잡아들임(出牌子捉民)’이라 부연 설명을 하였다.¹¹⁸⁾ 이 구절을 통해 여러 행정적인 사안으로 민들을 잡아오는 문서가 배자라고 명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¹¹⁹⁾

116) 첩의 형식에 대해서는 宋哲鎬,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참고.

117) 정약용은 인장을 날인한 전령을 ‘紅帖’이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령을 帖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첩을 관부문서라는 일반명사로 여긴 듯 하며, 문서학적으로는 첩의 형식이 아니므로 단순히 첩으로 문서명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118) 『牧民心書』 卷一, 赴任 六條, ○莅事.

119)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문서명을 ‘差使牌子’로 명명하려고 한다. 차사는 發差라는 용어

이뿐만 아니라, 배자에 대해 기록은 여러 목민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¹²⁰⁾ 우선 「四政考」에서는 배자전령의 형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를 사면으로 몇 촌쯤 되게 잘라, 미리 踏印을 하고, ‘모촌의 모인을 모일까지 와서 대령함’이라 쓴다. 매 리마다 비록 삼사오인이라도, 반드시 각각의 배자로서 쓴다.[배자의 모서리 쪽에는 ‘모촌의 모인을 면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서 전해줄 것’이라고 쓴다.]”¹²¹⁾

위 언급을 통해 배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배자는 크기가 작다는 점이다.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실물 문서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세로 22.3cm, 가로 29.7cm이었다. 지시전령이 세로 24~28cm, 가로 52~60cm인 점에 비추어보면 세로는 비슷하더라도 가로가 20cm나 작은 것이다. 이러한 작은 종이에 먼저 官印을 답인하고, 이후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적는다는 것이다. 그 전달은 면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하고 전하게 하였다.

배자는 장차를 보내어 민인을 잡아오게 하였지만, 먼저 면주인으로 하여금 그 전달만을 하게 한 것도 있다. 이때는 면주인에게 그 전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출석해야 할 사람이 산에 갔거나, 시장에 가서 집에 있지 않으면, 그 어미와 처에게 배자를 전하게 하였다. 또 이마저도 없다면 이웃 주민과 같이 해당자의 집에 가서 門楣에 배자를 붙여 해당자가 보게 하였다.¹²²⁾ 면주인이 기한까지 전해주지 않으면 면주인에게 죄를 주고, 면주인이 착실하게 전해주었는데, 해당자가 출두하지 않으면 관령을 거절했다는 죄로 다스린다고 하였

로 대체할 수 있을 듯하나, 이에 대해 정약용은 수령의 捕權을 설명하면서 紅帖을 가지고 차사를 보낸다고 하였으므로 차사라는 용어를 바로 써도 무방할 듯 하다.

120) 배자의 성격을 가진 전령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牧綱」,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 「牧民攷」,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 「四政考」,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 「居官大要」, 『朝鮮民政資料牧民篇』, 소화 17. 등이 있다.

121) “割紙四面數寸許, 預爲踏印, 書曰‘某村某人某日來待.’ 每一里, 雖三四五人, 必以各牌書之.[牌邊書曰‘某村某人, 使面主人, 見而傳給.’]” 「四政考」, ‘出牌捉來’,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103쪽.

122) “出送面主人曰, “汝持此牌旨, 往傳各人家, 而村民或刈柴上山, 或出往場市, 不其在家, 不是畢事, 且汝一人, 何能捉來多民乎? 當者在家, 汝則只傳牌旨, 使趨日來待, 而牌旨并令持來事.” 分付. 當者若不在家, 則厥母厥妻中, 傳此牌旨, 待其還卽爲傳示之意, 丁寧申囑. 當者不在, 而無母無妻, 無可傳給者, 則請來比隣之若叟若嫗, 同往當者之家, 以牌旨糊付窓楣之上, 使當者還家卽見.” 「四政考」, 103쪽.

다. 이때는 다시 吏廳에 분부하여 별도의 아전을 택하여 데리고 오게 하였다.¹²³⁾ 면주인이나 면임, 또는 관속들에게 관부의 명령서를 전하게 하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차사를 내보낼 때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관이 사람을 압송하는 일로 차사를 보내면, 민간에서는 禮錢으로 부유하면 500푼을 주고 가난하면 200푼을 준다고 하였다. 또 차사가 술과 음식을 요구하고 여러 공갈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졸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¹²⁴⁾ 이러한 포교들의 농간에 대해 여타의 목민서는 여러 방비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은 첫째로 전령을 성첩할 때 책자로 따로 기록하게 하였다. 수령이 전령이나 배자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아전으로 하여금 먼저 책자에 적은 후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하고 성첩을 해주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전들이 중간에서 전령과 배자를 위조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²⁵⁾ 둘째는 혹 차사나 주인이 민가에 나가서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木牌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를 ‘時牌’라고 한다. 길이가 5촌에 넓이가 2촌쯤 되는 목패에다가 각 면의 이름을 쓰고, 동시에 子時부터 亥時까지 열두 시간을 기록한 열두 개의 목패를 만드는 것이다. 반대 면에는 ‘官’자를 쓰고 수결을 하여 각을 하고 그 속을 주홍색으로 메꾸어 넣었으며, 머리에 구멍을 뚫어 줄을 매어두었다. 각각의 거리와 시간을 참작하여 장차나 주인에게 이 패를 주고 다시 반납하게 한 것이다. 또는 시패 대신에 전령이나 배자의 종이에 바로 시간을 적는 경우도 있다.¹²⁶⁾ 이런 방법을 통해 장차 등이 민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123) “面主人不若傳，而限日當者不待，則罪在面主人。若着實傳之而不待者，則當者治以拒逆之罪，限日之朔，分付吏廳，別定年少一兩吏，村民之持牌來待者，使之率入” 『四政考』，103쪽.

124) “捕權이란 이러한 것이다. 수령이 백성을 부름에 누가 감히 거부하겠는가. 혹은 송사하는 백성이 誣告하거나 혹 군리가 허위 고발하면 수령은 그것을 믿고 문득 差使를 내보낸다. 紅帖(즉 도장을 찍은 傳書이다)이 마을에 이르면 원래 禮錢이 있어 부자는 500푼이고 가난한 자는 200푼이며 붉은 포승줄로 겹을 주매 술 빚고 돼지를 삶느라 온 마을이 떠들썩하여 마치 난리를 만난 것 같으니 수령은 마땅히 이를 알아 무릇 도적이 나타난 경우 이외에는 포졸을 보내지 말 것이다.” 『牧民心書』 권2, 제5부 吏典 六條, 제2장 馭衆.

125) “凡干知委傳令及牌子，假如捉來某里某民，必使該吏，先書于冊子後，成貼出給。傳令牌子下書該吏名，然後可無中僞傳令之作奸。” 『牧民攷』，『朝鮮民政資料叢書』，여강출판사，1987，343쪽.

126) “或推捉民人，傳令面里之時，或差使及主人輩，多有中間遲滯之弊。木牌長可五寸，廣可二

술과 음식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다한 문서는 꼭 환수를 하게 하였다. 또 배자는 환수 후에 尙周까지 더하여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문자를 잘 모르는 백성들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¹²⁷⁾

전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관아와 면리의 문서수발을 담당하는 면주인이다. 그 전달에 평시에는 풍헌이나 약정, 또는 송사로 관아에 들어온 사람에게 부치지만, 급할 때는 이 면주인이나 차사를 보낸다.¹²⁸⁾ 결국 이들 면주인과 차사의 역할은 배자를 받아 기한에 닥친 사안을 해결하는 최종 해결사인 것이다. 배자를 받는 수취인은 將校를 비롯하여 여러 직책이 적혀있는데, 이들은 수령의 체포권을 이양 받아 실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朴始淳은 任實군수로 있는 기간 중에서 1896년 10월 7일부터 1897년 1월 27일까지 발급한 배자와 전령을 기록하였다. 그 기간 동안 배자를 수취한 사람은 將校, 差使, 兵校, 使令, 18곳의 面主人, 舍音, 出使色吏, 統首이다.¹²⁹⁾ 그리고 규장각에 있는 寶城郡守가 발급한 배자에서 出使首奴,¹³⁰⁾ 出使刑吏가 있다.

차사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사는 주로 관아의 군졸이나 포졸, 관노가 맡는 것으로 보인다. 『목민심서』의 吏典을 보면, 첫째는 軍校로서, 배우지 않아 문재가 없는 사람이 결국 軍교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들의 무리에 대해 다시 친총, 과총 같은 將官과 兵房掌務를 맡는 軍官과 討捕都將인 捕校로 나누고 있다. ‘군관이 혹 차

寸, 每面各爲十二牌, 每牌一面, 各書面名, 面名下書時號, 自子時至亥時, 凡十二牌. 又一面書官字, 着手訣, 皆刻之, 以朱紅填之. 又着烙印, 皆於上頭穿孔, 以繩貫之. 及其傳令推捉之時, 假令寅時, 出給寅時牌, 計其程道遠近, 量其往還遲速. 又於片紙, 書回還時, 糊付於原時之傍空時而給之. 若過限不還, 則嚴治遲滯之罪, 以爲定之規, 則官令無沈滯之患, 渠輩無出村逗留之弊矣.” 『牧綱』, ‘作時牌’,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179쪽.

127) “且傳令即使面任還納, 然後可無留置里中, 恐喝不干民之弊, 蓋常漢不識文字, 但見官踏印文書, 則易生恟故耳.” 『牧民攷』,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343쪽.

128) “一, 官傳令, 其時急之事, 當委遣邸卒, 其不急之事, 或順付於風·約, 或順付於訟民, 以靜閭里. 傳令內事, 必及期舉行然後, 乃無遺卒發差之弊. 凡拒逆官令, 遲滯官令, 致騷閭里者, 必罪無赦.” 『牧民心書』 卷一, 赴任 六條, ○莅事.

129) 임실의 18곳의 면은 一道, 里仁, 大谷, 南面, 九臯, 上云, 下云, 德峙, 江津, 下東, 上東, 上新, 下新, 上北, 下北, 玉田, 新安, 新平이다.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 『韓國學資料叢書』 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361~374쪽.

130) 任聖瑞의 婢子를 데리고 오라는 배자이다. 『古文書』 6, 官府文書(傳令), 서울대학교, 1996.

사가 되면 좋은 관직을 얻은 것처럼 가사를 위협하여 뇌물을 토색하고 예전을 징수한다.’는 언급은, 이들이 차사를 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폐단도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門卒로서 이들을 日守 또는 使令, 또는 羅將이라고 한다. 본래 떠돌아다니며 근거지가 없는 무리들임을 말하고 있다. 수령이 민인을 잡아들이는 捕權을 발동하면, 곧 전령을 통해 이들을 보냈다.¹³¹⁾ 나머지는 관노와 시동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은 차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 이들의 배자의 수취자로서 있는 것은 물품을 수취하거나, 관아의 차사들이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관령을 전하는 사령의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령과 배자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서로 다른 문서일까, 아니면 전령과 배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일까? 우선 여러 실물자료를 본다면, 배자와 전령은 서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시면에 ‘將差’, ‘差使’, ‘主人’만 적어 놓고 ‘傳令’이란 용어가 없으면 배자인 것이다. 배자의 성격이 物錢수취, 民人추착이라는 내용으로 차사를 보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령이 고을수령의 官令을 전하는 문서와는 구별될 것이다. 그러나 전령의 내용에도 물전을 수취하고 송사와 관련한 민인들을 잡아오는 내용으로 발급하는 것이 있다. 또 군교나 문졸들이 병사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시를 전령으로 전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배자 중에서도 ‘傳令差使’와 같은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문서는 여러 형태로 발급하는 실물서와 배자 중에 전령이란 용어가 적힌 실문서의 예시이다.

131) “○捕權者, 官之召民, 誰敢拒之. 或訟民誣訴, 或軍吏讒訐, 官則信之, 輒發差使. 紅帖到村, [卽踏卽傳令] 原有禮錢, 富者五百, 貧者二百.” 『牧民心書』 卷一, 赴任 六條, ○莅事.

㉠ 내용이 짧은 형태132)	㉡ 내용이 긴 형태133)
㉢ 후록을 첨부한 형태134)	㉣ 전령이란 문구가 적힌 형태135)
<p><그림IV-24> 차사배자의 문서 형태 비교</p>	

위 사진 중에 ㉠은 장차에게 발급한 배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지닌 형태이다. 본문은 ‘즉시 조사하여 물을 일로(即有查問事)’ 당사자를 ‘성화처럼 잡아올 일(星火捉來向事)’이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적고 있다. ㉡민가에 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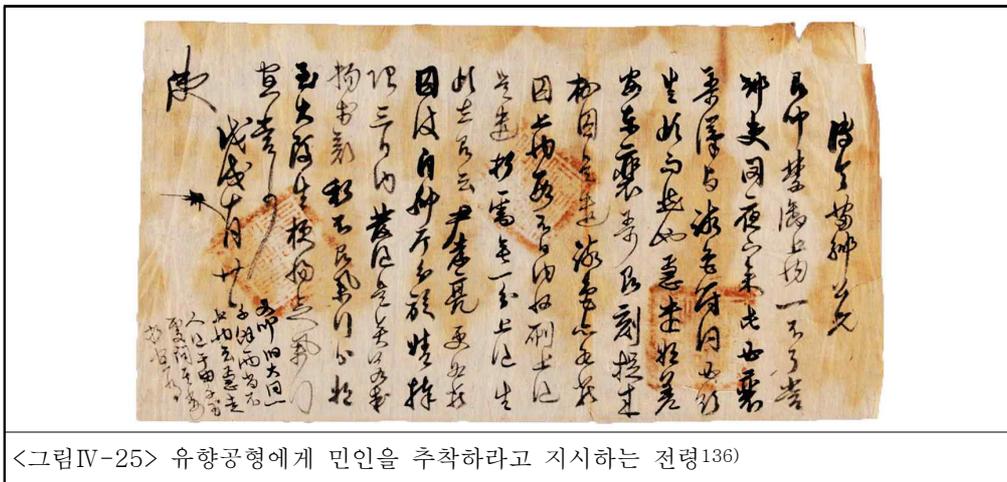
132) “將差. 即有查問事, 光利驛長申正柄, 星火捉來向事. 乙酉十二月二十五日 官[職押] [押] [朱印: 靑巖察訪之印]” 크기 23×41, 규장각 사이트, 차사첩조.

133) “出使將校朴大化 差使盧光重. 即聞何許無賴輩, 稱云水營校卒, 區畫塩釜, 討索錢財云者, 聞甚痛駭. 報營勸處次, 同校卒四漢, 洞頭民眼同, 結縛捉待者. 癸巳二月初一日辰時 官[職押] [押] [朱印: 寶城郡守之印]” 크기 29×23, 규장각.

134) “差使. 官於上京時, 分排驕貫, 零條後錄, 驛長處一一捧納是矣. 如或有頑拒者, 則一併倍道捉來向事. 乙酉十二月二十四日 官[職押] [押] 後 靑岩金永吾△十兩 仙岩尹今用△二兩 永申許龍△一兩五錢 [朱印: 靑巖察訪之印]” 크기 19×41, 규장각.

135) “傳令 將校縣左. 即有原州牧回移事. 本面新月里居尹班美汝, 即爲捉待向事. 丙子二月初一日 官[職押] [押]” 『고문서집성 55 -제천 한수 연안 이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244쪽.

토색질을 하는 水營의 교졸들을 잡아오라는 내용이다. 민가의 알 수 없는 무명인의 고발로 인해 장교와 차사를 보내니, 동두민을 대동하고 결박하여 잡아 대령하라고 하였다. ㉞은 청암찰방이 차사를 보내는 것으로 이는 민인추착이 아닌 물전수취의 내용으로 발급한 것이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 되면 후록을 통해 그 명단을 기록하였다. ㉟은 장교를 보내는 배자이면서 전령이란 용어를 사용한 실물서이다. 그 내용은 ‘즉시 원주에서 회이할 일이 있기에(卽有原州牧回移事)’ 해당인을 ‘즉시 잡아 대령할 일(卽爲捉待向事)’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장교를 보내 민인을 잡아오라는 내용의 배자임에도 전령이라 적고 있으니, 결국 배자를 전령이란 형식을 통해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문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배자와 전령은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고, 일부에서 전령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IV-25> 유향공형에게 민인을 추착하라고 지시하는 전령136)

위 사진은 留鄉所의 公兄에게 보내는 전령으로 공형에게 장차를 보내어 민인을 잡아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136) “傳令 留鄉公兄. 卽聞禁御上納, 一不了當, 邸吏罔夜下來, 此必裴哥漢, 與該色符同, 必欲生頗而然也. 急遣將差, 安東裴哥, 卽刻捉來枷囚是遣, 該色亦爲嚴囚. 上納段, 不日內收刷上送是遣, 折需無一分上送, 生頗在卽云, 尹孝亮更爲嚴囚後, 自鄉廳分旋督捧, 限三日內, 發送是矣. 若或拘於顏私, 不卽舉行, 則將至大段生梗, 惕念舉行宜當事. 戊戌十月廿日 使[職押] [押] 又聞洞大同一千餘兩, 尙不必納云. 急走人送于田千玉處, 問其委折, 宜當.” 크기 26×49. 『고문서집성 5 -의성김씨천상각과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792쪽.

“즉시 들건대, 금위영·어영청에 상납하는 것을 하나도 담당하지 않아 邸吏를 급히 내려 보냈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裴哥 놈이 해당색리와 붙어먹어 반드시 탈이 생길 그러한 것이다. 급히 장차를 보내어 안동의 배가를 즉시 잡아와서 칼을 썬우고, 해당 색리 또한 엄하게 가두어라. 상납하는 것은 즉시 수쇄하여 올려 보내고, 折需에서 한 푼도 올려 보내지 않으면 탈이 바로 생길 것이라 한즉, 윤희량을 다시 엄하게 가두어라. 이후에 향청에서 나누어 다시 받아내어 삼일 내로 발송하되, 만약 안면에 구애를 받아 거행하지 않으면 장차 큰 탈이 생길 것이니, 신중하게 거행함이 마땅할 일이다.”

군영에 상납하는 것을 해당 색리와 작당하여 거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자를 잡아오고 관련한 비용을 징수하라는 것이다. 전령으로 해당인을 잡아 오고 그 비용을 수취하라는 내용으로 발급하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수령이 전령으로 物錢收取, 民人推捉이라는 내용으로 보내는 전령이 배자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 서로 혼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둘의 문서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서도 수령의 전령과 포권이라는 것이 軍校와 관련이 있음으로 인해, 배자 또한 전령의 한 영역에서 문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전령으로 쓰이는 배자는 승정원에서 사용하는 패초의 패와 연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왕이 관원을 임명할 경우 승지가 임금의 명을 받아 命牌를 보내어 관원을 부르는데, 이를 ‘牌招’라고 한다.¹³⁷⁾ 패초의 패는 목패를 사용하는데 반해, 배자전령은 紙牌를 사용하여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는 셈이다. 즉 패초를 발급한다는 것은 관원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관찬사료를 통해 배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배자는 종이에 글씨를 쓴 紙牌를 말하지만, 나무에 새긴 패도 배자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조에서 巡將이 巡牌를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 벌을 주고 다시 개조하게 한 것이나,¹³⁸⁾ 도감에서 호조로 물건을 징수할 때 小

137) “凡牌招, 大官外, 雖有情病, 親納闕外, 違者, 二品以上重推, 通政以下禁推. 納牌不進者, 二品以上推考, 通政以下罷職.” 『銀臺條例』, 附錄, 通例, 한국고전종합DB.

138) “○睦性善以兵曹言啓曰, 卽見下所巡將李鴻基所報, 巡更管牌, 問於李孝男, 不謹巡邏, 巡牌見失云, 事極駭愕. 令攸司囚禁, 依法科罪, 宜當. 且巡將不能檢飭之失, 亦所難免, 竝爲推考, 牌子, 令該曹改造, 何如? 傳曰, 依啓.” 『承政院日記』 4책, 인조 17년(1639) 9월 6일: 「巡更管牌를 분실한 李孝男의 依法科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牌子에 글씨를 써서 새긴 것을¹³⁹⁾ 통해 지패가 아닌 목패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배자에 관인을 날인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을 ‘白文牌子’, 또는 ‘私牌子’라고 하였다.¹⁴⁰⁾ 漢城府의 경우는 다른 아문의上司가 한성부에 關文을 보내지 않고, 한성부의 五部에다가 바로 감결과 배자를 보내 물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게 하였다.¹⁴¹⁾ 상사에서 감결과 배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모두 물품수취, 工人招來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감결과 배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배자는 堂上이 임의로 보내는 것이고, 감결은 각 아문의 郎廳에서 상시적으로 보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⁴²⁾ 즉 이들 모두 속사에다가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들인데, 감결은 타 아문에 보낼 경우에는 공식적인 관문을 먼저 보내고 이를 발송하게 하였다. 또 감결은 지시하는 내용에 있어 白文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폐단이 많이 발생하므로 官印을 답인하게 하였다.¹⁴³⁾ 또한 배자는 고을수령이 차사를 보내는 것과 아울러 중앙부

139) “○戶曹啓曰, 自前都監謄錄, 則頭目一日所給, 一·二等, 則生鷄三首·生鮮三尾, 三等, 則生鷄二首·生鮮二尾矣. 今番, 則稱以西路式例, 書刻小牌子, 各令跟隨, 小通事佩持來示. 生鮮, 則與謄錄相同, 而不捧生鷄, 責納生雉, 一等, 則每員一日, 生雉六首云云.” 『承政院日記』 5책, 인조 23년(1645) 2월 19일: 「一等頭目 1인당 生雉 6마리씩을 요구하므로 生鷄와 반반씩 지급하는 것으로 開諭하겠다는 戶曹의 계」.

140) “且場內所居屯民等, 本州哨官, 謂之有闕, 砲手抄定成送, 無印信私牌子, 多端侵責. 監牧官, 疑其白文, 裂破不從, 則哨官, 捉去監牧官下人, 無數重杖云. 守令雖遞, 自有鄉所色吏, 年例之事, 所當舉行, 而過時廢置, 哨官私發牌子, 侵責屯民, 重杖監牧官下人, 尤極駭異. 晉州牧當該實鄉所色吏等, 令道臣, 捉致營下, 從重刑推, 哨官, 則令兵使, 親查私侵與否, 從重決棍啓聞, 以重馬政,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7책, 효종 6년(1655) 10월 30일: 「겨울동안 興善島 목장의 말에게 먹일 풀을 假家에 쌓아놓는 일을 하지 않은 晉州牧의 해당 色吏 등을 잡아 從重刑推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

141) “○漢城府啓曰, 諸上司, 不爲關由漢城府, 而直自分付五部, 不計事之當否, 督令舉行, 大有弊端. 故故相臣李浣, 爲判尹時, 入啓定奪, 上司之直捧甘結, 直出牌子於五部者, 一切禁斷.” 『承政院日記』 18책, 숙종 18년(1692) 4월 20일: 「上司 등에서 本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五部로 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

142) “臣等, 以爲堂上, 雖有牌子, 而必關由於郎廳, 成出甘結, 然後取用於典設, 例也.” 『承政院日記』 2책, 인조 9년(1631) 11월 22일: 「南以雄의 現告 문제로 忠勳府의 배척을 받았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洪의 계」.

143) “本月初八日, 兵曹郎廳上下坐起時, 禁盜軍二名, 定送甘結, 以白文來示. 臣以爲本廳軍士, 凡小分軍之役, 不許出用, 既有奉承傳, 則因循謬例, 不但事體未安, 白文甘結, 亦非準信公帖. 自今以後, 白文甘結, 則不許施行之意, 分付下人還送矣. 翌朝又將其文, 踏印以送, 若使本廳, 謂以謬例, 終不定送, 以至於相較, 則恐損事面, 故姑令定送矣. 兵曹郎廳, 怒於甘結還送, 捉入本廳下人, 決棍十二度云. 凡公帖行用, 必準踏印者, 乃所以防奸僞也. 況伏兵軍出用, 又異於他事, 而引用謬例, 不以爲非, 勿論所執之如何, 而移怒於下人, 少不顧藉. 若此不已, 則來頭之弊, 勢將難支, 一有定式, 所不可已也. 自今以後, 白文甘結, 一切勿施, 別都監差役及科場與勅使時, 禁盜軍外, 凡小分軍之役, 一依癸未定奪, 切勿出用事, 更爲定式施行,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23책, 숙종 33년(1707) 5월 16일: 「白文甘結을 시행하

서인 승정원의 승지나 의금부와 같은 곳에서도 모두 배자를 보내 민인추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⁴⁴⁾ 고을수령이 보내는 배자의 위력은 성화같이 재촉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나운 차사를 보내면 토색질과 아울러 잡아온 사람을 심하게 구속하고 엄하게 매질을 하는 폐단이 발생한다.¹⁴⁵⁾ 그러므로 정약용은 도적을 잡는 일이 아니면, 차사를 민가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배자와 감결에 대해서 정조의 언급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工匠을 부름에 문득 감결로서 알리니, 감결이라는 것은 대개 알리는 용도의 글이다. 만에 하나 지체한다면 반드시 죄를 달게 받기를 사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어를 삼으니, 그런 까닭에 ‘감결’이라고 명칭한다. 이는 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관문을 보내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이로써 알렸으나, 그 지체되어도 감히 죄를 묻지 않은 즉, 어찌 감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 무릇 進排하는 일은 아전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장인들이 도착하지 않으나, 만약 반드시 해당 아문에서 왕복하면서 그 징수를 청해야 한다면, 이 같은 때에 나라의 일이 지체됩니다. 형세로 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 같은 조정에서 공경하고 대우하는 예절이 혹시라도 이 같은 일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¹⁴⁶⁾

위 언급은 감결의 용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감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른 아문의 속사에 물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감

지 말고 癸未년에 定奪한대로 禁盜軍을 제외한 小分軍은 내다 쓰지 말 것을 定式으로 삼아 시행하자고 청하는 左捕廳의 계.

144) “李濡所啓, 夏川都正 椅, 勘罪放釋後, 不納贖錢. 故自禁府發牌, 捉來奴子, 則不惟不送其奴, 至以醜辱書送於牌子之後. 收贖既是啓下公事, 則此實侮辱國家也, 決不可不別樣處置.” 『肅宗實錄』 37권, 숙종 28년(1702) 윤6월 20일: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허사진의 혁파 등에 대해 논의하다」.

145) “或其買賣田土, 典鬻牛畜, 艱辛拮据之際, 未及登時備納, 則官家牌子, 有如星火之催促, 猛差臨門, 有甚虎狼之哮吼, 先徵酒食, 復索賂物, 及到官家, 而有違乎初限備納之期, 則先爲嚴拘, 後加猛杖矣, 千萬苦楚, 不勝冤痛.” 『承政院日記』 47책, 영조 14년(1738) 4월 17일: 「慶尙道咸昌 幼學孫景一 疏」.

146) “且其工匠之召致也, 輒以甘結知委, 所謂甘結者, 蓋於知委之文. 必以萬一遲緩, 甘罪不辭爲結語, 故稱之曰甘結. 此非呈牒也, 亦非通關也. 旣以此知委, 而見其遲緩, 不敢治罪, 則顧安用甘結爲哉? 凡有進排之役, 吏不聽令, 匠不赴召, 而若必往復於當該衙門, 請其懲治, 則如是之際, 國役之稽滯. 勢所必然, 而同朝敬待之節, 恐或不在此等之事矣.” 『承政院日記』 85책, 정조 9년(1785) 11월 9일: 「戶曹判書趙瑗疏」.

결을 통해 알리는데, 만약 기한을 넘겨 지체하면 그 책임을 묻는 문구를 마지막에 넣어 문책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으니, 적어도 정조대 쯤 가면 실제로는 그 결과에 문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아문끼리 공문을 먼저 주고받은 후에 물품을 수취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아문끼리 서로 양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배자와 관련한 내용이다.

“궁방에 圖署牌子가 있으니, 여러 아문의 印信과 더불어 혹 關牒하는 공무에 있어 크게 사용을 같이 않게 하는 곳이 있으니, 단지 柴穀을 재촉하거나 도장과 마름을 차정하고 체직시키는 것만 할 따름이다. 이 외는 곧,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반드시 내수사에 手本을 갖추어 올리고, 내수사에서 각각의 該曹에 다시 보고하고, 해조에서 각 도에 관을 보내는 것이 이전부터 법례임이 대략 이와 같다.”¹⁴⁷⁾

위 언급은 배자 중에서 궁방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날인한 배자에 대한 설명이다. 궁방의 도서배자는 柴穀을 거두는 것과 도장과 마름을 차정하고 체직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장이나 마름은 궁방전과 관련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신분으로 일반 관아의 아전이나 색리정도의 신분으로 보인다. 배자를 통해 이들을 임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조세를 징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배자가 가진 문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는 또 전령을 이해하는 것에도 유용한 사안인 것이다. 임명에 관한 사항은 후술하겠지만, 전령은 군임직과 관련이 있고, 배자는 속사의 유사를 임명할 때 사용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관서에서 사용하는 배자와 감결은 公事에 사용하는 공문과는 다른 속사에 편의적으로 발송하는 문서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을 행정문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문서의 내용은 지시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사용하는 감결과 배자의 주사용처는 관련한 공인들을 추촉하거나, 관련물품들을 수취하는 지시나 징표로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부서에서 사용하는 배자와 감결을 통해 외방관아에서 사

147) “宮房之有圖署牌子，與諸衙門印信，或關牒之製，大有不同用處，不過柴穀催促及導掌舍音差汰等事而已。外此，則毋論小大事，必具由手本於內需司，自內需司轉報於各該曹，自各該曹，行關於各道，自來法意，概如許矣。”『承政院日記』 83책, 정조 8년(1784) 3월 11일: 「備邊司粘連啓目」.

용하는 감결과 배자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관찰사가 수령에게 보내는 감결이 수령의 차사 배자와 같이 사람을 잡아오는 용도로 또한 쓰이고 있음은 이해되리라 본다. 민인추착이라는 용도는 감결과 배자가 가진 구조적인 성격에서 유래한 것도 있고, 아울러 관부문서가 가진 ‘異名同性’ 현상으로도 보인다. 관부문서가 가진 임명과 지시, 압송이라는 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발급자와 수취자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에서는 배자는 당상이 발급하는 것이고, 감결은 낭청에서 발급하였다. 그러나 외방에서는 감결은 관찰사가 수령에게 보내고, 배자는 수령이 장차에게 보내고 있다. 감결은 또한 수령이 민간에 보내기도 한다.¹⁴⁸⁾ 다음은 민인체포의 성격을 가진 배자와 감결의 예시이다.



148) “伏願殿下，另飭諸道道臣，列邑檢災，必使守令，躬自踏驗，從實詳報，自監營分俵災結於列邑時，一切公平，俾得均惠，仍令該邑守令，以道臣劃給之數，卽爲甘結民間，使大小民人，咸知朝家德意，以絕其掩匿消融之弊，不勝幸甚。” 『承政院日記』 74책, 영조 48년(1772) 9월 18일: 「掌令李師曾 疏」.

149) “傳令 栗於出使刑吏. 本面林重化崔永煥, 星火捉待者. 壬辰十二月十二日 官[職押] [押] [朱印: 寶城郡守之印]” 보성군수가 발급하고 울어출사형리가 수취자인 체포영장의 내용인 배자전령, 크기 29×26, 규장각.

150) “甘結 永同. 卽有查問事. 金店監官金興龜, 到甘卽刻, 定將羅, 罔夜捉上向事. 庚寅十一月初八日 兼使兼使[職押] [押] [朱印: 忠清道觀察使之印]” 충청도 관찰사겸순찰사 발급하고 영동현감이 수취자인 체포영장의 내용인 감결, 크기 32×36, 규장각.

위 사진에서 왼쪽은 전라도 보성군수가 栗於로 형리를 보내어 林重化와 崔永煥을 잡아서 대령하라는 배자이다. 보성군수가 발급한 체포영장인 셈이다. 오른쪽은 충청도 관찰사겸순찰사가 永同현감에게 보낸 金興龜를 잡아 보내라는 내용의 감결이다.¹⁵¹⁾ 문서의 내용을 보자면, 전령은 첫줄에 ‘傳令’이라 써놓았기에 이 문서가 전령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본 읍에 살고 있는 해당자의 이름을 쓰고, 이를 빨리 대령하라는 뜻의 ‘星火捉待’로 맺음을 하였다. 관압은 지방관을 뜻하는 ‘官’자를 휘필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수령이 발급하는 전령 중에서 민인을 잡아 대령시키라는 배자인 것이다. 반면 오른쪽 문서는 첫줄에 ‘甘結永同’이라 써놓았기에 문서명이 감결임을 알 수 있다. 영동은 수취자로서 영동현감을 말하므로, 충청도 관찰사가 영동현감에게 보낸 문서라는 것이다. 본문의 첫줄은 먼저 ‘조사하여 물을 일이 있다.’는 문서의 발급 목적을 적고, 이후 해당자에 대해 將羅를 정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잡아 올리라는 뜻의 ‘罔夜捉上’으로 마무리하였다. 관압은 관찰사가 순찰사를 겸직으로 할 때 쓰는 ‘兼使’를 휘필하였다.

위자료를 통해서 관찰사가 작성하는 감결과 지방 수령이 작성하는 전령의 배자가 체포영장이라는 동일한 성격으로 발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찰사의 체포권한과 수령의 체포권한을 실현하는 문서가 감결과 배자 전령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¹⁵²⁾ 두 문서가 가진 관부문서로서 실효적인

151)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체포영장으로 발급한 감결은 10여종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IV-6> 체포영장으로 발급한 감결 목록표(규장각 소장)

순번	연도	발신자	수취자	크기	내용
1	1890.11.8	忠淸道觀察使	永同縣監	32×36	金店監官 金興龜 捉上
2	1890.11.23	忠淸道觀察使	永同縣監	26×53	金店監官 金興龜 押上
3	1891.1.11	忠淸道觀察使	永同縣監	25×37	金店監官 金興龜 押付上使
4	병술.1.24	忠淸道觀察使	陰城縣監	29×54	營吏 崔養浩 知委起送
5	1890.12.4	忠淸道觀察使	黃澗縣監	29×38	成漢祚 移囚
6	무진.2.26	忠淸道觀察使	懷仁縣監	25×42	營吏 崔時默 星火起送
7	무진.3.26	忠淸道觀察使	懷仁縣監	24×37	營吏 崔時默 知委起送
8	1896.9.4	宣諭御史	金山郡守	30×53	官奴 鄭宿文 行商 黃先出伊 結縛捉上
9	1896.9.14	宣諭御史	金山郡守	29×82	該色監逋魁者 捉囚嚴查
10	1896.9.22	宣諭御史	金山郡守	30×33	沈順德 捉致 定校押上

152) 관부에서 발급한 것은 아니지만, 상전이 재실 노에게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배자가 있다. 이를 통해 보자면 배자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민인을 초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佳川齋奴白伊. 卽有詳細詰問事, 吉安市基頭民及市강귀及商人柳姓人, 眼同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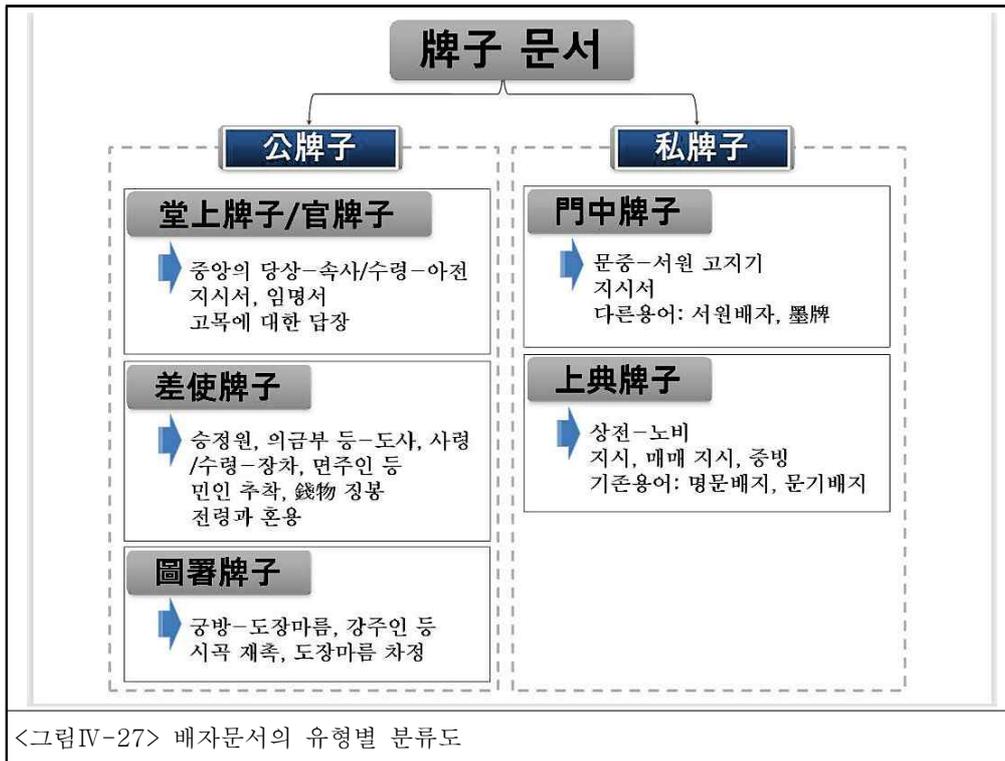
강도가 유사하다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기존에 배자에 대한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김혁은 배자가 完文의 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그 관련성을 언급하였다.¹⁵³⁾ 그는 명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배자 외에 또 다른 성격의 배자가 있는데,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들면서 이를 ‘官牌字’라고 명명하고, ‘패자는 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勿役 完文과 기능상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¹⁵⁴⁾ 그러나 목재일기의 기사를 살펴보면, 관패자라는 것은 바로 목사가 公兄, 鐵匠, 僧侶 등에게 지시하는 것과 공납을 거두라는 내용으로 주는 배자이다. 이는 신분적으로 존자가 천자에게 주는 배자이고, 목사가 발급한 것이므로 관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임란이전의 기록이므로, 전령과의 상관관계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전령과 배자의 연관성에 대해 학술적인 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박성호이다.¹⁵⁵⁾ 김혁의 논문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8건의 배자가 관배자의 좋은 예시가 된다면 이 전령과의 유사성에 면밀한 분석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말하는 관배자는 수령이 보내는 지시서인 배자가 아니라, 면주인 등에게 주는 민인 招致의 차사배자를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배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致爲可. 己丑臘月十四日 金溪金持平宅 [手決]”, 『고문서집성』 6, 5 명문문기류, 280쪽.
153) 金赫, 「조선시대 完文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04~105쪽.
154) 상전이 노비에게 발급한 배자 중에서 지시뿐만 아니라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婢命心處. 汝矣三所生癸亥生婢絶通身乙, 贖錢一百兩, 捧用是遣, 永爲贖身爲去乎, 日後持此文, 憑準事. 乙亥九月二十三日 上典金都事宅 [手決]”, 『고문서집성』 6, 5 명문문기류, 279쪽. 그러나 산송과 관련하여 수령이 발급하는 문서에 訴狀題辭, 傳令, 完文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으므로, 전령이 원문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보겠다.
155) 박성호, 「고문서 패자에 관한 고찰 : 패자의 유형과 성격 고찰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위의 도표는 문서로 발급한 배자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¹⁵⁶⁾ 배자는 크게 공공의 기관에서 사용하는가, 아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색의 관인을 날인하거나 그렇지 않은 백문배자에 따른 것이다. 공배자는 중앙정부의 당상이나 고을 수령이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지시를 하거나 임명을 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 차사배자는 차사에게 주는 것으로 물건이나 돈을 거두어 오도록 하거나, 민인을 추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도서배자는 궁방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이 또한 물건을 빨리 받아오도록 한 것과 도장과 마름을 차정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문중배자는 문중이나 양반이 서원의 고지기에 보내는 것으로 여러 지시를 하는 내용이다. 상전배자는 자기 집안의 노비에게 주는 것으로, 여러 지시를 하는 내용이고 간혹 증빙의 기능으로 사용한 사례도 보인다. 이들을 묶어본다면 배자라는 것

156) 한글로 작성한 배자를 분류하면서 그 하위분류로 ‘1. 토지방매 배자’, ‘2. 노비방매 배자’, ‘3. 공납 관련 배자 및 기타 분부 배자’로 한 경우도 있다. 이상규·강이경, 『한글 고목과 배자』, 도서출판 경진, 2013, 119~126쪽.

은 중앙관부나 외방의 수령에서 신분적으로 양반인 사람이 발급자가 되고, 수취자는 속사의 색리나 아전들 또는 노비로서 신분적으로 천한 데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시를 하는 것인데, 물전수취, 민인추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임명서로서도 사용하였는데, 이는 차접과 전령과는 다른 양식을 띠고 있다. 고을수령이 발급하는 배자는 전령과 구분하고 있지만, 간혹 혼용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민인을 추착하는 전령과 배자는 갑오경장을 거쳐 訓令과 指令으로 바뀌고, 또는 通知書, 呼出狀 등의 명칭으로 바뀐다. 소송에 대비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두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배자의 문서 용도를 살펴봄으로서 전령과의 관계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2) 직임에 임명

(1) 軍職任에 차정하는 辭令狀

軍職任에 차정하는 전령은 이정일에 의해 발급범위와 문서의 형식이라는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유지영에 의해 차접과 전령의 구분을 시도한 연구 성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군직에 차정하는 차접과 전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점이 불명확하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기준에 성과물에서 언급하지 못한 차정배자의 존재도 아울러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관직에 임명하는 문서로서 교지로 일컫는 1~4품의 문·무관원에게 주는 官敎, 5~9품의 문·무관원에게 주는 敎牒, 7품 이하에게 주는 差帖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외방에서 병영의 장이나 관찰사, 또는 수령이 임명하는 차접과 전령이 있고,¹⁵⁷⁾ 중앙과 외방의 관서에서 천인에게 부여하는 배자형식의 임명장이 있다.

조선시대 군제는 皆兵制로서 이에 다시 戶와 保로 나누었는데, 호는 군역에 직접 종사하는 正軍 혹은 番上兵이고, 보는 정군의 입역에 물자를 통해 생활

157)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1쪽 참고.

을 보조해주는 보조책임자로서 2인이 1보로 구성한다. 이들은 1朔 2匹의 保布를 지급해주었다.¹⁵⁸⁾ 고문서에서 이들에게 부여하는 임명을 차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그 용어의 다중적인 의미에 주의해야 한다. 조선시대 戶長을 차정한다는 것은 그 ‘身分’과 ‘職任’, ‘職役’이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는 지적은,¹⁵⁹⁾ 전령으로 차정하는 관직에 있어도 주의를 기우려 봐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즉 군직에 차정한다는 말은 조선시대 官階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직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인 관직의 직역인 軍役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군직으로 발급하는 전령은 둘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관부에 소속된 군관청의 군졸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들은 중앙의 병조 같은 각 아문이나 외방의 관아에 소속한 軍廳에 필요한 군관이나 군졸에 대해 관부의 장이 발급하는 전령을 말한다. 이러한 전령은 문서에 ‘本曹’, ‘本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발신자의 직압도 관부의 장을 대변하는 ‘府使’, ‘牧使’, ‘縣監’ 등을 사용한다. 둘째로 중앙의 오군영이나 외방의 각 군영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군직에 대해 임명하는 형태로 군영의 대장이나 외방의 군영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문서에서는 ‘本廳’, ‘本營’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발신자의 직압은 ‘大將’, ‘節度使’, ‘防禦使’ 등의 군영의 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군직에 임명하는 전령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전령을 발급받은 동일인에 대한 임명敎旨, 차접, 전령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도 유용한 방법으로 본다. 임명교지라는 것은 자품이 1~4품에게 주는 고신을 말한다. 군직이라는 것은 고위 資品의 직임과 하위 품계의 직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고위직은 주로 자품만 수여받고 실질적인 직임이 없을 경우 군직을 부여받는 경우이다. 이를 無祿職이라 하였는데, 俸祿이 없으므로 체아직을 부여하여 산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자품이 낮거나 잡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군직은 職任보다는 오히려 職役을 부여하였다는 사례는, 이응엽의 경우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58) 車文燮,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381쪽.

159) “호장·기관·의생·율생·공생·서원·통인 등은 향리 ‘身分’에게 부과된 ‘役’, 즉 鄉役이면서 동시에 직임 명칭이다. 다시 말해 호장 등의 용어에는 신분과 직역, 직임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羅善河, 「조선 후기 羅州 鄉吏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13쪽.

<표IV-7> 이응엽이 받은 전령의 군직 목록표

순번	연도	월	발신자	신분	임명직
1	1791	12	兼防禦使	閑良	本營 牙兵哨官
2	1792	6	兼防禦使	閑良	本營 前哨哨官
3	1792	9	兼防禦使	閑良	本營 馬兵哨官
4	1793	9	行使	閑良	本府 軍器監官
5	1794	1	行使	閑良	本府 補蔘兵房
6	1794	1	兼防禦使	閑良	本營 旗鼓官
7	1794	9	兼防禦使	閑良	本營 中部左司把摠
8	1797	2	行府使	閑良	本府 案付勸武軍官
9	1797	8	兼防禦使	閑良	本營 馬兵哨官
10	1797	12	行使	閑良	本府 軍器監官
11	1798	1	兼防禦使	閑良	本營 旗鼓官
12	1799	3	兼防禦使	閑良	本營 別武別將
13	1803	윤2	試所	出身	今春 增廣武科差備官
14	1803	3	試所	出身	今春等 都試時差備官
15	1804	4	行府使	出身	本府 補蔘兵房
16	1806	8	兼防禦使	出身	本營 馬兵別將
17	1807	11	兼防禦使	出身	本營 中部千摠
18	1808	3	行使	出身	今春等 都試時首差備官
19	1808	8	行使	出身	今秋等 都試時首差備
20	1808	10	大將	出身	留營將 自望
21	1810	4	上試所	出身	今春等 都試時首差備官
22	1810	12	兼防禦使	出身	本府 補蔘兵房
23	1811	3	兼防禦使	出身	本營 旗牌官
24	1811	윤3	行使	出身	本府 軍器監官
25	1811	5	兼防禦使	出身	本營 中部千摠
26	1811	8	行府使	出身	本府 補蔘兵房
27	1816	8	上試所	出身	今秋等 都試時差備官
28	1816	8	行使	出身	本府 軍器監官
29	1817	2	兼防禦使	出身	本營 防營兵房
30	1820	8	關東兵馬防禦使	出身	本營 知穀官
31	1820	12	行使	出身	本府 軍器監官
32	1821	3	關東兵馬防禦使	出身	本營 防營兵房
33	1821	3	關東兵馬防禦使	出身	本營 旗鼓官
34	1822	윤3	行使	出身	本府 補蔘兵房
35	1822	6	兼官	出身	本營 馬兵別將

위의 표는 철원부에서 이응엽에게 발급한 전령을 모두 정리해본 것이다. 이응엽에게 발급한 실물전령은 총 35건으로 무관급제를 하기전인 한량부터 급제한 후의 출신까지를 모두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4번에 철원부의 軍器監官을 역임하였는데, 10번에서 4년만에 다시 군기감관을 역임하고, 24번처럼 무과에 급제해도 다시 군기감관을 역임하며, 이후 28번 31번과 같이 4~5년

상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 補蓼兵房, 旗鼓官 같은 직책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지, 교첩으로 임명받는 직임과는 다르게 전령으로 발급받는 군직은 군역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군직은 資品과는 큰 상관이 없이 역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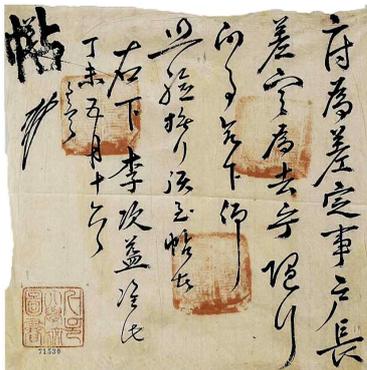
외방의 군직은 어떠한 직에 ‘差下’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중앙군영인 오군영에서 발급한 전령은 ‘啓下’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계하는 병조에서 국왕에게 임명과 관련하여 결재를 받아 군직에 임명한다는 의미이다. 차하는 발급하는 군영장이나 수령의 직권에 의해 발급하므로 단지 직임에 차정한다는 의미인 차하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군영에서 발급한 전령에 계하를 써 넣는 관행은 영조 때 생긴 변화로 보인다.

“守禦廳 장관 24원 안에서 19원은 京廳에 있고, 5원은 山城에 있는데, 경청은 啓下로 차출하나, 산성은 전령으로 차출한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등용할 때 산성의 근무자는 銓曹에서 鄉將官을 대하듯 하니, 수습하지 않은 것이 많다. …(중략)… 지금부터는 산성장관은 일체 계하하고 또 산성민호도 천여 호를 더 증가한다.”¹⁶⁰⁾

이는 수어청 장관에 대한 도성과 남한산성의 근무자에 대한 임명방식의 차이를 언급한 대목으로 보인다. 도성은 계하를 하여 임명하지만, 산성에 근무자에게는 전령으로 임명을 하니, 그 위계를 아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차서 도성에 들어오면, 병조에서는 향촌에 있는 관원과 같이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산성에서 근무한 장관도 계하로 차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가 1729년으로, 현재 실물로 남아 있는 수어사 전령은 규장각의 1770년 원후진에게 발급한 것이 남아 있고, 오군영에서 발급한 것이라도 제일 빠른 것이 1751년 금위영에서 원중희에게 발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실물 전령을 통해 확인할 길은 없다.

160) “守禦廳將官二十四員內, 十九員在京廳, 五員在山城, 而京廳則啓下差出, 山城則傳令差出. 故久勤收用時, 山城則銓曹視若鄉將官, 多不收拾, 故, 左議政李台佐, 爲守禦使時, 請以山城將官, 通京廳計仕收用, 而京廳將官, 猶以渠則啓下, 彼則傳令, 不欲通廳, 今後則山城將官, 一體啓下, 且山城民戶, 曾過千餘戶.” 『承政院日記』 693책, 영조 5년(1729) 8월 23일.

외방에서 발급하는 전령을 차접과 배자의 상호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철원부에서 발급한 임명서들일 것이다.

<p>㉠ 전령 (1838, 관동병마방 어사-李吉憲 방어영 旗牌官 차정)161)</p>	
<p>㉡ 차접 (1847, 철원부사-李 次益 戶長 차정)162)</p>	
<p>㉢ 배자 (1840, 철원부사-李 次益 吏房 차정)163)</p>	
<p><그림IV-28> 차정하는 전령, 차접, 배자의 문서유형 비교</p>	

161) “傳令 閑良李吉憲. 本營旗牌官差定為去乎, 到傳令, 即為來現者. 戊戌五月 日 關東兵馬 防禦使[職押] [押]” 규장각, 고문서 전령, 크기 32×49cm.

162) “府為差定事. 戶長差定為去乎, 隨行向事,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右下李次益准此.”

위 사진에서 ㉠은 1838년에 關東兵馬防禦使가 李吉憲을 방어영의 기패관에 차정한 전령이다. 이길헌과 관련한 문서는 이 외에 3건이 더 있다. 1844, 1846, 1851년에 배자의 형식으로 발급한 문서로, 모두 철원부사겸방어사가 방어영의 營吏에 차정한 것이다.

㉡은 1847년에 철원부사가 李次益을 戶長에 임명한 차접이다. 이차익의 문서도 모두 3건이 있는데, 나머지 두 건은 1836, 1840년에 吏房에 차정하는 배자이다. 이방과 호장은 향임 중에서 가장 요직으로, 이방은 六房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로 읍리들을 통솔해야 하던 首吏였다. 이방과 호장의 차출은 吏廳의 의논을 거쳐 능력과 이력이 풍부한 자를 천망하였다. 조선전기에는 호장을 수리로 하는 호장 중심이었다가, 17세기 후반부터 이방의 권능이 강화되어, 19세기 이후부터는 이방이 수리가 되는 이방중심체제였다.¹⁶⁴⁾ 이방과 호장은 번갈아 맡고 있으며, 향리 중에서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맡기도 한다.

㉢은 바로 이차익을 이방에 차정하는 배자이다. 문서의 형식 자체가 전령도 아니고, 차접의 형식을 띤 것도 아니다. 문서의 첫 구절이 ‘汝矣身乙’이라는 형식으로 보면, 배자와 유사하므로 이를 차정배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정배자는 중앙아문의 당상이나 궁방에서 도장과 마름을 임명하고 물전을 독납하는 문서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호장은 備望에 의해 절차를 거쳐 차정하였지만, 이방은 철원부사의 직권에 의해 편의적으로 차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방과 호장의 중요도로 본다면 당연히 차접으로 발급해야 한다.¹⁶⁵⁾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 철원부의 호장과 이방의 역할에 대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 정도로 추정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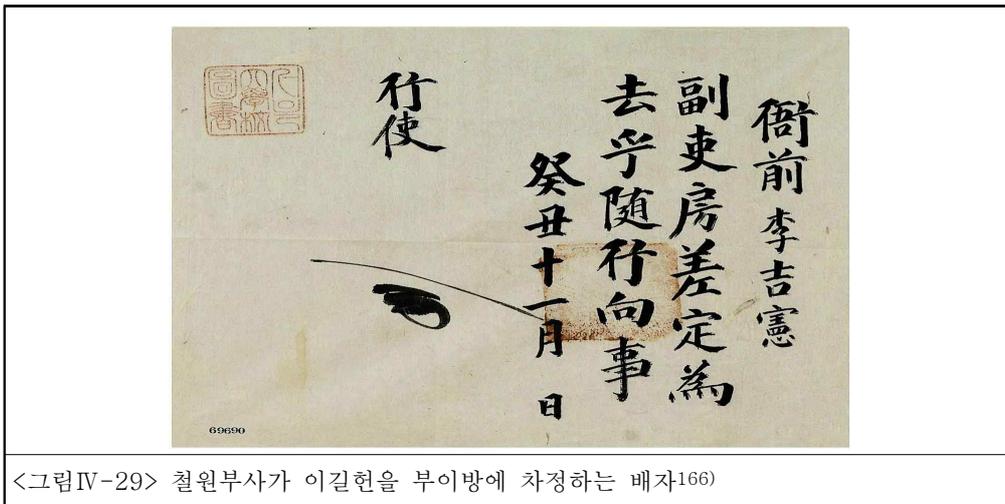
그리고 이방과 부이방을 임명할 때 차정하는 문서가 배자라는 점이다. 위의 이차익 배자는 배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아예 전령과 유사한 배자도 발견된다.

丁未五月十六日 差定 帖[墨印] 行府使[職押] [押]” 규장각, 고문서 차접, 크기 32×32cm.

163) “衙前李次益. 汝矣身乙, 在官吏房, 差定爲去乎, 不輕對答向事. 庚子正月初九日 使[職押] [押]” 규장각, 고문서 차접, 크기 31×23cm.

164) 李義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研究」,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141~150쪽, 육방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165쪽 참조.

165) 이에 대해 유지영의 논문에서 예를 든 『최승희 서울대명예교수 소장 조선시대 고문서』의 鄉吏 卞泰年의 이방 차접을 들 수 있겠다.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191쪽 <도V-10> 참고.



<그림IV-29> 철원부사가 이길헌을 부이방에 차정하는 배자¹⁶⁶⁾

위 사진은 이길헌을 부이방에 차정하는 배자이다. 첩과 관련한 양식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차접은 아니다. 본문은 전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군임직에 임명하는 전령은 분명한 양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시 전령에 대한 별다른 양식은 있을 수 없다. 양식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차사배자와 유사한 면모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차정배자’로 봐야 할 것이다.¹⁶⁷⁾ 배자는 위 ㉔의 이차의 배자의 양식과 같은 것이 있고, 이길헌 배자의 양식이 있으며, 아예 차접의 형식을 빌어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서 보자면 배자는 하나의 고정된 형식이 아닌 몇 가지 유형 속에서 다양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강원도 철원부에서 발급하는 전령과 차접, 배자는 관아의 직임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규장각에 소장한 전령, 차접, 배자의 실문서를 모두 살펴봤을 때, 차접은 호장, 감관, 면장, 면사수, 제헌관에게 발급하였다. 그리고 관아의 아전인 이방, 부이방, 영리를 차정할 때는 배자로 하고 있었다. 군임직도 차접으로 발급하지만, 철원부의 경우만 살펴본다면 군직은 모두 전령으로 차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철원부에서 발급한 전령, 차접, 배자 60여건의 직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66) 규장각, 고문서, 차접, 크기 32×37cm.

167) 관찬사료의 차정배자에 대한 기록은 인조 때 나온다. “禁府, 金光煥公事差祭命帖, 及 監官差定牌子, 取來稟裁, 啓. 傳曰, 允.” 『承政院日記』 1책, 인조 5년(1627) 8월 19일: 「義禁府에서 金光煥의 祭官과 監官의 차정에 대해 재결을 청하는 계」.

<표IV-8> 강원도 철원부에서 발급한 문서형태와 임명 직역 분류표

직함	전령	차접	배자
府使 직함 발급	本府軍器監官 / 本府補參兵房 / 本府案 付勸武軍官 / 增廣武科差備官 / 春等都 試時差備官 / 春等都試時首差備官	戶長 / 還案看檢都監 / 稿饋監官 / 面長 / 面 社首 / 厲祭獻官	吏房 / 副吏房
兼防禦使 직함 발급	本營牙兵哨官 / 本營前哨哨官 / 本營馬 兵哨官 / 本營旗鼓官 / 本營旗牌官 / 本 營知穀官 / 本營中部左司把摠 / 本營中 部千摠 / 本營別武別將 / 本營馬兵別將 / 本府補參兵房 / 本營防營兵房 / 留營將		本營營吏

『고문서집성』 110책에 수록된, 제주도의 於道 지역의 진주 강씨 집안에 보
관하고 있는 전령은 한 집안의 인물들과 관련하여 일괄로 남아있기에 학술적
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전령과 관련하여 임명으로 발급한 전령의
수량이 60건이며 행정지시 전령이 70건이 남아 있다. 또 姜受璜
(1607~1688)을 비롯하여 姜時揚(1719~1801)까지 남아 있는 차접과 전령은
두 문서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보아진다.

강씨 집안의 차접과 전령을 주의 깊게 볼 점은 군직에 대한 임명이 차접으
로 하다가 어느 순간 군직은 전령으로, 좌수와 별감의 직책은 모두 차접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IV-9> 제주도 문서의 전령과 차접으로 임명한 군직 목록표

계열	전령으로 임명한 군직	차접으로 임명한 군직
將, 監 계열	東城將, 州南城將, 南城將兼五所首監, 南城將差 定兼差三所首監, 北城將, 留營將, 右馬隊別將, 左馬隊別將, 大將所陪行領將, 陪行領將, 中步營 領將, 彼人宴餉時鎗手右領將, 迎逢上船將	
과총, 친 총 계열	左部左司把摠, 右部右司把摠, 中部右司把摠, 右 部千摠, 中部千摠, 後部千摠	右部千摠, 左部千摠
조방장	涯月所助防將, 朝天館所助防將, 朝天鎮助防將, 明月所助防將	明月助防將, 遮歸所兼助防 將, 別防所助防將, 涯月所 助防將
초관 관	右部左司左哨官, 右部左司右哨官, 中部左司左哨 官	中司後哨官, 右司前哨官, 武學後哨官
官	教鍊官, 軍器監官, 待變軍官	
馬監	一所馬監, 一所望前馬監, 三所望後馬監, 三四所	大一所馬監, 五所場馬監

	踏驗監官, 四所首馬監, 四所望後馬監, 五所首馬監, 六所望前馬監, 軍器外監	
가솔	營下待率假率, 待變假率	
행수	執事行首	

위의 표를 보면 전령으로 임명하는 군직을 차접으로 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강씨 집안의 문서를 모두 살펴보면 1635년부터 1796년까지 46건의 차접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 군직을 임명한 것은 초반의 8건이다. 그중에 1635년에 제주목사행절제사가 강수황한테 발급한 증사후초관의 차접부터 1717년 姜汝敏(1669~1729)을 오소장마감에 임명하는 차접을 마지막으로 이후부터는 風憲, 座首, 別監, 祭獻官, 警民長에 임명하는 차접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1717년을 기점으로 좌수와 별감은 차접으로 임명하고 군직에 대해서는 전령으로 발급하는 체제변화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한 원인은 군직에 대한 임명담당이 향리청에서 무임청으로 이양하여 군권의 강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임명장으로서 차접과 전령의 차이는 姜時揚(1719~1801)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강시양은 1769년부터 전령과 관련한 문서가 남아 있어 임명장으로 발급한 전령을 파악할 수 있는데 좋은 사례이다. 우선 강시양에게 발급한 문서를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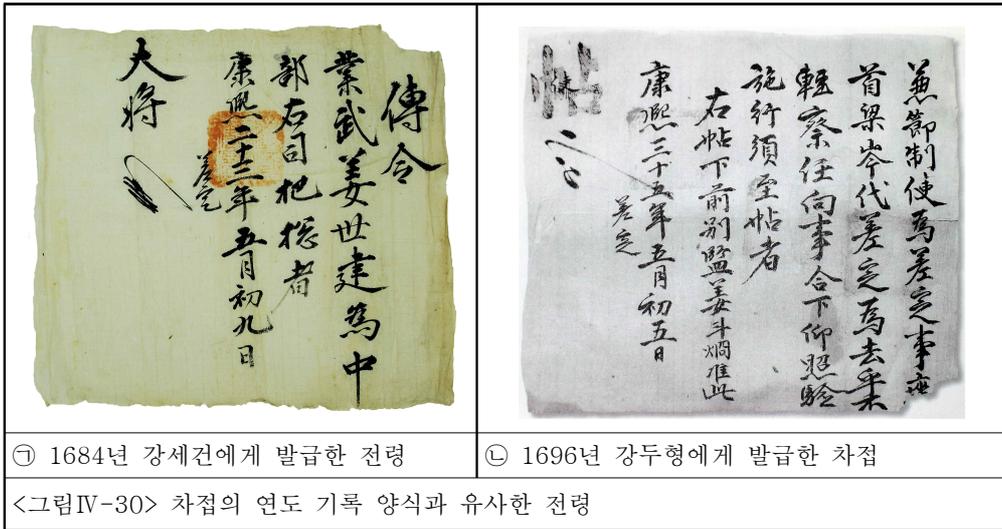
<표IV-10> 강시양과 관련한 문서 목록표

순번	연도	문서	내용	발급자	비고
1	1769. 6. 26	차접	좌수 임명	제주목사겸절제사	
2	1769. 7. 4	전령	留營將 임명	제주목사겸절제사	
3	1769. 10. 12	소지	좌수 改差 청원(불허)	강시양	제주목관관
4	1769. 10. 12	소지	좌수 개차 청원(불허)	강시양	제주목사겸절제사
5	1770. 6. 14	차접	신우면 풍헌 임명	제주목사겸절제사	
6	1770. 11. 22	전령	배행영장	제주목사겸절제사	
7	1771. 2. 10	전령	조천관조방장	제주목사겸절제사	
8	1772. 8. 16	소지	조방장 개차 청원(허락)	강시양	제주목사겸절제사
9	1772. 8. 17	차접	좌수 임명	제주목사겸절제사	
10	1772. 8. 17	첩정	좌수 차접 보냄	戶長	

1769년에 강시양은 濟州牧使兼節制使로부터 좌수로 임명받는다. 이 해 7월에 留營將을 임명받는데 전령으로 받았다. 이에 대해 여러 병으로 좌수직에 대해 改差를 요구하는 소지를 올린다. 먼저 濟州牧判官한테 올려 허락을 받지 못하자, 다시 같은 날 상급관청인 제주목사겸절제사한테 소지를 또 올린다. 이것도 허락을 받지 못해 직임을 유지하다가, 다음해 신우면 풍헌과 조천관조방장을 해마다 임명받았다. 그 다음해에 조천관조방장을 개차해달라는 소지를 올려 병세와 그 업무의 과함을 인정받아 개차를 허락받는다. 다음날 다시 좌수로 임명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호장이 좌수한테 보내는 첩정이 남아있다.

위 표에서 주목해 볼 점은 1772년에 발급받은 차접에 대해서 같은 날 호장이 좌수에게 보내는 첩정이 있다는 점이다. 강시양이 좌수로 임명받은 차접을 監封하여 임명받은 당사자에게 올려 보낸다는 내용이다. 즉 차접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정식적인 관부의 문서 행정에 따라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차접을 발급하려면 먼저 망기를 통해 직임에 적합한 자를 택해야 한다. 이후 정식 임명장인 차접을 발급하고 첩정을 통해 그 전달을 하는 관부문서의 행정 속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¹⁶⁸⁾ 풍헌과 좌수 등은 모두 전령이 아닌 차접으로 발급함을 여타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강씨 문중과 관련하여 첩정 8건이 남아 있는데, 이는 모두 좌수로 임명된 것에 대해 차접을 봉인해서 보낸다는 내용이다.

168) 이에 대한 것은 유지영 논문에 祭官을 차정함에 좌수가 첩정으로 비망하고, 다음 제관을 차정하는 차접과 禮房에서 고목을 올릴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43쪽 참고.



위의 사진과 같이 전령의 형태가 차접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곳이 있다. 연도에서 ‘康熙’라는 대연호를 쓴다는 점과 傍書로 ‘差定’이라고 쓰고 있는 점은 비록 전령의 형태라도 차접과 유사한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문서의 글씨가 유사한 점으로 보아 동일인의 서리에 의해 작성되어 그 양식이 착종된 것으로 본다. 이는 향청이 향리와 군정 인사행정을 함께 다룬 결과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직임과 직역에 차정하는 문서가 차접인만큼, 군직도 차접으로 발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접은 인사행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전령은 군사직에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절차도 軍籍을 파악하고 군졸을 직역에 차정하는 간소한 절차속에서 진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수취자의 신분에서 향리의 차정과 군졸의 차정은 구별되는 영역이다. 이와 함께 이들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업무는 이청과 장청의 분화 여부에 따라 전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그에 따라 문서의 형식도 좌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對民 告示

향촌에서 수령이 대민에게 通知, 曉諭, 申飭, 矯弊, 頒布와 같은 사항을 전하는 용도로 고시하는 전령을 사용하였다. 향촌의 임장들이 이를 대로변의 벽에다가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한 것이다. 즉 고시하는 전령은 관문서로서 행정적인 행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 효시할 내용을 가지고 관문서를 직접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서 그 효력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특색을 가진다고 보겠다. 여러 사료들에서는 ‘出榜告示’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榜文을 내어 대중에게 고시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령은 수령이 國政과 官府의 입장을 민인에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향촌의 규약 공시와 국가의 법령 반포에 고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방문은 또한 전란에 있어 군문의 대장이 대민 안정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령을 고시로 사용하는 형태는 諭示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등록으로 기록한 곳에서는 ‘諭~榜’으로 해 놓았다. 그러므로 그 용어에 있어 傳令, 榜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告示는 주로 갑오개혁 이후에 다량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고시는 민간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후에 문서명으로 고착한 경우라 하겠다.

중국에서는 榜이 軍民들에게 효시하는 문서로서¹⁶⁹⁾, 그 출현은 魏晉시기부터라고 한다. 唐宋시기에는 그 종류가 분화하여 절도사가 처음 임명받을 때 관내의 민인들에게 효유하는 ‘布政榜’이¹⁷⁰⁾ 있으며, 관부에서 백성들에게 포고하는 ‘榜帖’, ‘安民榜’이¹⁷¹⁾ 있다고 한다. 송나라 때에는 구황과 흉민의 용도로, 또는 백성들에게 권장하거나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것에 ‘勸曉榜’을 사용하였는데, 朱熹의 《勸立社倉榜》, 《洞學榜》이 있다고 한다. 또 송대에 방과 매우 유사한 문서로 ‘曉示’가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포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¹⁷²⁾

향촌의 고을수령은 守令七事¹⁷³⁾에 의해 민인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를

169) “‘榜’是古代帝王·官府·將帥公開張貼, 曉諭軍民的公文文種.” 胡元德, 「古代公文文體流變述論」,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89쪽.

170) “唐宋時, 榜文有多種用途: 節度使初任命, 用榜書出示曉諭管內官吏·軍人·僧道·百姓, 稱爲‘布政榜.’” 위의 논문 89쪽.

171) “宋朝時用于救荒恤民, 勸誡百姓或用于保護文化古蹟, 用‘勸諭榜’ 如朱熹《勸立社倉榜》, 《洞學榜》.” 위의 논문 90쪽.

172) “宋代還有一種與榜極相似的文體, 稱作‘曉示’, 是官府布告百姓時使用的一種張貼文種, 如《廣元條法事類》記載: “內外官司事應眾知者, 用此式.” “曉示”的書寫格式是: “某司某事云云, 右云, 曉示云云者. 年月日書字.”” 위의 논문 90쪽.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로는 국왕이 전하는 敎示와 율령을 백성들에게 잘 전포하고, 아래로는 민인들의 풍습을 교화하는 것에 힘쓰며, 아울러 생업에 관련한 실질적인 농업, 부역, 송사, 교육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했다. 또한 조선의 법전인 『대전회통』에 기록된 방문은 ‘일체의 條章과 禁令은 서울은 漢城府에서, 地方은 여러 고을에서 榜을 붙여 널리 告示한다.’는¹⁷⁴⁾ 규정도 실려 있어 방문이 가진 역할이 중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령이 향촌의 임장에게 보내는 전령은 바로 행정적인 지시와 아울러 효유라는 정사를 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인간이 우매함을 깨우치고 누구나 성인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유학의 가르침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중국 남송의 朱熹(1130~1200)가 1178년 知南康軍事를 맡으면서 작성한 公移문장을 추송하였다.¹⁷⁵⁾ 『周禮』에 정월 초하루에 太宰가 왕명을 반포하는 것이 방문의 효시가 된다고 한다.¹⁷⁶⁾ 그래서 연행록 등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중국에서 출방고시하는 기록이 많이 보이며, 그리고 주희의 공이에 의해 조선에서 더욱 추송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茶山筆談》에 말하길, ‘요즈음 사람들이 朱子의 글을 읽음에, 오직 주자의 편지를 취해서 性理의 실을 보고 한 구절을 따서 對策에 쓰려고 할 뿐이요, 주자 학문

173) 수령칠사는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이다. 『經國大典』의 吏典 考課條에 실려 있다.

174) 『大典會通』, 卷3, 禮典 雜令.

175) 『朱子大全』의 99권과 100권은 朱熹가 南康軍을 맡았을 때 수수한 공문서로서, 흔히 朱子 公移, 南康故事라고 불린다. 그 내용은 군민들에게 여러 효유하는 내용으로 보낸 방문과 효유문들이다. 전체 건수는 99권에 29건, 100권에 12건으로 총 41건이 있다. 다음은 그 목록이다. 99권: 知南康榜文, 又牒, 白鹿洞牒, 示俗, 曉諭兄弟爭財產事, 準律, 勸農文, 勸農文, 勸諭築埂岸, 勸諭救荒, 曉諭逃移民戶, 減木炭錢曉諭, 夏稅牌由, 受納秋苗曉諭, 減秋苗, 曉示人戶送納秋苗, 曉示科賣民戶麴引及抑勒打酒, 約束科差夫役, 約束差公人及朱鈔事, 社倉事目(勅命并跋語附), 勸立社倉榜, 約束侵占田業榜, 約束不得騷擾保正等榜, 減半賞格榜, 約束糶米及劫掠榜, 再放苗米分數榜, 約束檢早, 浙東客次榜, 除秦檜祠移文. 100권: 州縣官牒, 漳州曉諭詞訟榜, 曉諭居喪持服遵禮律事, 勸女道還俗榜, 揭示古靈先生勸諭文, 勸諭榜, 曉示經界差甲頭榜, 勸農文, 龍巖縣勸諭榜, 潭州委教授措置巖麓書院牒, 約束榜, 看定文案申狀式, 報建陽縣審會船狀.

176) “鄭玄曰, 正月周之正月, 大宰以正月朔日, 布王治之事於天下, 至正歲, 又書而縣于象魏, 振木鐸以徇之. 小宰亦率其屬而往觀, 皆所以重治法新王事也. 正歲謂夏之正月, 得四時之正, 以出教令者, 審也. 古者, 將有新令, 必奮木鐸以警衆, 使明聽也. 文事奮木鐸, 武事奮金鐸.” “丘濬曰, 象魏卽雉門兩觀也, 縣於象魏, 卽後世張掛榜文之制也. 『中庸九經衍義』 別卷, 一之三.

의 출처가 모두 <公移>의 여러 편에 있는 줄은 모른다. 무릇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주자의 <公移>를 취해서 책상 위에 두고 때때로 외고 읽어 모범으로 삼아 짓는다면 俗吏가 됨은 면할 것이다.”¹⁷⁷⁾

주희가 지은 朱書는 좋은 명문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만 차용하여 대책문을 짓는 것보다는, 백성을 다스리고 효유하는 측면에서는 주희의 공이문이 더욱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지방사자료총서』의 『公移占錄』은 효유하는 방문만을 모아놓았으니, 그 의도에 있어 수궁이 가는 바이다.¹⁷⁸⁾ 『공이점록』은 서울, 경기도, 경상도, 평안도의 여러 방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술의 폐단을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곡식을 문드려 없애고 농사를 상하게 함을 오히려 여사로 여긴다. 가장 심한 것이 살인을 하는 것이니,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죄는 漢法三章의 용서할 수 없는 것인 즉,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는 두려움은 인정에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지만, 술이 한 번 입에 들어가면 본성이 모두 없어지고 의기는 가득차고 호건한 언어는 두 배나 많아진다. 혹 이전의 악감정을 드러내고, 혹은 당장의 싸움 단서를 만들어 처음에는 입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먹다짐으로 번지니, 자기의 성명을 이미 돌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사를 어느 때 걱정하겠는가? …(중략)… 官家가 도입한지 세 달도 안되었는데, 구타하면서 서로 소송하고 가둔 이가 이미 대여섯 사람이나 되니,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술이 원인이 된 때가 아닌적이 없다. 바야흐로 관가에서 명령을 내려 거듭 엄하게 하려고 할 적에, 이 酒禁을 신칙하는 營門의 關文이 마침내 도착하니, 더욱 한 터럭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본 읍은 영문과 거리가 백 리로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 읍촌에 큰 술도가 있는 이번 달 30일 이전에는 명령을 내리기 이전의 술로 여겨 기한 내에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3월 1일 이후부터는 만약 금지를 어기고 술을 빚는 무류가 있다면 하나같이 영문의 관칙에 의해 시행할 것이다. 이로서 알리고 각 坊里에 모든 사람이 함께 알도록 하며, 큰 술도를 일일이 조사해내어 가까운 곳은 이번 달 20일에, 먼 곳은 이번 달 22일 내에 정책을 만들어 보고하여 증거로 삼도록 할 것이다. 이로서

177) “《茶山筆談》云, ‘今人讀朱書, 唯就書牘, 觀性理之說, 冀摘一句, 用於對策, 不知朱子學問施發處, 都在於<公移>諸篇. 凡爲牧者, 宜取朱子<公移>, 置之案上, 時時誦讀, 以作模楷, 其免爲俗吏矣.’” 『牧民心書』卷三, 奉公六條, ○文報.

178) 『공이점록』에 실린 문서는 4책을 제외한 방문과 절목의 건수는 1권 17건, 2권 20건, 3권 10건으로 모두 47건이 기록되어 있다.

전령을 보내니, 사창, 시장, 각 방리, 도회의 통하는 큰 길에 두루 붙이고, 사람을 불러모아 전령의 뜻을 상세히 효유하여 한 사람도 알지 못하거나 잘못 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거행한 형지를 먼저 첩보할 것.”¹⁷⁹⁾

위의 방문은 술을 빚는 것을 단속하는 酒禁에 대한 방문이다. 고을 수령이 부임하면 의례적으로 국가의 정책인 酒禁·牛禁·松禁이라는 三禁정책에 대해 효유하고 신칙을 하는 내용으로 전령을 보낸다.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라서 정약용은 오히려 이를 보내지 말라고 하고 있다.¹⁸⁰⁾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외방고을에 민인들을 효유하는 것은 비록 방문의 형식을 가지더라도, 수령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전령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령의 官습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해석하여 전령의 형태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公移占錄』의 실려있는 방문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표IV-11> 『공이점록』에 있는 榜의 내용별 분류표

방의 분류	내용	건수
금단하는 내용의 방	禁酒榜(1권), 申禁酗酒榜(1), 禁私屠榜(1), 禁豕畜侵害民田榜(1), 禁監色科外濫捧榜(3), 禁納還前私穀出境榜(3), 諭坊里檢束子弟區處流丐榜(1).	7
향교 유생에게 유시하는 방	諭校宮榜(3), 諭校宮諸生榜(1), 諭校院諸生榜(2), 諭境內諸生榜(2), 諭鄉會諸人榜(2), 諭三齋選擇儒任榜(1), 謫罰犯科西齋生榜(2), 期會白日場榜(2).	8
무신에게 발급하는 방	諭將廳選擇武任榜(1), 諭將吏二廳榜(2), 在京諭鄉將二廳榜(2), 申嚴將校守直榜(2), 旗牌官金巡周加料榜(1).	5
민인에게 주는	諭陽川境內民人榜(1), 諭安邊境內民人榜(2), 驅逐優婆男女榜(2),	6

179) “酒之爲弊，可勝言哉！糜穀傷農，猶屬餘事。最是殺人者，死傷人者，抵罪漢法三章之所不容貸，則惡死畏罪，人情卽然，而酒一入口，本性都喪，意氣則十分，豪健言語，則一倍支煩。或追理已往之嫌隙，或惹起卽地之鬧端，始以口舌而相爭，終焉拳踢之交加，自己性命，已自不顧，他人死生，何暇慮及。…(중략)… 官家到任，未滿三朔，而毆打相訟，辜限囚禁，已至五六人之多，細察根由，則罔非酒爲之祟也。方欲自官，發令申嚴，此禁矣，營門飭關，際此而至，尤不容一毫弛忽。本邑距營門百里，乃是近邑也，邑村大讓家，今月晦日以前，則屬之令前已釀之酒，許令限內散賣。自三月初一日以後，如有冒禁犯釀之類，一依營關施行，以此知悉爲旴。各坊里內，衆所共知，大釀家一一查出，近坊今月二十日，遠坊今月二十二日內，修成冊報來，以爲憑處之地，以此傳令，遍揭于倉底場市及各坊里都會通廣處，轉相招集，詳諭旨意，俾無一民不知誤犯之弊爲旴，舉行形止，爲先牒報。” 『公移占錄』 卷之一，「禁酒榜」， 이영훈 외 편, 『韓國地方史資料叢書』, 「報牒篇」 제7책, 여강출판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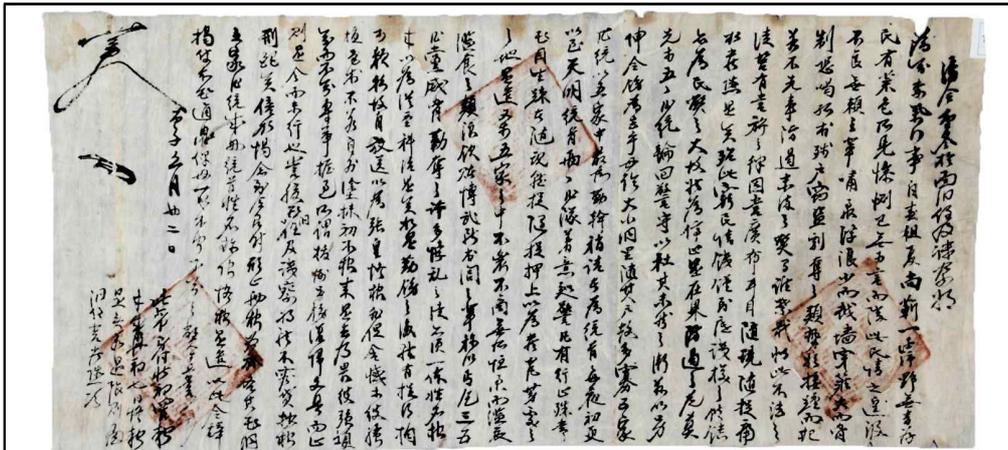
180) “新官莅任，例有牛·酒·松三禁，申嚴之令，此文具也，宜勿之。” 『牧民心書』 卷一，赴任六條，○莅事.

방	勸諭農民榜(2), 諭楊花濂滄兩里缸民榜(1), 諭南山站尊位釋王寺僧徒榜(2).	
개인에게 유시하는 방	諭仙游峯里民宋才石等榜(1), 諭麻浦民李文尙榜(1), 諭永豐民李培修榜(2), 存問永豐百歲人李論山榜(2).	4
폐단을 고지하는 방	詢瘼求言榜(3), 罷春賣徵浮穀榜(3), 還政畫一榜(3), 申令徵逋榜(3), 決山堡隄訟榜(3), 補民庫矯弊榜(3).	6
약속하는 형태의 방	約束各廳榜(3), 約束坊里催趨公納榜(1), 約束還民榜(2).	3
여러 지시를 하는 방	修砧基簿榜(1), 修治道路橋梁榜(1), 別賑日口諭(1), 安集災民榜(2), 飭修弩穿榜(2), 豁除流來剩穀榜(2), 查減巫稅紬絲榜(2), 蕩滅下道社掛欠還穀榜(2).	8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여러 사안에 대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 술과 도살, 쌀을 지역을 넘어가서 함부로 파는 것등을 금지하는 것과 향교에게 보내는 것, 마을의 여러 시설을 수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낸 것이 많이 있다. 특히 개인에게 보내는 것도 있음은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관원을 도와준 것에 대해 돈을 지급하라는 것, 민인을 구타한 것에 대해 피의자를 숨겨준 것을 엄벌하겠다는 것, 胎豬값을 주지않고 관령을 듣지 않는 자를 잡아와서 징벌하겠다는 것, 부부가 함께 백세가 넘도록 산 것에 대해 그 안부를 묻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령이 민가의 공동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를 마을 전체에게 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방은 행정지시서의 관념보다는 당시적인 현황에 통지하고 마을의 풍습을 교화한다는 측면에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수령의 대민 교유는 1년에 네 번으로 나누어 풍헌을 통해 정기적으로 훈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속을 교화하려는 의도에서 언문으로 만들어 전하기도 하였다.¹⁸¹⁾ 풍헌과 집강이 맡은 직무가 민간의 풍습을 교화하고 신칙시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면임이 풍헌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수령은 전령을 풍헌이나 면임에게 보내어 민가에 떠돌아다니는 동냥배들을 단속하도록 하였다. 그 사례를 보겠다.

181) “四孟朔，風憲來謁時，回付教諭民俗文(一件諺書)，使知善之可行，惡之可去，每每申諭，無令怠忽，以爲勸懲趨避之地。”「百里鏡」，561쪽.



<그림 IV-31> 진주목사가 발급한 부랑배의 단속건으로 고시하라는 전령182)

위의 사진은 晉州牧使가 金冬於面의 면임과 동임, 譏察將에게 발급한, 부랑배들을 단속하기 위해 五家作統을 시행하니, 그 명단을 적어보내며, 아울러 면의 사방에 통하는 벽에다가 붙여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고 고시하는 전령이다. 수령이 발급하는 계방고시의 전령은 우선 효유와 신칙이라는 내용으로 발급하는 만큼 문장에 있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주요 요건이다. 그래서 전령의 내용이 긴 것이 다수이다. 상부의 지시를 전하는 고시전령은 첨부 문서로 인해 형태적인 모습에서 당장알 수 있지만, 수령이 자체적으로 효유하

182) “傳令 金冬於面洞任及譏察將. 爲知委舉行事. 自春徂夏, 尙薪一霏, 野無青草, 民有彩色, 所見慘惻, 已無可言. 而際此民情之違汲, 不良無賴之輩, 嘯聚浮浪, 少而越牆穿籬, 大而脅制恐喝, 孤村殘戶, 竊盜剽奪之類, 勢將接踵而起, 若不先事防遏末流之弊, 有誰禁戢. 似此不法之徒, 誓有當施之律, 固當廣布耳目, 隨現隨捉, 痛加嚴懲是矣. 殆此窮民情, 饑饉到底, 譏校之供饋, 亦爲民弊之大故, 姑爲停止是在果, 防遏之道, 莫先於五五作統, 輪回警守, 以杜其未然之漸. 茲以另伸令飭爲去乎, 毋論大小洞里, 隨其戶數多寡, 五家作統, 以五家中, 最爲勤幹稱詰者, 爲統首, 每夜初更, 以至天明, 統首兩兩作隊, 着意巡警. 凡有行止殊常, 面目生疎者, 隨現就捉, 隨捉押上, 以爲嚴究勤處之之地是遣. 又於五家之中, 不農不商, 無所恒業, 而濫衣濫食之類, 浪飲賭博, 武斷村閭之輩, 稱以丐乞, 三五作黨, 威脅勒奪之許多, 悖難之徒, 亦須一体姓名報來, 以爲從重科治是矣. 如是勤飭之後, 雖有捉得, 拘於顏私, 故自放送, 以爲張皇修報, 非但含憾, 於彼騷擅, 邑村不若, 自外塗抹, 初不報來是去乃, 畏彼強項, 知而不知, 專事握過, 所謂拔例另飭, 復歸文具而止, 則是令而未行也. 當駭面洞任及譏察將, 斷不容貸, 抄報刑配矣. 倍加惕念, 到令即時, 形止馳報爲旃. 各其面洞, 五家作統成冊, 統首姓名, 趁限修報是遣, 以此令辭, 揭付本面通衢, 俾毋一民不聞不知之弊, 宜當事. 丙子六月初二日牧使[職押] [押] 此亦中, 到付狀初四日, 報來成冊初七日, 修報是矣, 若過限, 則面洞任, 當嚴懲次.” 크기 27×57. 『고문서집성 57 -진주 운문 진양하씨편-』, 한국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245~246쪽.

는 고시전령은 문장의 길이를 보거나, 아님 전체를 보아야 알 수가 있다. 그 특징은 문장의 말미에 위의 경우처럼 ‘이 官令의 말을 본면의 통하는 거리에 붙여 하나의 백성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以此令辭, 揭付本面通衢, 俾毋一民不聞不知之弊)’이라고 적어 놓는다는 것이다. 수령이 효유하는 고시전령은 면리의 현안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삼는다. 그 중에는 민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이해와 민가의 풍기를 단속하고 강화시키는 신칙의 내용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민고시 전령은 한편으로 중요한 향촌의 규약이나 법령을 공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령의 후록에 그 내용을 절목의 형태로 해서 발급하기도 한다.

조선은 국왕이 대궐의 경사가 있거나, 시국적으로 선포할 일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綸音을 반포하였다. 중앙정부의 공문을 받은 외방의 관찰사는 감결을 수령에게 보내고, 외방의 수령은 이를 받아 대민고시를 하였다. 이에 대한 의의를 정약용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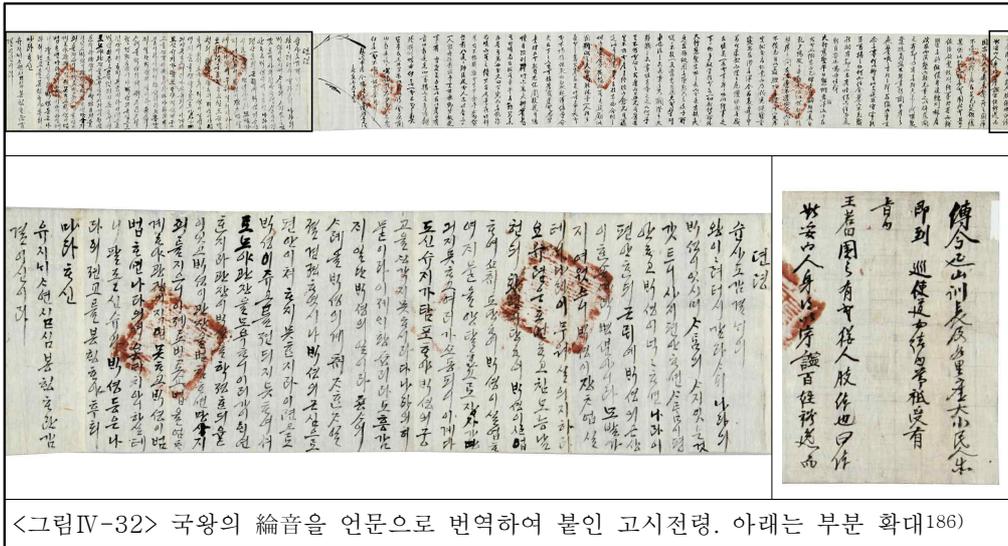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이에 교문을 반포한다. 임금의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세자(世子)가 태어난다든지, 임금이 특히 장수한다든지, 혹은 嘉禮가 거행된다든지 하면 이에 교문을 반포하고 인하여 사면(赦免)을 선포한다. 다만 駢儷體로 수식을 일삼는 글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령은 마땅히 경사의 본 의미를 쉽게 서술하여 따로 유지하는 글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모두 같이 경하하도록 해야 한다. 혹시 도적을 평정하고 반역자를 처단한 일로 경하할 경우에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¹⁸³⁾

국왕이 백성들에게 윤음을 내리는 것은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과 소통한다는 목적보다는 우민한 백성을 깨우치게 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 아울러 국가의 중대사를 알리고 세곡이나 환곡의 탕감을 통해 민생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반포하는 것이다. 국왕의 윤음은 민인들이 모두 잘 알아야 하므로 애초에 순한글로 된 윤음을 동반하여 발송한다.

전령에 사용하는 문자는 순한문, 이두가 섞인 吏文, 순한글이 있다. 국한문 혼용으로 사용한 것은 갑오개혁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다. 전령 고시는 이 모든 문자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그 목적은 한문에 무지한 민인들마저 국정의

183) 『牧民心書』 卷一, 赴任 六條, ○莅事.

내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한 배려에 있다. 그러므로 국왕이 발급하는 敎諭書와 관찰사가 보내는 감결, 수령이 보내는 하체와¹⁸⁴⁾ 전령까지 대민에게 직접적으로 고시하는 공문들은 언문으로 번역을 하게끔 요구하였다. 양반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한 것이 한문인데, 이와 함께 서리들이 작성한 문장도 眞書라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전령에 자주 등장하는 眞諺翻騰은 이 진서로 작성한 것과 함께 순한글인 諺文으로 번등하여 동시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언번등한 전령을 사용하는 목적은 정보공유의 범국민성과 긴요성¹⁸⁵⁾에 있겠다. 조선시대에 양반 이외의 한문에 무지한 하위계층이나 부녀자들을 愚民이라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효유할 때는 언문을 사용한 것이다. 한문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를 일부 계층이 한정적인 범위에서 공유하지만, 하위계층마저 능한 문자를 사용한다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매스매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당대의 현안에 대해 널리 반포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184) “溫和. 見諺文下帖曰.” 구상덕, 『勝聰明錄』, 무신년(1728), 2월 2일 기사.

185) “傳令曉諭民間之事, 若緊要, 則以諺文傳令, 帖連眞書傳令, 使愚民洞知之.” 『牧民攷』,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344쪽.

186) 인장을 판독하면 ‘○○郡守之印’이고 첫 글자는 ‘金’으로 보인다. 전라도에 전주목에 金馬郡이 있으므로 金馬郡守로 봐야하겠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여기서는 편의상 금마군

위 사진은 金馬郡守가 延山訓長과 각 마을의 민인들에게 국왕의 전교를 전한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고시전령이다. 국왕의 전교 내용은 백성들이 官長을 모함하고 침범하니,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전령의 앞은 한문으로 적혀 있고, 뒤에 순한글로 번등한 것을 접련해 놓았다. 한문으로 된 부분에서 행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국왕의 전교를 승정원의 승지가 有旨로 관찰사에게 보냈다. 관찰사는 이 유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금마군수에게 감결로 보냈다. 금마군수는 앞의 내용과 함께 다시 순한글로 번등하여 연산훈장에게 전령으로 발급한 것이다. 그 구성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p>㉠ 卽到 巡使道甘結內</p> <p>-----</p> <p>㉡ [節祇受有旨內 ㉢“王若曰~~卿其祇受事” 有旨教是乎等以 茲以發甘 有旨內辭意 悉心對揚 亦卽眞諺翻謄 揭付坊曲 俾無一民不知之弊 宜當者]</p> <p>-----</p> <p>㉣ 亦爲有等以 茲以傳令 原關內辭意 這這曉諭於大小民人等處 俾無一民不知之地宜當向事</p> <p>㉤ 此亦中傳令揭付通衢壁上次</p> <p>[번역]</p> <p>㉠ 이번에 접수된 순사도의 감결에</p> <p>㉡ [이번에 공손히 받은 유지에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 경은 공손히 받으라” 라는 유지 이였기 때문에 이에 감결을 보내니, 유지내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널리 알리고, 또한 즉시 진언번등하고 방곡에 게시하여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p> <p>㉣ 이라는 하졌기에 이에 전령을 보내니 원관내의 말씀을 낱낱이 대소민인에게 효유하여 한 사람도 알지 못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일.</p> <p>㉤ 추신: 여기에 전령을 사통하는 거리의 벽에다가 게시할 것.</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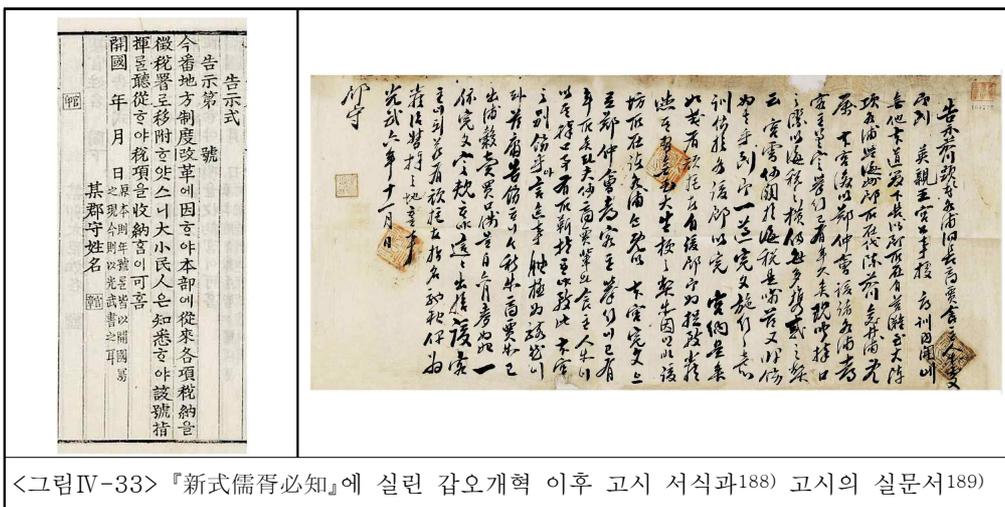
위는 국왕의 유지는 제외하고 전령의 내용만 본 것이다. ㉠은 금마군수가 받은 전라도 관찰사겸순찰사의 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은 순찰사가 받았다는 승정원의 유지를 받고 금마군수에게 보낸다는 내용이다. 순찰사의 감결에 다시 ㉢처럼 국왕의 전교를 적어놓았다. 이후에 다시 금마군수가 보내는 전령의 결사를 적었다. ㉤은 추신으로 강조할 내용이 있을 때 다시 당부하는

수로 보겠다. 크기 18.5×208. 『고문서집성 75 -남원·구례 삭녕최씨편(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80~85쪽.

것을 적어놓았다.

이와 같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령이 민인들에게 반포하는 전령은 이전에 받은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수령이 상부의 지시문을 의거문서로 사용하여 그대로 전하면, 상관의 위신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뢰와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뒤에는 순한글로 번등을 하여 점련해 놓았다. 그 내용의 뒷부분을 보면 “빅성등은 나라의 전교를 봉형하야 후회마라하신 유지너스연 실심봉형하란 감결이신이다.”라 하였으니, 이는 순찰사의 감결을 적어놓은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전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순찰사의 감결을 수령이 진언 번등한 것이다. 이는 후록으로 첨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보인다.

조선의 공문서는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추진된 갑오개혁에 의해 그 관리와 규식이 변하였다. 또 1895년에 『공문류별급식양』에 ‘민간 傳令과 揭榜 등을 폐지하고 告示로 개칭’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고시로 하였다. 그러나 실물서를 살펴보면, 이 이후에는 오히려 전령, 훈령, 고시 등 더 다양한 명칭으로 혼재하여 발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⁷⁾ 그 양식에 있어도 1901년 『新式儒胥必知』에 고시의 서식이 실려 있다.



<그림 IV-33> 『新式儒胥必知』에 실린 갑오개혁 이후 고시 서식과¹⁸⁸⁾ 고시의 실문서¹⁸⁹⁾

187) 김봉좌의 논문 294쪽 <표 2> 참조. 김봉좌, 「조선후기 傳令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제61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3.

위 사진처럼 고시의 서식이 있으나, 실물서를 살펴보면 오히려 여러 형식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방의 수령이 발급하는 공문서가 아직까지 단일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결론하여 보면 외방 수령이 대민에게 고시하는 전령은 전령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 있고, 방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 있었다. 수령의 관령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이 다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시의 내용은 국왕은 왕실의 대소사나, 시국적인 사안, 법령의 공포에 대한 사안으로 대민반포를 하였다. 수령은 세금과 민간의 풍습을 규찰하고 신칙시킬 때 또는 여러 행정적인 사안으로 민인들에게 알릴 때 전령으로 고시하였다.

조선의 고시는 통지, 효유, 반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고시는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실정법상 성질도 함유한 것으로 보고, 條文형식을 띤 고시는 행정처분, 사실행위, 행정처분,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입장에서 녹아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⁰⁾

3. 하달문서 關, 下帖, 甘結, 牌子와 비교

관문서로서 전령의 문서 행이체계와 관련하여 그 논의를 해본다면, 외방관

188) 1901년에 愼村子(黃泌秀, 1808~1874)가 간행한 것으로, 갑오개혁 이후 바뀐 공문서식을 수록한 책이다. 『新式儒胥必知』, 규장각 소장, 一叢古 351.1-H991s.

189) “告示 茄川頭民各浦洞長商賈食主人等處. 即到_英親王宮公事據, _府訓內開에, 無他, 本道管下長淵郡所在, 自苔灘至大陳項, 各浦與海州郡所在, 代陳茄川交井浦, 既屬_本宮後, 以鄭仲會該諸各浦都客主差定舉行, 已有年久矣. 現聞捧口之際, 以海稅之橫侵, 每多携貳之弊云. _宮需何關於海稅是喻, 茲又牌飭爲去乎, 到即一遵完文施行之意, 訓飭於各該郡, 以完_宮納是矣. 如或有頑拒者, 自該郡, 即爲捉致, 嚴懲其習, 無至大生梗之弊等因인마, 該坊所在, 諸各浦는, 既以_本宮完文으로, 鄭仲會都客主舉行이, 已有年所矣라. 夫何商賈輩와, 食主人等이, 以其捧口事, 有所靳持호야, 致此_本宮之別飭乎야. 言念事體, 極爲駭然이라. 茲庸告飭호니, 今秋等商賈等, 已出浦穀賣買口錢을, 自六月麥爲始, 一依完文定規호야, 這這出給該客主이되, 若有頑拒者, 指名馳報, 俾爲嚴治督捧之地호事. 光武六年十一月 日 郡守 [朱印: 海州郡守之章] [朱印: 海州郡印]” 1902년 해주군수가 발급한 고시. 크기 35×76. 7권, 규장각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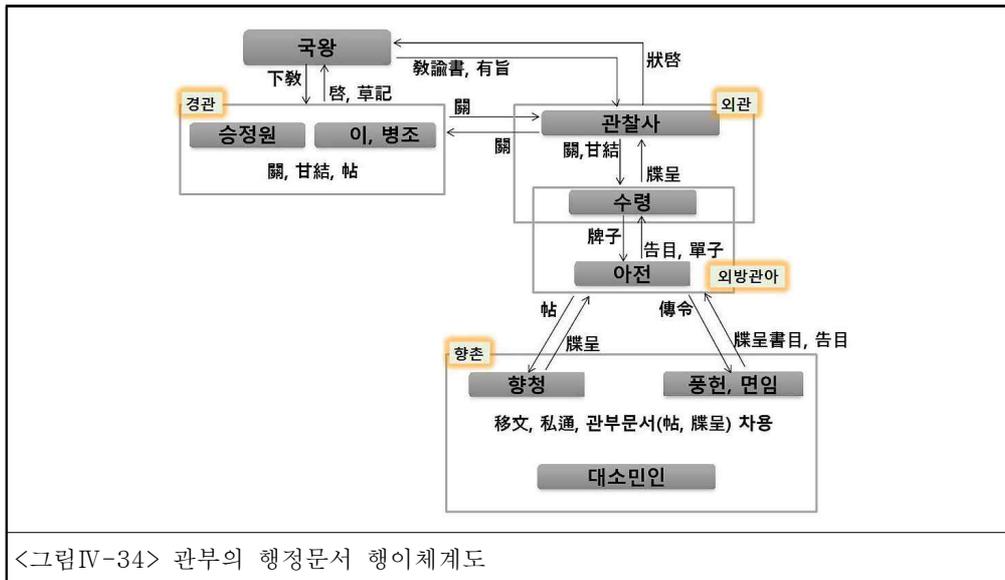
190) 金重權, 「[行政法] 行政法上の 告示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고시계』, 53(2), 51~54쪽 참고.

아에서 발급하는 행정문서로서 전령의 행이체계는 그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선시대 관부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문서 행이체계는 중국의 것을 본받으면서도 형식을 간략화 시킨 특색을 가진다. 중국의 황제에 대해 조선의 국왕은 2품 아문으로 규정하여 이에 준해 중국에 보내는 문서의 형식체계를 맞추었고, 조선 관부의 문서 행이도 이에 맞추었다.

조선의 관문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문제는, 조선 관부문서의 행이체계는 중국의 것을 모방한 만큼 중국관부의 행이체계와 상관성, 조선의 행정부서인 각 衙門과 屬司의 구조, 규정과 달리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관, 감결, 첩을 가지고 전령과 관련한 문제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조선시대 법전에서는 관서뿐만 아니라 군영의 체제를 京官과 外官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당시대 사람들의 관부를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시작점일 것이다.

관부의 행정문서 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경관, 외관, 향촌으로 나누고, 외관에 다시 官屬들이 수수하는 문서가 있으므로 외관관속을 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경관은 궁궐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서로서, 행정적으로 육조를 비롯한 수많은 관부가 있고, 중앙군영도 오군영을 중심으로 12군영이 존재한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행정교류 문서는 關, 甘結, 帖이 있다.¹⁹¹⁾ 또 이 문서는 외방과 행정사안을 처리할 때도 사용하는데 그 형식과 내용을 조금씩 달리한다. 외방은 또한 외방의 관원끼리 관, 감결, 첩을 사용한다. 외방이 향촌의 행정실무자와 문서교류를 하는데 있어 첩과 전령을 사용하며, 향촌은 자체적으로 이문, 사통이란 문서를 사용한다. 이는 모두 평행하거나 하달하는 문서군에 대한 내용이다. 상달하는 문서로는 啓, 牒呈과 書目, 告目, 單子가 핵심적인 문서군으로 볼 수 있겠다.

191) 이에 대한 연구물은 문보미, 「조선시대 關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尹仁洙, 「朝鮮時代 甘結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宋哲鎬,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재우,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체계적 이해」, 『고문서연구』 제36호, 2010, 219~228쪽을 들 수 있다.



위의 도표는 조선시대 관부의 문서 행이체계 속에서 전령의 위치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 속에서 외방관아의 수령은 향청과 향교 등에게는 하체로 여러 사안에 대해 지시를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과거시험에 관한 일자를 알리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통보이며, 또는 향사와 관련한 의견 조율이다. 그런 반면 향촌의 잡무로 여기지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풍헌과 면인이라는 실무인을 배치하여, 전령으로 지시와 명령을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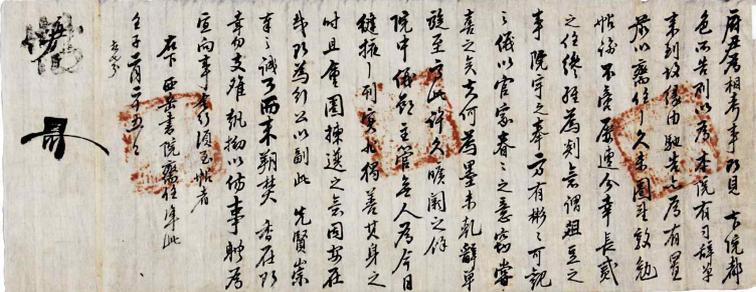
하달문서로서 관, 감결, 하체는 각 아문의 품계와 해당 관장의 자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큰 구분점일 것이다. 관은 품계가 1~6품의 아문에서 하달하거나 평행하는 문서로 사용한다. 또 첩은 7~9품인 참서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이다. 각 품계마다 사용하는 문서가 있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별도로 다스렸다. 이들 문서는 중국의 문서식을 차용한 관부 행정의 정식 문서인데 반해, 감결과 전령은 속사에 사용하는 복잡하지 않은 행정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행정문서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들 문서의 구분처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IV-12> 하달문서의 사용처와 내용 비교표

문서명	사용처의 구분	내용
관	1~6품의 衙門 하달 및 평행.	행정지시.
하체	7~9품의 屬司, 외방의 州郡司.	첩은 7~9품의 임명장, 증빙기능 문서 /하체는 행정지시서, 고시.
감결	중앙아문의 속사와 외방의 관아 속사.	행정지시, 고시.
전령	외방 관찰사 및 수령의 속사, 군영 대장.	군직의 임명장, 행정지시, 고시.
배자	중앙관부 당상, 궁방, 수령, 양반 등의 신분적으로 존자가 천인에게 발급.	지시, 임명, 표신, 증빙.

이들 문서가 행정문서로 사용할 때는 행정사안에 대한 지시서로서 사용한다. 그 중에 帖과 牌는 신표와 증빙문서로서 별도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외에 관문을 비롯한 문서에서 증빙과 임명, 압송 등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는 그 기능을 하기 보다는 행정문서로서 이들에 대한 행정적인 사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¹⁹²⁾

192) 이에 대한 문서는, 국왕의 교서에 대한 승정원의 有旨, 밀부유서에 대한 符節, 공명첩에 대한 小帖, 급마 유지에 대한 給馬帖, 추착하는 내용의 관 감결 전령에 대한 牌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p>㉠ 관 (1890, 병조-경상도관찰사)193)</p>	
<p>㉡ 하체 (1852?, 경주부윤-西岳書院齋任)194)</p>	
<p>㉢ 감결 (1802, 관찰사-固城縣監)195)</p>	
<p>㉣ 전령 (나주목사-元井風憲)196)</p>	
<p><그림III-11> 관부의 하달문서 문서형태 비교</p>	

위의 사진은 관부하달 문서인 관, 하체, 감결, 전령의 문서형태적인 모습을

193) 『고문서집성 97 -동래정씨 동래부원군 정난중종택편-』, 크기 53.7×68.5cm.

194) 『고문서집성 66 -경주 옥산 여주이씨 장산서원·치암종택편-』, 크기 23.5×57.5cm.

195) 『고문서집성 57 -진주 운문 진양하씨편-』, 크기 40×82cm.

196) 『고문서집성 67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크기 24.5×40.5cm.

비교한 것이다. 위의 사진처럼 형태적인 모습만 본다면, 관과 첩이 유사하고, 전령은 감결과 유사한 면이 많다. 우선 관과 첩을 먼저 살펴보자면, 두 문서는 모두 마지막에 분명한 투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관은 ‘右關+수신자’라는 수신처를 정형화하여 사용하고 職押한 위에다가 關자 목인을 날인하였다. 하체를 보면 이와 유사하게 ‘右下+수신자+準此’라고 수신처를 적고 다시 관압을 한 위에다가 ‘帖’자 목인을 날인하였다. 관과 하체에서 정형화된 수발신자의 기입처는 감결과 전령과의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다.

시면과 기두어를 확인하면 또한 관과 하체가 유사하고, 전령은 감결과 유사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시면에 아무 문서명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관과 하체이고, 전령은 감결과 함께 문서명과 아울러 그 아래 수신처를 기입하고 있다. 관과 하체는 문서 처음에 발신자를 적고, 문서의 마지막에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신처를 적고 있다. 반면에 감결과 전령은 문서의 첫 부분에 수신처를 적고, 문서의 마지막에 발신자의 직함을 휘필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것이다. 이는 형태적인 모습이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 추론해 보자면, 관과 하체는 대등한 아문끼리 주고받는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결과 전령은 아문내의 屬司에 주는 문서이므로 정식적인 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부의 행정문서로서 정식적인 규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관과 하첩, 첩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관은 원래 3품 이하의 아문에서 사용하던 것이지만, 조선에서는 1~6품인 고품의 관아에서 평행하거나 하행하는 문서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관은 중앙아문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는 외방의 監司에게 보내는 행정문서로 사용하였다. 외방의 감사는 품계가 종2품이고 외방의 수령이라 하더라도 종6품인 참서관이므로, 사실상 京外를 막론하고 모두 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난 중앙의 각사에서 외방의 수령에게 바로 보내는 直關은 금지시키고 있다. 외방의 관찰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직관하는 것은 관찰사에 대한 위계를 흐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료들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외방에 직관으로 상당히 발급했을 것으로 본다.

관과 첩은 모두 그 용도가 행정문서로서 사용하였다. 차정하는 용도로 발급

한 관과 첩은 사실을 직임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임명에 대해서는 차접과 전령, 배자로서만 하였고, 그 양식은 분명하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V. 결 론

이상으로 조선시대 문서로 작성한 ‘傳令’을 문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령의 문서사적인 의의를 기술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조선 건국 이후에 관부의 공문서 체제는 중국의 『홍무예제』를 따랐다. 이후 조선에 실정에 맞게 간소화하면서 동등 이하는 關, 그 이상에게 올리는 것은 牒呈, 7품 이하에게는 帖을 사용하여 관서의 품계를 기준으로 관과 첩정, 첩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명나라의 照會, 咨呈, 平咨 등은 사용하지 않고, 筭付, 呈狀, 故牒 등도 잠시 사용하다가 『경국대전』 체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문서 체제의 간소화는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평가는 받지만,¹⁹⁷⁾ 차츰 관부의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그 위계성에 따라 따질 것이 많아지게 된다. 또 공문처리를 절차대로 시행하면 속도에 걸림돌이 생겨 지체를 가져온다. 그래서 공문의 체제가 신속성을 중심으로 편의적인 방식들을 사용하고,¹⁹⁸⁾ 이로인한 공문의 절차를 건너뛰는 폐해도 생긴다. 그 편의적인 방식에서 사용의 확대를 가져온 문서가 감결이나 배자와 같은 종류이다.

중앙관부의 상황과 같이 외방의 상황도 유사한 면모를 가진다. 특히 품계의 위계성에 따라 6품까지 關文을 사용해야 함에도, 감영에서는 각 고을의 수령에게 감결로 문서행정을 펼친다. 각 고을의 수령도 면리의 임장들에게 전령이란 문서를 통해 행정지시를 내린다. 儒學의 이념을 추구하는 조선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문인에 대한 우대와 함께 儒學적인 학풍을 중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고 효제충신이라는 관념을 사회에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각 고을 수령들은 이런 유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민인들을 우매한 자식을 깨우치는 것처럼 효유하고 달래었다. 즉 고을

197) 박재우, 「公文書의 官印 研究 -禮式에 따른 官印 체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226쪽.

198) “凡有進排之役, 吏不聽令, 匠不赴召, 而若必往復於當該衙門, 請其懲治, 則如是之際, 國役之稽滯. 勢所必然, 而同朝敬待之節, 恐或不在於此等之事矣.” 『承政院日記』 85책, 정조 9년(1785) 11월 9일: 「戶曹判書趙琰疏」.

수령이 사용한 전령은 한편으로는 민인들을 효유하여 깨우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입장들에게 행정적인 사안을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수령이 사용한 전령은 여타의 청원서의 題辭, 下帖, 完文, 節目과 아울러 수령의 대민정치를 살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선시대 군영의 전령은 군장이 내리는 각종 命令, 通報, 曉諭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급하므로 전령은 군률에 의해 발급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군법에 따라 처리하는 엄중성이라는 성격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문서는 행정적인 문서가 아닌 적에게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비밀을 요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공문과는 대별되는 문서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와 함께 외방 고을의 수령이 발급하는 전령은 군영의 문서가 갖는 엄정성을 가지고 관부의 행정문서로 사용한 것이다. 즉 각 고을 수령이 입장들에게 ‘官令’이란 명목으로 편의적인 행정체제를 구사하며 향촌을 효유하고 행정실무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조선후기 정조에 의해 전령 문서는 위상이 격상하는 변화를 맞는다. 전령은 군의 명령을 부하장수에게 내리는 것과 수령이 입장들에게 강력한 시행령으로 내린다는 것으로, 신분적으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편의적으로 지시하여 부린다는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儒者과 관련한 이들에게 전령으로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체모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¹⁹⁹⁾ 그러나 정조는 군왕의 군부통솔권을 사용하여 친위군인 별군직과 장용영에 관한 지시와 임명에 대해서 전령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비록 무관이라 하더라도, 당상관에 해당하는 직책이므로 정식적인 임명서를 발급해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왕이 사용하는 문서인 敎書와 諭書, 有旨를 사용하여 군부에 공문을 보내는 상시적인 행정체계가 있다. 이것은 결국 상시적인 행정체계에 견준다면, 국왕과 관련한 공문제도에 있어 과격을 이룬 것으로 볼수 있다. 이는 당시 정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정조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 본다.²⁰⁰⁾

결국 전령은 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로서, 군영에서 명령을 전하는 군사문서가 고을수령이 면리의 입장들에게 보내는 행정문서로 문서용도의 확장을 가져오고, 국왕의 친위부대에 대한 지시와 임명으로 사용하여 문서의 위

199) “當依朱子南康故事，或曰申諭，或曰下帖，傳令二字，切勿用於文字間者。” 「山中問答」上，「雜著」，崔興璧『蠹窩先生文集』卷之六，549쪽.

200) 裴祐晟，「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韓國史論』24권，1991，255쪽.

상이 승격하였으니, 이것이 조선시대 전령이 갖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령은 배자와 감결과 함께 공용 행정문서로 사용하였지만, 공식적인 공문서인 관문과 첩과는 다시 구별된다. 전령은 정식적인 행정문서와 아울러 즉각적인 거행을 요구하는 문서로서, 조선시대 전시대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국왕과 수령의 대민정책을 펼치는 문서라는 점들이 조선시대 전령이 갖는 문서사적인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전령에 대한 연구는 관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의 내용을 살펴본 연구물이 없는 실정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전령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실물자료 총 800여건과 등록으로 기록한 1,000여건을 가지고, 전령의 성격별분류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전령의 행정체계와 문서식, 문서유형별 분류, 유형별에 따른 전령의 내용이라는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본고의 II장에서는 전령의 가진 성격을 여타의 자료를 통해 도출해 내고, 조선시대의 전령에 대해 통시적인 입장에서 고찰을 해보았다. 정약용은 배자와 전령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또 1895년에 발표한 「공문류별급식양」의 조항에 의하면, 전령은 명령을 전하는 것과 고시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었다. 『장용영대절목』의 「문첩」에는 대장이하를 새로 제수할 때와 내외영에 분부할 때 전령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수령의 捕權을 설명하면서 차사를 보내는데 이 때 답인한 전령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보자면, 전령은 命令, 軍職任命, 差使牌子, 對民告示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형화 할 수 있었다.

김중청의 언급을 통해 임진왜란 때부터 이미 수령이 관하의 임장들에게 전령을 발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직에 대한 전령의 임명은 선조를 시작으로 인조 때 오군영이 확립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정조는 별군직과 장용영에 지시와 임명을 전령으로 하였고, 또 1794년부터 1798년까지 화성축조에 대한 건은 『화성성역의궤』에 남아 있고, 1790년 4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내린 전령이 『수원부지령등록』에 등록으로 실려 있다. 정조가 친위군에 전령을 발급한 것은 그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특별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국왕이 별군직에 임명한 전령은 『어제친막제명첩』의 기록을 통해 효종 때부터 시작하였음을 추증할 수 있었다.

공문서의 제도와 양식에 있어 일대 변혁을 이룬 것은 1894년 공시한 「각부각아문통행규칙」과 1895년에 발표한 「공문류별급식양」이다. 전령에 대한 모든 명칭을 훈령과 고시로 단일화시킨다. 이후 10년간 계속 전령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가, 모두 사라진 것은 그 원인이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Ⅲ장에서는 전령을 발급하는 행이체계와 전령의 문서식을 살펴보았다. 전령은 ① 起案, ② 成帖, ③ 轉達의 과정을 거치며, 전령을 받은 입장들은 ④ 回報를 하였는데, 이때 첩정, 문보, 고목, 도부장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령의 문서식에서 전령의 형태적인 특징을 ① 문서 크기, ② 사용 종이 ③ 문자와 서체 ④ 화압과 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령을 종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지시전령, 임명전령, 배자전령로 나누어 통계를 내보았다. 지시전령은 실물문서 총 437건에 평균적인 크기가 세로 24~28cm, 가로 52~60cm로,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임명전령은 총 165건의 평균이 세로 40cm, 가로 47cm로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루었고, 배자전령은 총 102건에 세로 22.3cm, 가로 29.7cm의 크기인데, 앞의 두 전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색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종이는 公事用으로 사용하는 白紙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중앙군영에서는 이보다 품질이 좋은 咨文紙, 壯紙와 搗鍊紙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령에 사용한 문자는 순한문, 이두가 섞인 조선식 한문, 국한문혼용, 순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다. 화압과 관인은 군에서는 신표의 기능을 하였고, 수령의 전령은 위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령의 문서식은 법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조가 편찬한 『어진친막제명첩』, 『장용영대절목』, 헌종 대의 『총위영사례』 등 중앙군영에 관련한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었다. 실물문서를 통해 군영의 지시전령, 수령의 지시전령, 임명전령 등으로 나누어 그 문서식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전령을 문서형태별 분류를 하고, 또 유형별 분류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았다. 문서형태 분류는 1) 명령·지시하는 형태, 2) 임명하는 형태, 3) 고시하는 형태로 나누어 그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하였다. 국왕이나 중앙군영에서 발급하는 전령은 비교적 관직이 높은 관원에게 보내는 것인만큼, 형태나 서풍에서 유려하고 장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외방의 수령이 보내는 전령은 관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임명하는 형태는 중앙과 외방을 막론하고 모

두 글씨를 정자로 써고 있었다. 고시하는 형태는 국왕의 윤음이나 상부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으로 인해, 직방형으로 긴 형태를 이루었다. 수령의 효유도 긴 문장으로 작성하였고, 또 ‘揭付坊曲’이란 용어를 통해 여타의 전령과 구별을 할 수 있었다.

전령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내용은 1) 명령·지시를 전달하는 것에는 (1) 軍營 大將의 명령 전달, (2) 外방 官長의 행정지시, (3) 민인 체포영장 差使牌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직임에 임명하는 것으로 (1) 軍職任에 차정하는 辭令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3) 對民 告示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 軍營 大將의 명령 전달은 우선, 전령은 군령과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임란 때 禹治洪, 禹拜善에게 발급한 전령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치홍의 전령은 내용적인 특징을 통해 하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앙아문이나 국왕이 발급하는 전령은 군정과 관련하여 물품조달, 군사조련, 궁궐의 숙위, 국왕의 어가 호위 등의 내용으로 전령을 발급하였다. (2) 外방 官長의 행정지시는 발급자가 주로 외방고을의 수령이었고, 수취자는 관아의 군교, 사창의 사수, 면리동의 임장, 대소민인, 특정 개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에게 보내는 전령은 세금에 관한 것과 묘소를 투총한 것에 대한 처분이 주를 이루었다. 아울러 하체와의 구별을 시도해 본 결과 유풍과 관련해서는 서원과 향교에 하체로 발급하였고, 행정지시와 관련해서는 임장들에게 전령으로 발급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 (3) 민인 체포영장 差使牌子는 民人推捉과 物錢督促을 위해 차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전령은 종이의 크기가 작으며, 수취자는 將校, 差使, 兵校, 使令, 面主人, 舍音, 出使色吏, 統首였다. 배자라는 독립적인 문서가 있지만, 수령이 발급한다는 점과 그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전령과 혼용하거나, 배자 자체가 전령의 형태로 발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여러 사료를 통해 중앙관서에서 민인추착과 물건독촉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배자임을 확인하고, 배자를 당상·관배자, 차사배자, 도서배자, 문중배자, 상전배자로 나누어 전반적인 분류도 시도해 보았다.

2) 직임에 임명하는 것으로 軍職任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전령은 관원의 관품과 관련이 있거나, 관품과 관련이 없는 잡직의 종류가 있고, 또 군영에서 발급하는 것과 관아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전령으

로 발급하는 군직은 職任보다는 職役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외방고을에 임명은 군직에는 전령으로 하고, 관아의 육방이나 향소의 호장 등은 차점으로 하고, 한편 칠원부의 경우에는 이방이나 부이방을 배자라는 문서로 하고 있음을 실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차정하는 배자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1717년부터 차점으로 군직을 임명하는 것이 모두 전령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對民 告示는 수령이 대민에게 通知, 曉諭, 申飭, 矯弊, 頒布와 같은 사항을 전하는 용도로 고시하는 전령을 사용하였다. 특히 榜文으로 하는 전령은 朱熹가 南康軍事를 맡으면서 작성한 효유방문에 의해, 조선의 문관수령들이 모방하였을 것이다. 이는 정약용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 지방사자료총서』의 『公移占錄』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다. 수령이 발급하는 고시전령은 행정적 사안의 문서라기보다는 ‘揭付坊曲’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국왕이 효유하는 운읍은 왕실의 경사나 시국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상부가 수령에게 지시하면, 수령은 眞諺翻謄하여 민간에 반포하였다. 이후 갑오개혁에 의해 전령과 방문은 폐지되고 모두 고시라는 문서명으로 발급하게 했으나, 오히려 전령, 방문, 고시가 혼합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전령과 함께 하달문서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3. 하달문서 關, 下帖, 甘結, 牌子와 비교를 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성과물과 사료를 통해 관은 관품이 높은 1~6품 아문에서 사용하는 공문이고, 첩도 또한 공식적인 문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령을 비롯하여 감결과 배자는 행정상에 정식적인 관 문서라기보다는 屬司에 발급하는 것으로 편의적인 의도에서 사용한 문서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문서의 형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령이 대민을 상대로 통치하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들을 실행하는 최종적인 문서가 전령이다. 군영에서 시행하는 신속성과 엄정성을 장착한 전령을 가지고 지방의 수령이 대민을 상대로 세금, 소송, 또는 여러 행정적인 사안을 강력하게 해결하고 있었다. 전령은 군영이라는 엄정성, 배자라는 상하구별이라는 위계성, 행정이라는 체계성을 함유한 문서로서, 고을수령이 이를 가지고 대민통치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다.

참고문헌

1. 資料

- 『禁衛營兼把總謄錄』, 장서각 소장, K2-3289.
- 『禁衛營要覽』, K2-3298.
- 『戊申倡義錄』, K2-411.
- 『巡撫營謄錄』, K2-3298.
- 『御營廳傳令謄錄』, K2-3289.
- 『摠戎廳幸行謄錄』, K2-3383.
- 『扈衛廳謄錄』, K2-3390.
- 『扈衛廳謄錄』, K2-3391.
- 『札移電存案』, K2-3534.
- 『大典會通』. 『銀臺條例』. 『漢語大詞典』. 《官報》.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朱子大全』, 『中庸九經衍義』
- 『古文書』 6, 官府文書(傳令), 서울大學校, 1996.
- 『古文書集成』, 1~110책,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편.
- 이영훈 외 편, 『韓國地方史資料叢書』, 여강출판사, 2001.
- 朴始淳,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 『韓國學資料叢書』 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 吳宏默, 『慶尙道 咸安郡 叢瑣錄』.
- 金中淸, 『苟全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속 14,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 『開校50周年紀念 雪村家蒐集古文書集』, 國民大學校博物館, 1996.
- 『2003年度 春季企劃特別展 大韓帝國期 古文書』, 국립전주박물관, 2003.
- 『居官雜錄』, 亞細亞文化史, 1985.
- 『居官大要』, 『朝鮮民政資料牧民篇』, 소화 17.
- 『朝鮮民政資料叢書』, 여강출판사, 1987.
-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5集, 『牧民心書』.

『新式儒胥必知』, 규장각 소장, 一簣古 351.1-H991s.

2. 웹사이트

고려대학교 해외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호남기록문화시스템(<http://honam.chonbuk.ac.kr/index.jsp>)

3. 著書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2001.

金鐘洙, 『朝鮮後期 中央軍制 研究』, 혜안, 2003.

金鍾埴, 『韓國固有漢字研究』, 집문당, 1983.

金炫榮 편, 『大丘月村丹陽禹氏文書』, 韓國古文書學會, 1994.

박준호, 『예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徐台源, 『朝鮮후기 地方軍制研究 -營將制를 중심으로』, 혜안, 1987.

宋俊浩, 『朝鮮社會史 研究』, 一潮閣, 1987.

이상규·강이경, 『한글 고목과 배자』, 도서출판 경진, 2013.

이수건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任洪淳, 『面行政大要』, 京城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發行, 1924.

장필기, 『조선후기 무반벌족가문 연구』, 집문당, 2004.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사, 1984.

- 車文燮,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大出版部, 1973.
- 崔承熙, 『改正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11.
- 황위주 외 譯, 『脫草譯註 營總』, 경상북도·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2007.
- 『[譯註]수원하지초록』, 수원시, 2007.
- 『藏書閣韓國本解題』, 子部3,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4. 論文

<학위 논문>

- 金完鎬, 「조선시대 牒呈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金 赫, 「조선시대 完文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건우, 「한국 근대 공문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魯仁煥, 「朝鮮時代 諭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羅善河, 「조선 후기 羅州 鄉吏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李羲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研究」,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문보미, 「조선시대 關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朴成鎬, 「朝鮮初期 王命文書 研究 -經國大典體制 成立까지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손계영, 「조선시대 문서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宋哲鎬,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심영환, 「조선시대 고문서의 초서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尹仁洙, 「朝鮮時代 甘結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胡元德, 「古代公文文体流变述论」, 南京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006.

<학술지 논문>

- 金暲綠, 「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 『明清史研究』 26, 명청사학회, 2006, 123~168쪽.
- 金友哲, 「17세기 후반 제주 속오군의 편성 실태 - 《제주속오군적부》의 분석」, 『한국사연구』 132호, 한국사연구회, 2006, 75~108쪽.
- 김봉좌, 「조선후기 傳令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제61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3, 279~299.
-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38~77쪽.
- 김성윤, 「오홍묵(吳宏默)(1834~?)을 통해서 본 수령 군현통치의 과정과 전략 - "선정(善政)" 목민관의 모델과 관련하여-」,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83~140쪽.
- 金重權, 「[行政法] 行政法上的 告示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고시계』, 53(2), 45~55쪽.
- 盧永九,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논의」, 『軍史』 34, 1997, 125~154

- 쪽.
- 魯仁煥,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장서각』 34, 2015, 10~37쪽.
- 閔善姬, 「朝鮮後期 東萊의 鄉班社會와 武廳: 朝鮮後期 鄉班社會의 支配構造와 社會移動 問題에 대한 一試論」, 『歷史學報』 139, 1993, 95~148쪽.
- 박성호, 「고문서 패자에 관한 고찰 : 패자의 유형과 성격 고찰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295~329쪽.
- 박재우,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체계적 이해」, 『고문서연구』 3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219~228쪽.
- 박재우, 「公文書의 官印 研究 -禮式에 따른 官印 체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1~25쪽.
- 裴祐晟, 「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 『韓國史論』 24권, 1991, 207~272쪽.
- 오중록, 「高麗後期の 軍事 指揮體系」, 『國史館論叢』 24, 1991, 215~255쪽.
- 李得春, 「차자표기연구와 중국음운학」, 『한국문화』 14,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1~15쪽.
- 이방섭, 「正祖의 壯勇營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45~82쪽.
-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제30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125~158쪽.
- 전경목 외,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89~183쪽.
- 정선영, 「고문서의 紙質」, 『고문서연구』 제2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2, 71~92쪽.

ABSTRACT

A Study on Jeonryeong(傳令) ancient document in Chosun Dynasty

Kyeong Su PARK

Major in Palae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evaluated the Jeonryeong(傳令) issued as a document in Chosun Dynasty from paleographical aspect. The order was closely related to a military camp. Therefore, it had various issuers, including a king, provincial governors, and mayors. Moreover, local governors used it as an administrative document. They issued it and send it to Imjang(任掌) at local towns in the form of direction, appointment, or notification. Imjang delivered the order to local citizens.

When a governor announced to citizens, the notice followed the form of order or Bang(榜). Bang resembled the one, published at Chu Hsi(朱熹)'s Namkang(南康) during Song Dynasty. A governor composed a Chasabaeja(差使牌子) to send Chasa(差使) to chase and arrest criminals. When a governor appointed officers, he issued a baeja(牌子), a chajup(差帖), and an order to appoint a government officer, local officer, and a military personnel, respectively. Common administrative orders were mainly related to tax collection, lawsuits about locating tombs to others' land, digging corpse out, and keeping people out, and chasing and arresting criminals. Therefore, an order could be considered as one of documents to realize th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military rights of governors.

Currently, there are about actual 800 ord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Academy of Korean Studies Library store most of them. In addition to actual orders, there are many others in the form of registration with containing only their contents. This

study was valuable because it investigated the nature and contents of order documents, which had not been fully understood, in earnest.

Key words : Jeonryeong(傳令), a military camp, mayors, directive, appoint, Baeja(牌子), Document type of Jeonryeong, Bang(榜), notification, Hachoe(下帖).